

헬로, 핀테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

발간사

핀테크(Fintech)는 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만남입니다. 핀테크는 기술을 통해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을 더 간편하게 하고, 손안의 금융으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탈중개화 등 금융혁신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가적인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운영,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오픈 API 구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혁신금융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성장 지원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멘토링, 교육, 입주공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출시 전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D-테스트베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력을 위한 금융사-핀테크 협력플랫폼, 이미 해외진출을 추진한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해외진출 플랫폼 등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창업과 스케일업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당국과 함께 기술기반 핀테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국내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핀테크 분야는 앞으로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핀테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측면과 핀테크 서비스의 개발·출시

등을 위해 알아야 할 법령 등 각종 금융관련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핀테크 교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헬로, 핀테크!」 교재 6종을 발간하여 핀테크 산업에 관심있는 일반인부터 핀테크 분야 재직자까지 누구나 핀테크 입문부터 지급결제·송금,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자산관리·보험, 보안인증·블록체인, 개인신용정보 관리·활용 등 분야별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발간 이후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핀테크 지식을 습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핀테크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를 교재에 수록했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아 이번에 새롭게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헬로, 핀테크!」 개정판은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분야 규제와 시장 현황 등 내·외부 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제·개정된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변화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반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기술’ 편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시중에 핀테크를 다룬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이 교재는 핀테크 분야의 현황과 각종 금융관련 규제·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교재라는 점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 교재가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 잘 활용되고, 우리나라 핀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의 혁신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변영한

추천사

IT 기술의 발전은 금융의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저축·송금·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금융상품 추천을 받고, 현금·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내장된 결제모듈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핀테크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시·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도 용이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사각지대에도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에 없던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며 금융회사들과 협업·경쟁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경쟁에 기반한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지식을 꾸준히 보급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특화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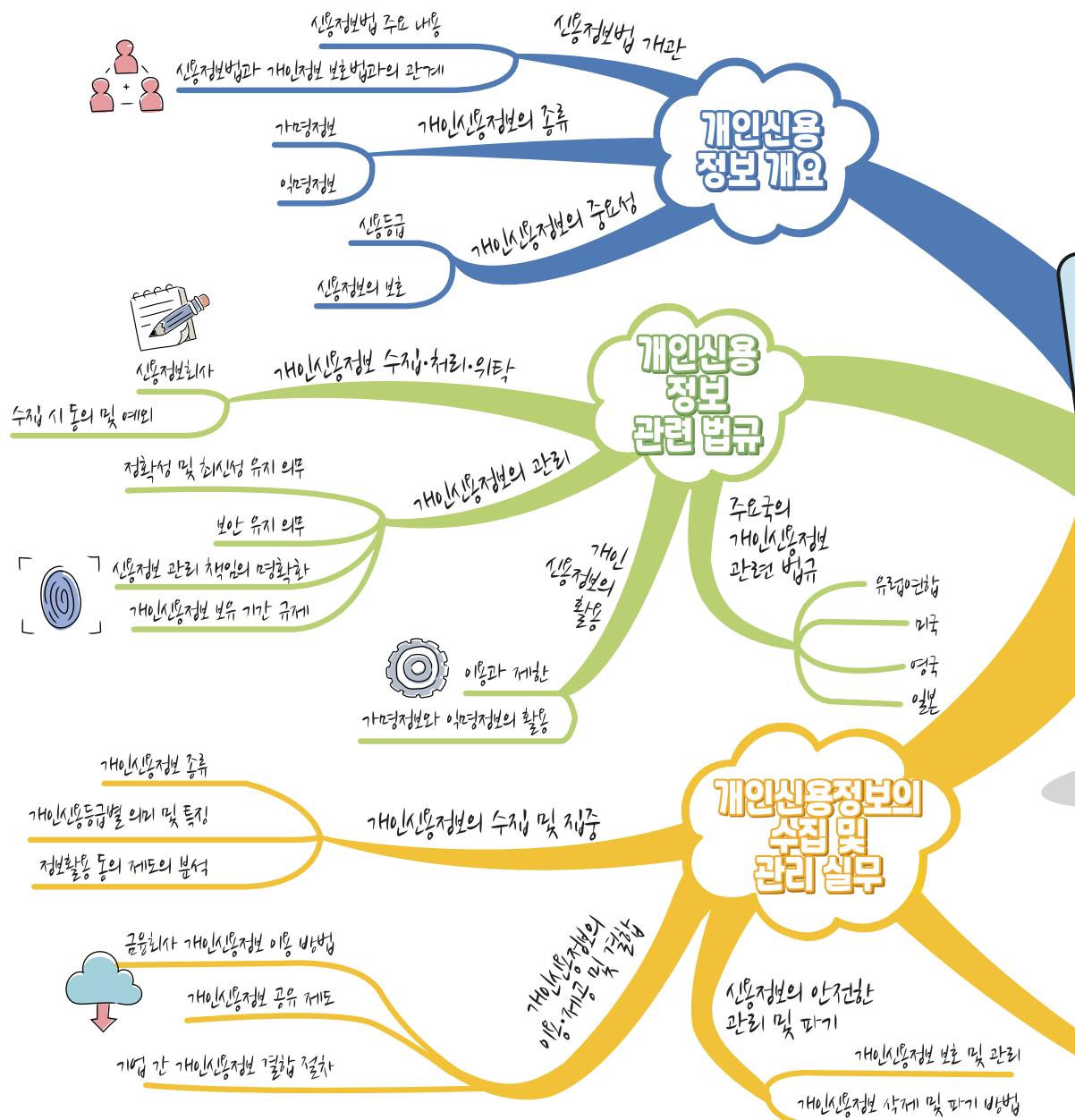
그동안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 DT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인의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원이 지난 해 「헬로, 핀테크!」 6종 도서 발간에 이어 금년에도 최신정보를 반영한 6종 도서의 개정판 발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핀테크 기반기술 관련 도서 1종의 추가 신규 발간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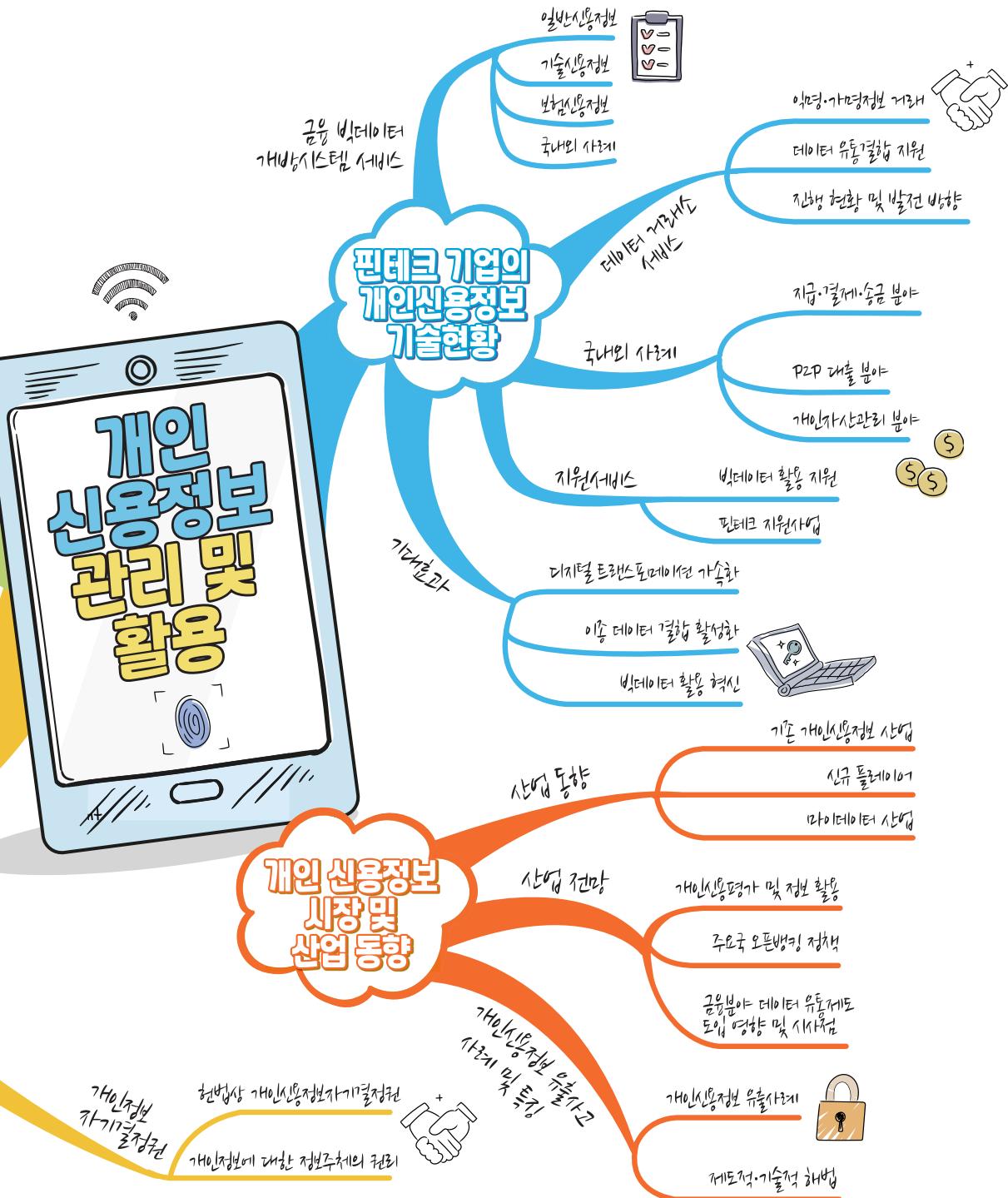
아무쪼록 본 도서가 현재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물론, 앞으로 해당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1월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서태종

HELLO,
FINTECH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학습맵





CONTENTS



제1장 개인신용정보 개요

제1절 신용정보법 개관	14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및 종류	18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23

제2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위탁	33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38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42
제4절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48
제5절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	56
제6절 신용정보회사 등의 의무	63
제7절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부과	67
제8절 신용정보관리기관	72
제9절 신용정보업	77
제10절 감독 및 제재	84
제11절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88

제3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실무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집중	124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 및 결합	137
제3절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파기	154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7

제4장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기술 현황

제1절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서비스	180
제2절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191
제3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해외 사례	202
제4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국내 사례	217
제5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지원 서비스	226
제6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기대 효과	230

제5장 개인신용정보 시장 및 산업 동향

제1절 개인신용정보 산업 동향	252
제2절 개인신용정보 산업의 전망	275
제3절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특징	285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1
장

개인신용정보 개요

제1절 신용정보법 개관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및 종류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1
장

개인신용정보 개요



학습목표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개인신용정보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개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이용되어야 할 가치도 있지만 반면에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정보, 그리고 이들과 결합된 개인식별정보 등 6가지가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된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하므로 이용이 되어야 할 정보이지만 반면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이 되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지 않아 해당 개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제1장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요에 대해 학습한다.

용어해설

①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신용정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하는데, 특정 개인의 대출 채무나 예금 거래 내역 등이 해당한다.

③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④ 개인식별정보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주소 ②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③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⑤ 가명정보(Pseudonymized Data)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⑥ 익명정보(Anonymized Data)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신용’(Credit)에 관한 ‘정보’(Data)를 말한다. 특정 개인의 대출 채무나 예금 거래 내역이 대표적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이용 내지 활용될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다. 1995년에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4일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되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새로운 개념의 도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나 데이터전문기관 등의 여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1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크게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회사나 기관의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2),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등을 말한다) 등이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여(법 제15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8조 내지 제21조),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전산체계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법 제18조, 제19조) 신용정보의 유통 단계에서도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내지 제43조의2). 이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의 하나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32조). 또한 신용정보법은 법 위반을 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2조의2, 제50조), 법 위반 유인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함으로써(제43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도(제43조 제2항)와 법정 손해배상책임 제도(제43조의2)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회사나 기관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 대상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다(법 제15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신용정보업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제5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의2).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신용정보업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허가 요건 및 절차, 경영업무, 부수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내지 제1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조 제6호, 제25조 제1항). 신용정보법은 아울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개인신용정보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 제26조의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7호),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되고, 일반 기업이나 법인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사항(법 제45조 내지 제49조)과 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에 관한 내용(법 제50조 내지 제52조)도 담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그런데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법 제2조 제2호)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여 두 법이 적용되게 된다. 즉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두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인 관계에 있어, 두 법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확인해주고 있다. 즉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고(법 제3조의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제6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이 법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전되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죽은 사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므로 단순한 개인정보와 다르다. 즉 개인정보에 신용정보의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개인정보의 개념과 신용정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신용정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대출이나 예금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즉 신용정보라고 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Pseudonymized Data)와 ‘익명정보’(Anonymized Data)의 개념을 익힐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신용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명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법 제2조 제15호)한 정보를 말한다. 즉 추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 및 집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만을 암호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정보로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를 복호화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한다.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가명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이나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4호). 반면에 익명정보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법 제2조 제17호)한 정보를 말하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을 전부 삭제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될 때의 정보가 해당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2-1 개관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度)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정보, 그리고 이들과 결합된 개인식별정보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6).

신용거래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나목), 대출이나 보증 거래 및 예금 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신용도(度)판단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다목), 연체나 부도 등의 정보가 해당된다. 신용거래능력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라목), 개인의 재산이나 채무 총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공공기록정보란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처분 또는 조세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나목, 다목). 개인신용평점정보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6 라목). 개인식별정보란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가목),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개인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를 말한다. 첫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의 신용공여 거래, 신용카드 거래, 시설대여 거래, 할부금융 거래 등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둘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예금거래 등)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셋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넷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 · 매매 명세, 수수료 · 보수 등에 관한 정보, 다섯째, 「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3).

2-3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를 말한다. 첫째,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둘째,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i)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ii)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iii)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iv)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4).

2-4 신용거래능력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직업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의 신용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5).

2-5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는 “(i)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ii)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 (iii)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나목, 다목). 법원의 재판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 면책 · 복권과 관련된 결정이나 경매개시결정 · 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조세 등과 관련된 정보로는 국세 · 지방세 · 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납부 및 체납 관련 정보가 해당된다.

2-6 개인신용평점정보

개인신용평점정보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6 라목).

2-7 개인식별정보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주소 (ii)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iii)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의2). 다만 이러한 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법 제2조 제1호 가목).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성명 정보 그 자체는 신용정보와 결합되지 않아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홍길동 A은행 대출 채무 500만원”이라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만, “A은행 대출 채무 500만원”이라는 신용거래정보는 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게 된다.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

개인신용정보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개인인 고객과 거래를 할 때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금융거래나 상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건전한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이 필요하다. 해당 개인 입장에서는 신용평점이 좋으면 그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게 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가치는 크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유인이 되므로 전반적으로는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게 된다.

반면에 신용정보 파악 대상이 되는 개인은 이용되는 신용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관심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용정보의 보호도 중요하게 된다. 만약에 개인신용정보가 잘 관리되지 못하여 유출된다면 그러한 정보가 금융사기(Phishing)나 기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해당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도 이용에 끽지 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정보법도 목적 조항에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법 제1조). 바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잘 유지되어야 신용정보 시장과 신용정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용만 너무 강조하면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반면에 보호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 핵심정리

1. 신용정보법 개관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되는 기관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한 규제 사항도 담겨 있는 법률이다.

2.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신용정보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 된다.

3.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하면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에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가명정보도 포함된다.

- 그러나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익명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개인식별정보

-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개인식별번호, ③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정보, 그리고 이들과 결합된 개인식별정보 등 6가지가 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가치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 시에 신용등급 산출 등에 이용이 되는 것이어서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정보이다.

8.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필요

- 개인신용정보는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나 범죄에 이용되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어 해당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2
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위탁
-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 제4절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 제5절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
- 제6절 신용정보회사 등의 의무
- 제7절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부과
- 제8절 신용정보관리기관
- 제9절 신용정보업
- 제10절 감독 및 제재
- 제11절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2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 학습목표

- ❶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 ❷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❸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❹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 ❺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 의무를 이해하고,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❻ 신용정보집중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데이터전문기관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❼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 ❽ 유럽연합,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 할 수 있다.



 학습개요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이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제도, 수집 및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성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의무, 보안 유지 의무, 신용정보관리기준 준수 의무,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선임 의무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외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이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의 일정한 목적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가명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하는 등 일정한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권, 개인신용정보의 교부·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 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의 무료 열람 권리, 채권 변동 정보의 교부 청구·열람권,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연락 중지 요청권 등에 대해 학습한다.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법정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 용어해설

① 개인신용정보 처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② 정보집합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④ 가명처리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익명처리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⑥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⑦ 법정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 사유로 인해서 신용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⑧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⑩ 데이터전문기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⑪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⑫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⑬ 기업신용조회업

기업정보조회 업무,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⑭ 신용조사업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위탁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1-1 수집의 기본 원칙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수집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규정하여, 명확성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1항 전단). 우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에 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이나 각 회사 또는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후단).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후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1-2 수집 시 동의 및 예외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iv)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 신용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다만, 신용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vi)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vii)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viii)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를 수집하는 경우”이다(법 제15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하여금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처리’라 함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목적에 적합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15조 제1항 후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

3 정보집합물의 결합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3자가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7조의2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3). 즉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정보집합물이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호 나목). 그리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해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2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4-1 위탁자의 의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신용정보회사 등은 문서, 즉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처리 업무의 위탁을 해야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i)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ii)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신용정보회사 등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셋째, 신용정보회사 등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후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4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5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4-2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자와 동일하게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법 제17조 제2항). 그러한 준수 사항으로는 첫째, 수탁자는 신용정보전산체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 운영에 따른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법 제19조). 둘째, 수탁자는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법 제20조 제1항),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법 제20조 제2항). 셋째, 수탁자는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넷째, 수탁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의2). 다섯째, 수탁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법 제21조).¹⁾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법 제17조 제6항). 또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법 제17조 7항).

1) 이외에도 수탁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별첨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이 준용된다(법 제17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본문).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부담한 채무의 양도 및 양수 등 채무 변동 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법 제18조 제2항 단서).

2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유지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 신용정보전산체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3 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 처리 · 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보존 대상은 다음과 같다. “(i) 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에는 수집 · 이용한 날짜, 수집 · 이용한 정보의 항목, 수집 · 이용한 사유와 근거, (ii)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iii) 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짜, 폐기한 정보의 항목, 폐기한 사유와 근거”이다(법 제20조 제2항).

4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선임

4-1 선임 의무 대상 기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다(법 제20조 제3항). 그리고 총자산이나 종업원 수에 있어서 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 등은 임원(신용정보의 관리 · 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그만큼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위가 높은 임원급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2 업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20조 제4항).

- (1)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이다.
- (2)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보유 · 제공 ·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피해 구제, 기업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이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이나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법 제20조 제5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 제7항).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간주된다(법 제20조 제8항).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신용정보 보호 관리자를 두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5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유 기간 규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법 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i)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iv)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보험사기(詐欺)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예외가 적용되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법 제20조의2 제3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0조의2 제4항). 한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제외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21조).

1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즉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1항). “(i)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ii) 위 (i)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iii)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v)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v)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vi)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vii)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viii)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ix)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자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자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x)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xi)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ii)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와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xiii) 통계 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iv)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v) ① 당초 수집한 목적과 이용 목적 사이의 관련성,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③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④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 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vi)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법 제33조 제1항).

특히 개인 의료 관련 정보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의료 관련 정보(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말한다)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나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법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이라 함은 보험회사나 신용카드회사 등이 보험업이나 채무 면제 또는 상환 유예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28조의2).

2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활용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데(즉 추가 정보를 사용하면 식별화가 가능해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익명정보는 완전히 비식별화된 정보를 말하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가.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가명처리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호). 즉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를 사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추가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4호), 가명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가명처리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주고 있다. 즉 가명처리를 한 결과가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거나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사이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지만 그 추가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가명처리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2조 제15호). 즉 가명처리를 한 결과물이 추가 정보를 더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도 가명처리를 한 결과물과 그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면 이는 적정한 가명처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익명정보와 익명처리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7호), 익명정보는 완전히 비식별화가 된 정보를 뜻한다. 추가 정보를 사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가 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2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관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수립 등 행위규칙을 규정하여, 가명처리와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가명처리의 관리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처리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 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1항). (ii)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와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2항). (iii) “신용정보회사 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의2 제6항). (iv)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7항). (v)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를 한 경우 그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8항). 즉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가명처리를 한 날짜, 가명처리를 한 정보의 항목, 가명처리를 한 사유와 근거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8항 제1호, 제2호).

나. 익명처리의 관리

특정 개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익명처리이므로 익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에 익명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법 제40조의2 제3항), 금융위원회가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된다(법 제40조의2 제4항).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심사 및 인정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40조의2 제5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그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8항). 즉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한 날짜,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익명처리 사유와 근거”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40조의2 제8항 제1호, 제2호).

2-3 가명정보에 대한 특례 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가 비록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만 가명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0조의3). 그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ii) 가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가명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법 제32조 제7항). (iii)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전송 요구권(법 제33조의2)도 배제된다. (iv)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권(법 제35조)도 배제된다. (v)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법 제35조의2)도 적용되지 않는다. (vi)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법 제35조의3)도 적용되지 않는다. (vii)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법 제3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viii) 개인신용정보의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법 제36조의2)도 배제된다. (ix)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나 연락

중지 요청권(법 제3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x)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법 제38조)도 배제된다. (xi) 신용 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권(법 제38조의2)도 배제된다. (xii)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법 제38조의3)도 적용되지 않는다. (xiii)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 열람권(법 제39조)도 배제된다. (xiv)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권(법 제39조의2)도 배제된다. (x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법 제39조의3)도 적용 배제된다. (xvi) 개인신용정보 누설 통지 의무(법 제39조의4)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원칙적인 동의(Opt-i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1 원칙적인 동의

가. 제3자에 대한 제공 시 동의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얻도록 하여(법 제32조 제1항),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법 제32조 제1항), 포괄적인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물론 기존에 동의한 목적이나 이용 범위에서는 개별적 동의를 면제시켜주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법 제32조 제11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32조 제10항).

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수령 시 동의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2항).

그리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32조 제3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

1-2 동의 방법

가. 동의 방식

동의를 받는 방식은 (i) 서면, (ii)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ii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iv)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사후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나.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의 구분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4항).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 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4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32조 제5항).

1-3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ii)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iii)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v)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v)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vi)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vii)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viii)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x)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와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x) 통계 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i)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ii) ① 당초 수집한 목적과 이용 목적 사이의 관련성,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③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④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xiii)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법 제32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10호).

위에서 보는 것처럼 (x)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에게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다만 가명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 없다. 법 제40조의3) 해당 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7항). 다만 위 (iii)의 경우, 즉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8항). 그리고 이러한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법 제32조 제9항).

2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와 고지

2-1 동의와 고지

신용정보회사 등은 (i)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ii)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또는 (iii)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iv)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함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일정한 고지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고지 사항을 알릴 필요가 없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2-2 동의 시 고지 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고지 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i)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ii)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iii)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iv)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며, 이러한 고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나. 제3자에 대한 제공 시 고지 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목적, (iii)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iv)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v)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며, 고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다. 목적 이외의 용도 이용이나 제3자 제공 시 고지 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ii)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iii)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iv)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v)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며, 이러한 고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라. 고지 사항의 일부 생략 또는 중요한 사항의 밸ച් 고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지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밸ച්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정보주체가 고지 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3항).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하는 고지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밸ച්하여 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4항).

2-3 정보 활용 동의를 얻을 경우 고려 사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i)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정보 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iii)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정보 활용의 목적별로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을 고려해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2항).

3 정보 활용 동의 등급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3 제1항 본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정보 활용 동의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의3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i) 정보 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ii) 정보 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iii)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iv) 정보 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법 제34조의3 제2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등에는 부여한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법 제34조의3 제3항).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철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문서 등으로 자신의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단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전단). 이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추가적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후단).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신용정보 교부·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일정한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법 제33조의2 제1항). 이는 2020년 2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도입한 제도로서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i)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ii)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iii)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또는 (iv)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그리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법 제33조의2 제7항).

나. 전송 요구 방법과 범위

개인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3조의2 제4항). 개인신용정보주체가 (i)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ii)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또는 (iv) 개인신용평가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서 전송 요구를 받는 자, ②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③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④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를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법 제33조의2 제5항).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진다. “(i)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개인신용정보로서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의 권리 · 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개인신용정보일 것, (ii)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일 것, (iii)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진다(법 제33조의2 제2항).

다. 전송 요구의 거절 등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법 제33조의2 제3항).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 중단할 수 있다(법 제33조의2 제7항).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3조의2 제6항).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35조). 즉 신용정보회사 등은 “(i)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본문). 다만, 내부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법 제35조 제1항 단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조회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3 개인신용정보의 교부·열람 및 정정 청구권

가. 개인신용정보의 교부·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법 제38조). 즉,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그리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2항).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 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한다(법 제38조 제3항).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법 제38조 제4항).

나. 삭제 또는 정정 처리 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5항 본문).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5항 단서).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6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8항).

4 신용 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통지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 도용 가능성 등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8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즉 “(i)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 개인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iv) 예금 ·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v)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38조의3 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3 제3항).

6 신용정보의 무료 열람 권리

개인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대하여 (i) 개인신용평점, (ii)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7 채권 변동 정보의 교부 청구 · 열람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와의 일정한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데(법 제39조의2 제1항),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의 변동 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법 제39조의2 제2항). 그리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공받은 채권 변동 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하는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법 제39조의2 제3항).

8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자동화 평가 여부 및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법 제36조의2). 2020년 2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도입한 제도이다.

우선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i) 개인신용평가, (ii) 일정한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iii)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1항). 자동화 평가를 하는 경우 “(i) 자동화 평가의 결과, (ii)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iii)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개요”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1항).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 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하거나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i)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ii)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① 기초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② 자동화 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는 (i)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ii)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3항).

9 연락 중지 요청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연락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연락 중지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전단).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추가적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후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지나 연락 중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연락 중지의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5항).

제6절

신용정보회사 등의 의무

...

1 신용정보 활용 제제의 공시 의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보호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i)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i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iii)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i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v)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및 반영 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와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vi)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신용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vii)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이다(법 제31조 제1항).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2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 누설 및 이용 금지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2조 제1항).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42조 제2항).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 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이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2조 제3항).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2조 제4항).

3 신용정보 누설 시 통지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39조의4 제1항 전단). “(i) 유출된 신용정보의 항목, (ii)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iii)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iv)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v)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이다(법 제39조의4 제1항 후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39조의4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일정한 규모 이상(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39조의4 제3항 전단,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이 경우 금융위원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39조의4 제3항 후단).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신고해야 한다(법 제39조의4 제4항). 금융위원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법 제39조의4 제5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9조의4 제6항).

4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개인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35조의2).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 통지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공제조합

등, 상거래 기업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i) 채권자, (ii)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액 및 기산일,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iii)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3 제1항).

6 상거래 거절 근거의 신용정보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를 받은 본인 신용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제7절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부과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용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손해배상책임**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은 일반 손해배상책임 제도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두고 있다.

1-1 일반 손해배상책임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지우고 있다(법 제43조 제1항). 이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고(제750조), 다만 입증 책임만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수탁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탁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수탁자에 관한 조항인 제17조 제2항이 제43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 제43조 제6항).

1-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신용정보법은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제2항).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커진 대신에 그 요건은 일반 손해배상책임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다. 즉 적용 대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한다(법 제43조 제2항).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경과실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개인신용정보에만 해당되고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정보는 제외된다. 그리고 일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법 제43조 제2항 단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해당되는데(법 제43조 제2항), 여기서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의 수탁자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등의 수탁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 등도 업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법 제43조 제6항), 위탁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제3항). 즉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이 그 예이다(법 제43조 제3항 각 호).

1-3 법정 손해배상 청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 사유로 인해서 신용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43조의2 제1항). 신용정보법은 이를 “법정 손해 배상의 청구”라고 하고 있다(법 제43조의2). 신용정보법 위반 사유로 인해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입증 없이 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법정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다(법 제43조의2 제1항).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 법원은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 제2항). 그리고 일반 손해배상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신용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 제2항).

1-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보장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하여금 일반 손해배상책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의3). 그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은행 등 일정한 금융기관이다(시행령 제35조의9).

2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신용정보법은 행정적 제재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을 미리 알림으로써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재 조치라고 할 것이다.

2-1 과징금 부과 대상자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업무 처리 수탁자이다(법 제42조의2 제1항). 그런데 법 위반 행위의 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수탁자의 임직원인 경우도 있다(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2-2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i)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신용정보를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ii)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iii)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iv)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v) 신용정보회사 등과 업무 처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vi) 불법 누설된 개인적 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취득자가 그러한 개인 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이다(법 제42조의2 제1항).

(i)의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외부 전산 침입자가 신용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보안 대책을 규정대로 잘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보안 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신용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의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과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과 수탁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임직원과 회사의 책임 관계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법리(제756조)가 적용되므로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과 수탁자가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사무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수탁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업무 위탁을 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동시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해석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선임에 있어서 과실이 있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신용정보회사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면책이 허용된다는 규정(제756조 제1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과징금 부과 금액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다만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관리 소홀로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상한은 50억원이다(법 제42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범위는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 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2조의2 제2항 단서). 그러한 경우는 첫째,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이거나, 둘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된다(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

2-4 과징금 부과 결정

과징금 부과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다. 즉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용정보회사 등과 수탁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다(법 제42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다(법 제42조의2 제3항).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데이터전문기관이 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1-1 의의 및 종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는 기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하며,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법 제25조 제2항).

1-2 허가 요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ii)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iii) 일정한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이다(법 제25조 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 · 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법 제25조 제6항).

1-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신용정보 제공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5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25조의2 제1항). “(i)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 활용 업무, (ii)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 활용 업무, (iii)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기관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양도 및 양수 등 채무 변동 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iv)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v) 신용정보의 가공 · 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 (vi) 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의 운영 업무, (vii)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i)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ii) 신용정보의 상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iii)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이다(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1 의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9호의2). 즉 “(i)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 거래 정보,

신용카드 ·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ii)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 · 매매 명세, 수수료 · 보수 등에 관한 정보, (iv) 「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의3). 즉 개인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해당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대출, 예금, 보험 거래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겸영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신용정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6항, 시행령 제11조 제6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부수업무로서 “(i)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자문 업무, (ii)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iii)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상거래 거절 근거 개인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개인신용평가 등의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 및 연락 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신용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 신청,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양도나 양수 등 채무 변경 정보의 교부 및 열람 청구 등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iv)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법 제11조의2 제6항, 시행령 제11조 제4항).

2-3 행위 규칙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i)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및 (ii)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의9 제1항).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의 경영업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권리 등의 대리 행사 업무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9 제2항).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i)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선정하여 사용 · 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 수단이나 (ii) 본인임을 확인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 · 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의9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은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이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임 · 대리 · 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18조의6 제3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와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9 제4항).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법 제22조의9 제5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전송받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22조의9 제6항).

2-4 임원의 자격 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법 제22조의8).

3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법 제26조의4 제1항). 데이터전문기관은 “(i)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사이의 결합 및 전달 업무와 (ii) 신용정보회사 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6조의4 제2항).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26조의4 제3항).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업무와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및 위의 업무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법 제26조의4 제4항).

제9절

신용정보업



1 개관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관련되는 영업, 즉 신용정보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는 신용정보업이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을 세분화 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나누었으며, 신용조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권추심업이 신용정보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업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4호).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회사를 신용정보회사라고 한다(법 제2조 제5호).

2 개인신용평가업

2-1 의의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8호),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라고 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는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도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법 제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요금 납부나 연체 실적 등을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2 허가 요건

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제외한 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ii)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iii)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iv)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 (v)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vi)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다(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는 위의 (i)에서 (vi)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외에도 “(i) 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ii)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며, (iii)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iv) 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v) 임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v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도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5억원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

2-3 경영업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경영업무는 (i)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ii) 채권추심업,

- (i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 (iv)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법 제11조 제2항). 겸영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2-4 부수업무

개인신용평가회사도 개인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법 제11조의2 제1항),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다. “(i)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ii)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iii)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iv)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자문 업무, (v)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체계, 해결(Solution)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vi)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법 제1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3-1 의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의2 본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나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신용 평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법 제2조 제8호의2 단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라고 한다.

3-2 허가 요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i) 개인신용평가회사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ii)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iii)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iv)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v)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해당된다(법 제5조 제2항). 이외에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요건과 같은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3-3 겸영업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i)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ii) 채권추심업, (i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iv)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겸영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법 제11조 제1항).

3-4 부수업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도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법 제11조의2 제1항), 그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다. “(i)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ii)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iii)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iv)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자문 업무, (v)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이다(법 제11조의2 제3항).

4 기업신용조회업

4-1 의의

기업신용조회업이란 “기업정보조회 업무,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의3 본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법 제2조 제8호의3 단서). 기업정보조회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정보(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 제10항)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의3 가목).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의3 나목). 기술신용평가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의3 다목).

4-2 허가 요건

기업신용조회업 중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ii) 신용보증기금, (iii) 기술보증기금, (iv) 지역신용보증재단, (v) 한국무역보험공사, (vi)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ii)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특허법인 및 회계법인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한한다(법 제5조 제3항). 기업정보조회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업자의 경우에는 위 (i)에서 (vii)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허가 요건도 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의 요건이 적용되며, 다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기업정보조회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4-3 경영업무

기업신용조회회사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i)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ii) 채권추심업, (i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경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4-4 부수업무

기업신용조회회사도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법 제11조의2 제1항), 그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다. “(i)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ii)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iii)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자문 업무, (iv)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체계, 해결(Solution)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v)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법 제11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5 신용조사업

5-1 의의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5-2 허가 요건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와 같다(법 제5조 제1항). 허가 요건은 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요건과 같은 요건이 적용되며, 다만 자본금 또는 기본자산은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5-3 겸영업무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i)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ii)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iii) 채권추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11조 제4항). 겸영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5-4 부수업무

신용조사회사도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법 제11조의2 제1항), 부수업무는 (i)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ii)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 조사 업무, (iii)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법 제11조의2 제5항,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1 감독

1-1 감독 및 검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법 제45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4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6항).

1-2 제재 조치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i)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ii)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iii)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iv)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v)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vi) 신용정보제공의 중지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i)에서 (iii)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7항).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법 제45조 제8항).

1-3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i)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ii)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iii)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iv)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 제출, 처리 중단, 시정 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45조의3 제1항). (i)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ii)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이다(법 제45조의3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과 상거래 정보보호규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5조의3 제2항 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신용정보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5조의3 제3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5조의3 제4항).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i)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ii)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iii)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법 제45조의4).

1-6 개인신용정보 활용 ·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법 제45조의5 제1항). 금융위원회는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45조의5 제2항).

1-7 업무보고서의 제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2 벌칙 및 과태료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중한 형사처벌은 (i) 신용정보회사 등과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와 (ii) 누설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적용된다(법 제42조 제1항, 제3항).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형사처벌 적용 조항(법 제5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게 된다(법 제5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법 제51조 단서).

또한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1항).

1 유럽연합

1-1 개관

2016년 5월 27일 제정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인 이전(移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법규가 되고 있다. 규정(Regulation)은 그 자체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지침에 의거하여 국내법을 제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DPR은 ① 적용 범위, ② 개인정보의 정의, ③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④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⑤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의 책임 강화, ⑥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요건, ⑦ 과징금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2 적용 범위

GDPR은 개인정보를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처리(Processing)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조 제1항).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 밖에서 유럽연합 국가 내의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GDPR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에서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나 개인정보처리수탁자(Processor)가 아니더라도 유럽연합 국가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제3조 제1항). 따라서 유럽연합 지역 내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GDPR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법규가 된다.

1-3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됨으로써(제4조 제1항),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해도 여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즉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정보통신망상의 식별자를 통해서 식별되거나 특정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이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가 된다(제4조 제2항).

1-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GDPR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별도로 보관되어 관리되고, 기술 및 관리적 조치가 적용되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제4조 제5항). 즉 추가 정보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한다(전문 제26항). 익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전문 제26항). 그래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도 바로 이 GDPR을 참조한 것이다.

1-5 동의 요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제7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 제2항). 어린이의 동의 요건도 있는데, 어린이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어린이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법하며, 16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는 친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법하다(제8조 제1항).

1-6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정보삭제요청권(Right to erasure)을 인정하고 있다.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말한다.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제17조 제1항). 다만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17조 제3항). 또한 개인정보 이동요구권(Right of portability)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제20조 제1항).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해당한다.

1-7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책임 강화

GDPR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에 대한 책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정보 처리의 성격·범위·상황·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GDPR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24조 제1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기본 설정(by Default)을 통해 각 특정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25조 제2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GDPR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탁처리자만을 이용해야 한다(제28조 제1항). ④ 수탁처리자는 미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고는 재위탁할 수 없다(제28조 제2항). 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관리보호인(Data Protection Officer)을 선임하도록 하여(제3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2항). ⑦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가명처리 내지 익명처리 등 적정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2조 제1항).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2항). ⑨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한다(제34조). ⑩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전에 처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제35조 제1항).

1-8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GDPR은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적정한 보호 수준 평가를 받은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며(제45조 제1항), 그 적정한 보호 수준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적정한 보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치주의나 관련 법률 등 개인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체계,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및 효율적인 기능의 작동 여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제45조 제2항).

1-9 과징금 제재 조치

GDPR은 GDPR 위반 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체계를 이원화 하여, 기록 보존 의무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걸친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유로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걸친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83조 제4항, 제5항).

2 미국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규제에 관한 단일 법률은 없고, 여러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법률은 「공정신용보고법」(FCRA; Fair Credit Reporting Act)과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r Gramm-Leach-Bliley Act of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신용평가기관인 ‘소비자신용보고기관’(CRA; 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금융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두 개의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공정신용보고법」

「공정신용보고법」은 우리나라의 개인신용평가회사에 해당하는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관리하는 ‘소비자신용보고서(Consumer Report)’의 이용과 보호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해서 1970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소비자의 신용정보 수집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의 축적과 사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공정한 방법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의 업무 및 소비자신용보고서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은 ‘소비자신용보고서’를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제603(f)조).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작성하는 소비자신용보고서는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나 능력, 인격, 평판, 개인적 특성이나 생활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제603(d)(1)조).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제3자에게 소비자신용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본인의 서면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소비자신용보고서가 여신, 고용, 보험 인수, 자급 능력의 평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③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이러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신용보고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제604(a)조). 소비자신용보기기관은 소비자신용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제607(b)조), 소비자의 요청을 받을 때는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와 그 정보원(源), 정보취득자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제609(a)조). 또한 신용정보의 정정 내지 삭제 요청권도 인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 결과 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제611조). 특히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의료 정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① 소비자가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의료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와 ② 고용이나 여신 판단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의료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비자신용보기기관이 해당 의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604(g)(1)조). 그리고 소비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소비자신용보기기관에게 제공하는 자는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623(a)조). 소비자신용보고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자는 그 불리한 내용을 해당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제615(a)조). 그리고 금융기관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소비자신용보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623(a)(7)(A)조).

나. 손해배상책임과 소비자 보호

「공정신용보고법」은 법 위반 시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고의나 과실로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제616(a)조, 제617(a)조).

2-2 「금융서비스현대화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5편(Title V – Privacy)은 금융 계열회사 사이에 고객 금융거래 정보인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의 공유를 통한 활용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 체제 하의 금융기관 계열회사 사이에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를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비공개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비공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가. 보호되는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되는 정보는 금융 거래에서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정보’이다. 비공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가 제외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말한다. 즉 “①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 ②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금융정보, ③ 그 밖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금융정보”를 말한다(제509(4)조). 이런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보다 좁다고 볼 수 있다.

나.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

금융기관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고객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한 금융기관의 정책과 지침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503(a)조). 이러한 통지 내용에는 금융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비공개 개인정보, 계열회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비공개 개인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제3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03(a)(b)조).

다. 비공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 대상 기관이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차이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사이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계열회사 사이에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에 금융기관이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정보 제공에 관한 정책이나 지침 등을 통지하면서 해당 고객이 거부할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Opt-out)을 알려야 한다. 즉 “① 비공개 개인정보가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이나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확실히 알려줄 것, ② 고객에게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 ③ 고객이 비공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502(b)조).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Opt-in)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영국

영국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이 있다. 1984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1998년에 개정된 바 있고, 이후 유럽연합이 제정한 GDPR을 반영하여 2018년 대폭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개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GDPR의 영국 내 적용에 관한 사항, GDPR 적용 범위 이외에 관한 사항, 법 집행기관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GDPR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GDPR의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GDPR이 회원국에게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회원국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타 GDPR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법률 개요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정보기관(Intelligence Service)의 법 집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는 개인정보 감독당국인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권한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 법 집행 절차, 민원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보충 규정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GDPR과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라 함은 “식별되었거나 식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①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정보통신망상의 식별자를 통해서 식별되었거나 ② 특정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이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3조 제3항).

3-3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6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 집행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항상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감독당국이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제35조). 둘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특정되어야 하고, 명확해야 하며,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위배되어 처리되어어서는 아니 된다(제36조). 셋째, 개인정보 처리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과도해서도 안 된다(제37조). 넷째, 처리된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거나 정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8조). 다섯째, 처리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여섯째, 처리된 개인정보는 적절한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0조).

3-4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가. 개인정보 교부 · 열람권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처리의 목적과 법적 근거, 관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가 제공된 기관, 개인정보 보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교부·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4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개인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자체 없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제45조 제3항).

나.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제46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제47조 제1항).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나 아직 증거 보전 목적 때문에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해야 하며, 개인정보주체가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아직 정확성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제47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개인정보주체는 그러한 삭제나 제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47조 제4항).

다. 자동화 처리에 구속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화 처리에만 근거해서 개인정보주체에 대해 불리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49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의하여 자동화 처리에 근거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50조).

3-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가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56조 제1항), 이러한 조치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고(제56조 제2항), 기술적·조직적 조치는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최신의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제56조 제3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수탁처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제59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보존 유지해야 한다(제61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제64조). ⑤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제66조).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보호인(Data Protection Officer)을 선임해야 한다(제69조).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허용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제73조).

4 일본

4-1 개관

일본도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이 있다.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과 더불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5년 9월 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① ‘개인식별부호’의 신설에 의한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② 인종이나 병력(病歴) 등 민감 정보인 ‘요배려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에 대한 특별 규제, ③ 익명가공정보 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의 활성화, ④ 개인정보의 적정한 유통의 확보, ⑤ 단일 규제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⑥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역외 적용 규정 신설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당국인 금융청이 제정한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이 있어,

금융분야에 적용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4-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생존한 개인에 관계된 정보로서 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개인식별부호(個人識別符號)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본인을 판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 녹음정보 등을 들 수 있다.

4-3 개인식별부호

개인식별부호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식별부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 중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즉, “① 특정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전자계산기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변환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로서 당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나 ②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이나 개인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할당되거나 개인에게 발행된 카드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록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로서 그 이용자나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마다 달라지도록 할당되거나 기재 내지 기록됨으로써 특정의 이용자나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정령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개별식별부호는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문 인식 정보, 안면 인식 정보 등이 있으며, 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권 번호, 기초연금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개인번호 등이 있다(제1조).

4-4 요배려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종이나 병력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취급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요배려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 즉 ‘배려가 필요한 정보’란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病歴), 범죄 경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 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요배려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제17조 제2항),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요배려개인정보가 취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5 익명가공정보

2015년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익명가공정보란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얻어진 개인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항).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공하거나(제36조 제1항) 가공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제36조 제2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이나 임상 시험 등을 할 수 있어 의료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독립된 감독기관인 독립행정위원회로서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제59조). 위원장과 위원 8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되며(제63조), 5년 임기 중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직되지 않도록 하여(제62조)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용성에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제60조)을 위해서 보고, 검사, 지도, 조언, 권고 및 명령 권한과 규칙 제정권 등을 갖고 있다(제40조 내지 제42조, 제74조).

4-7 개인정보의 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

2015년 개정법은 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입한 것이다. 즉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3조 제1항)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제24조 본문). 다만,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며(제24조), 이 경우 해당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의 정지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된다(제23조 제2항).

4-8 역외 적용

2015년 개정법은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련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서 당해 개인정보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제75조) 역외 적용 규정을 새로이 두고 있다.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등으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외국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외국 사업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역외 적용 규정을 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사나 명령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역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75조).

5 주요국의 비교 평가

유럽연합의 GDPR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아주 선도적인 법규라고 할 수 있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광범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주체의 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권리 강화를 한 것은 바로 GDPR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GDPR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연합 지역 내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 GDPR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단일한 법률은 없고, 연방법인 「공정신고보고법」에서 소비자신용평가기관인 소비자신용보고기관(CRA)이 소비자신용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신용 평가와 소비자신용보고서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연방법인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비계열회사에게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방식에 있어서 사후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영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GDPR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어 그 규제 내용은 GDPR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18년 시행된 GDPR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단일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법은 단일 규제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감독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역외 적용에 관한 조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기업 활동의 국제화 추세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 핵심정리

1. 개인신용정보 수집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예외 사유의 경우에만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정보집합물의 결합

-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해야 한다.
- 정보집합물이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4.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처리 업무의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①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자와 동일하게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신용정보전산체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 운영에 따른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 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6.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유지 의무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 신용정보전산체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선임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와 관련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9.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유 기간 규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0.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한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위 ①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③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통계 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 특히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의료 관련 정보(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1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활용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데(즉 추가 정보를 사용하면 식별화가 가능해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익명정보는 완전히 비식별화된 정보를 말하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①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 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②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③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④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를 한 경우 그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등 가명처리와 관련한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된다.

-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신용정보법상의 일부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

1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동의 방식은 ① 서면, ②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③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④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통계 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은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13.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와 고지

- 신용정보회사 등은 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또는 ③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④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함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일정한 고지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4. 정보 활용 동의 등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철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문서 등으로 자신의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7.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8. 개인신용정보의 교부 · 열람 및 정정 청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9. 신용 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0.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1. 신용정보의 무료 열람 권리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① 개인신용평점, ②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22. 채권 변동 정보의 교부 청구 · 열람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와의 일정한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취득 · 양도 · 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의 변동 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23.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자동화 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4. 연락 중지 요청권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5.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의무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이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6.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 누설 및 이용 금지 의무

-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7. 신용정보 누설 시 통지 의무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8.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 의무

-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29.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 통지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 상거래 거절 근거의 신용정보 고지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1. 손해배상책임

-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해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신용정보의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 사유로 인해서 신용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손해배상 청구, 즉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2.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업무 처리 수탁자가 신용정보전산체계의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신용정보를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3.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 보관함으로써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는 기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 ·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하며,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 ·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3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융거래 정보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라고 한다.

35. 데이터전문기관

-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6.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라고 한다.
-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 ·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37.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라고 한다.

38.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신용조회업이란 “기업정보조회 업무,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기업신용조회회사라고 한다.
- 기업정보조회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기업신용등급 제공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기술신용평가 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9.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조사회사라고 한다.

40. 감독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의 또는 경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자료 제출, 처리 중단, 시정 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41. 벌칙 및 과태료

-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데, ① 신용정보회사 등과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와 ② 누설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신용정보 및 개인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가 가장 중한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된다.
-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

42.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 2016년 5월 27일 제정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인 이전(移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법규이며, ① 적용 범위 ② 개인정보의 정의(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③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④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⑤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의 책임 강화, ⑥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요건, ⑦ 과징금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3. 미국

-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규제에 관한 단일 법률은 없고 여러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법률은 「공정신용보고법」과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며, 「공정신용보고법」은 소비자신용보고기관(CRA; Consumer Reporting Agency)이 작성하는 소비자신용보고서 (Consumer Report) 내용의 정확성과 기밀성 유지 등 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과 소비자신용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금융거래에서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계열회사 사이에서는 개인 금융정보를 자유로이 제공할 수 있으나, 비계열회사에게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44. 영국

- 영국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이 1984년에 제정되었으며, GDPR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된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 ②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③ 정보기관(Intelligence Service)의 법 집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 감독당국인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권한과 업무, ⑤ 법 집행 절차, 민원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5. 일본

- 일본도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2015년 9월 개정법(2017년 5월 시행)은 ① ‘개인식별부호’의 신설에 의한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② 인종이나 병력(病歴) 등 민감 정보인 ‘요배려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에 대한 특별 규제, ③ 익명가공정보 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의 활성화, ④ 개인정보의 적정한 유통의 확보, ⑤ 단일 규제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⑥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역외 적용 규정 신설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3
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실무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집중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 및 결합

제3절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파기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실무



💡 학습목표

- ① 개인신용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 집중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②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처리, 이용, 결합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③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 학습개요

신용정보의 의미 · 종류 및 신용평점 · 등급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관리 및 결합 실무에 대해 학습한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 및 파기 등 실무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학습한다.



용어해설

① 신용정보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의미한다.

② CR(Credit Registry)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구이다. 한국은 기초 정보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공적 CR과 사적 계약에 기초해서 정보를 모으는 민간 CR이 공존하고 있다. 공적 CR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며 민간 CR은 흔히 민간 CB라고 한다.

③ 신용평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계량모형을 통해 계산한 점수이다. 예를 들어 국내 CB들은 개인의 신용평점을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한편 신용등급은 신용평점을 부도율에 근거한 Cutoff 기준에 따라 배정한 등급이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있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양상이나 그 이용 내지 활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아야 한다. 신용이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돈 거래에서 신용이 있다는 것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출 등 금융거래는 물론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신용을 기초로 한다. 사용한 뒤에 비용을 납부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신용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용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신용정보이다. 때로는 상거래에서 신용정보가 이용되기도 한다. ‘신용정보’란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좋은 일이 된다. 금융회사는 신용거래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개인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걸맞는 조건으로 편리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성명, 주소 등), 신용도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금융거래정보(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능력정보(소득 및 자산, 재산세, 소득세 등), 공공기록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 등이 있다.

1-1 주요 개인신용정보 구분

〈표 III-1〉 주요 개인신용정보

구분	내용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종류, 기간, 금액 등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득 및 재산,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등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결과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출처: 금융감독원(2021)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한도나 대출 금액, 대출금리와 같은 거래 조건을 정하게 된다. 신용평점과 등급은 개인의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계산한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우선 신용평점이란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와 같은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1점에서 1,000점으로 수치화한 지표이며, 평점이 높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불량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개인신용평점과 등급기준

〈표 III-2〉 개인신용평점 산출 예시

평가 항목	배점 구간	배점
연체 건수	0건	300
	1건	80
	2~5건	20
	5건 이상	0
총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	200
	1~5천만원	100
	5천만원 이상	0
신용카드(한도) 소진율	0~30%	300
	30~90%	200
	90% 이상	50
신용거래기간	20년 이상	200
	10~20년	100
	10년 미만	0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신용정보원(2020)에서 재인용

이 신용평점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은 연체 건수, 총 대출잔액, 신용카드한도 소진율, 신용거래기간 등이 있다. 연체가 없고, 대출잔액이 적고, 신용카드를 한도의 30% 이내로 적게 쓰고, 오랜 기간 신용거래를 해온 경우에 높은 신용평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하는데, 통상 1~3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4~6등급은 연체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부는 단기적으로 연체의 경험이 있거나 비우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불리며 연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부실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 신용등급기준

등급	신용평점	구분
1등급	942~1,000점	우량신용자
2등급	891~941점	
3등급	832~890점	
4등급	768~831점	보통신용자
5등급	698~767점	
6등급	630~697점	
7등급	530~629점	저신용자
8등급	454~529점	
9등급	335~453점	
10등급	0~334점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신용정보원(2020)에서 재인용

1-3 개인신용등급별 의미 및 특징

등급 분류는 CB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내 CB들은 10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같지만 등급의 분류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의 1~2등급은 최우량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고 3~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다. 5~6등급은 중등급으로 단기적으로 연체의 경험이 있거나 비우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연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이거나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이다.

〈표 III-4〉 개인신용등급별 의미 및 특징

등급	구분	거래실적	연체 가능성
1~2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	매우 낮음
3~4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낮음
5~6	일반	주로 제2~3금융권과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 보유	일반
7~8	주의	주로 제2~3금융권과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 예상	높음
9~10	위험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	매우 높음

출처: NICE평가정보/강경훈 · 배영수(2018)에서 재인용

1-4 CR(Credit Registry)

신용정보의 수집은 개인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거나 이자나 대출금을 늦게 갚는 등 신용정보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한국의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신용거래 시작이나 대출금 상환 또는 연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신용정보가 모이게 되며 규정상 5~7영업일, 실무상 약 2영업일 소요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여진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와 민간 CB(Credit Bureau)라고도 불리는 신용조회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거래 여부와 조건을 정하며,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한다. 대사관 등의 경우, 이민 심사 자료로 이용하는 등 금융회사 이외에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은 다양하다.

개인신용정보는 CR(Credit Registry)에서 모아 집중 관리된다. CR은 공적 CR과 민간 CR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기초 정보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공적 CR과 사적 계약에 기초해서 정보를 모으는 민간 CR이 공존하고 있다. 공적 CR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며 민간 CR은 흔히 민간 CB라고 불린다.

공적 CR은 관련 법령·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정보공유가 의무화된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공적 신용정보기관이다. 2016년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국내 유일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되 신용평가는 하지 않는다. 신용정보원은 종전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어 있던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신용정보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수집대상 정보

- ① 금융회사(대부업자 포함): 금융거래실적·연체·상환·대위변제·부도정보 등
- ② 신복위·행복기금: 채무재조정·상환 실적 등
- ③ 공공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세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정보 등
- ④ 법원: 개인회생·파산 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1-5 CB(Credit Bureau)

반면 민간 CB는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생성기관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판매하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이다. 이들은 신용정보 수집뿐 아니라 신용평가까지 담당한다. 즉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등급 및 평점²⁾을 평가하며, 개인 대출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CB로는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들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CB)는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한다. 자료는 개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 과거 신용거래 관련 부정적 정보, 기타 공공기록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정적 정보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인권에 대한 고려 등으로 개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정보의 일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감사원이 금융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때 학력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현재는 학력이 자료수집에서 제외되고 있다. CB사의 개인신용 평가모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투입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개인신용 평가모형의 주요 투입자료 (예 NICE)

평가요소	평가요소 설명	활용비중
상환이력정보	현재 연체 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40.3%
현재부채수준	채무부담정보 (대출 및 보증 채무 등)	23.0%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종류, 신용거래형태 (상품별 건수, 활용비중)	25.8%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기간	10.9%
신용조회정보	신규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활동정보	0.0%
계		100.0%

출처: NICE평가정보/강경훈·배영수(2019)에서 재인용

2) 최신 점수제 시행으로 “신용등급” → “신용평점”으로 변경

다양한 자료가 모인 이후에는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뿐 아니라 평가모형에 입력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자료의 가공 단계가 필요하다.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된 경우 Garbage-in Garbage-out 원리에 따라 아무리 정교하고 우수한 평가모형을 이용하더라도 부정확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거의 기계적으로 평가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의존하므로 평가모형에 맞도록 자료를 가공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2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분석

금융회사나 또는 백화점 등이 개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획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CB사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백화점 등은 거래를 개설할 때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소비자인 개인은 계약 시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 기관에 제공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 이 경우 철회로 인하여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연락중지 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대한 동의 제도는 거래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도 있다.³⁾ 그러나 거꾸로 동의를 통해 거래의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정보 처리의 주도권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동의는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외에 동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보

3) 이하 이 소절의 설명은 권영준(2016) 및 조수영(2018)을 주로 참고하였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자의 입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동의 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주체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동의 절차는 번잡한 데다 동의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형식적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의 내용과 범위,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사례들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동의한다는 세간의 통념을 잘 보여준다.

〈사례 III-1〉 인터넷 거래 약관에 대한 동의의 비실효성

뉴욕대 로스쿨의 Florencia Marotta-Wurgler 교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판매점 81개의 약관에 동의한 47,399가구를 추적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다. 우선, 약관 내용을 읽도록 유도하는 여러 수단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한 차례 더 클릭하게 유도함으로써 약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약관을 읽는 비율은 최대한 0.05%가 증가할 뿐이었다. “동의합니다(I agree)”라는 클릭을 하도록 강제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약관 내용에 최소한 1초 이상 접근하여 읽는 사람들의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또한 약관이 얼마나 친화적인가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잘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약관을 읽는 비율은 1,000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출처: 권영준(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사례 III-2〉 게임판매 약관에 대한 동의의 비실효성

2010년 4월 영국의 게임 회사인 “Game Station”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약관을 읽지 않는가를 실험하기 위해 게임 라이선스(Game License)에 이용자의 “불멸의 영혼(Immortal Soul)”을 회사에 판매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조항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박스(Opt-out Box)를 마련하면서 옵트아웃 시에는 5파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라이선스는 클릭을 통하여 동의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88%의 이용자(약 7,500여 명)들은 이 라이선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영혼 소유권’을 회사에 넘겼고, 단 12%만이 이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여 5파운드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물론 회사는 88%의 이용자들에게도 이 조항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 조항에 따른 영혼 소유권의 이전을 소송으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약관에 동의하는 이용자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출처: 권영준(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려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식적인 동의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정보주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않은 채 동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소비자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형편이다. 이는 이른바 사생활 패러독스(Privacy Paradox)이다. 개인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원한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는데도 그 비용지출을 꺼려하고, 매우 적은 액수의 보상을 제시하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흔쾌히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금액과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 금액 사이의 괴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도적 조치에는 인색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원인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절박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원인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할 유인이 없다는 점에 있다.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술하게 직면한다. 인터넷 등의 비대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동의 상황은 점점 늘어나며 동의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08년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평균 2,518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읽는 데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매년 일반적인 인터넷 등의 광케이블 이용자가 맞닥뜨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숫자는 약 1,462개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기 위해 1년간 사용하는 시간은 약 243시간(14,620분)이다. 이 시간을 투자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으려고 하는 정보주체는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정보주체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읽는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정보주체에게는 실질적인 협상력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읽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로부터 더 확실하고 강력한 동의를 받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동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수집의 원칙적인 정당화 요건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는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또는 확실하고 강력한 동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동의를 더욱 형식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수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관련 약관은 복잡하고 길어진다. 개별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자 할수록 동의를 위해 거쳐야 할 절차는 늘어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정보주체는 번잡함을 느낄 뿐 개인정보 보호는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가령 모든 사항에 일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클릭 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가리지 않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하게 통과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경향도 동의의 복잡화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의 보호가 부실해지는 예이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배가될수록 동의는 점점 형식화된다. 따라서 동의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정보를 통제한다는 느낌만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인 동의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쉽게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요식적 동의를 이유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넘어간다. 또한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으면 그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위 원칙은 동의를 매개로 와해될 위험성이 있다.

동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권리 보호의 책임과 부담을 정보주체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사전 동의 제도는 특히 그러한데 그 부담이 과도함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만 부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동의제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현행 동의 제도의 관철이 비현실적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가령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 사물인터넷은 현행 동의 제도와 병행하기 어렵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데이터가 상호 공유되는 지능형 기술 내지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시계,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키, 스마트홈, 스마트밴드 등 일련의 스마트 상품들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상용화된 사례들이다. 사물인터넷은 미리 정하여 놓은 범위에서 사물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체제이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도시, 집, 자동차, 건물, 기기 등이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의 공유와 교환이 요구된다. 사물인터넷 체제 하에서는 각 사물에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센서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사물과 사물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 교환하고 처리한다. 그

점에서 인공지능 사회 내지 초연결 사회가 현실화되고 일상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는 엄청난 양으로 축적되고 가공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체제 하에서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동의 제도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동의 제도는 데이터의 효율적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동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는 사물인터넷 체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엄청난 양과 이에 대한 침해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이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동의 제도는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동의 제도에 기초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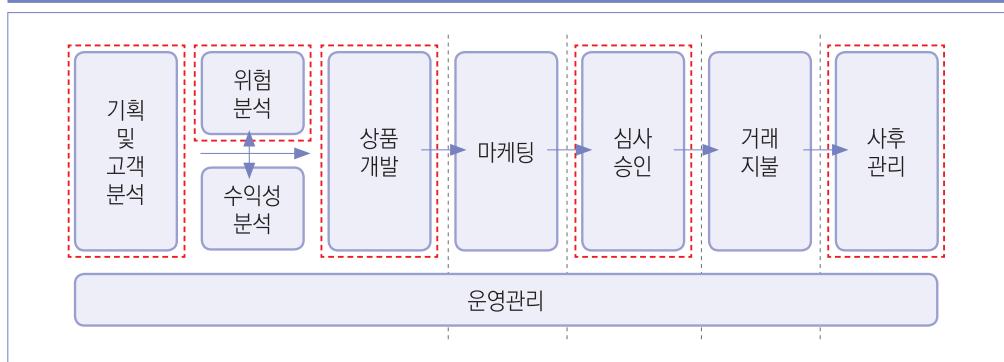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 및 결합

...

1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음 <그림 III-1>은 금융회사에서 각 업무단계별로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인 고객에 대해 분석해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신용정보 역시 고객 분석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수익성과 위험성이 얼마나 될지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개인신용정보가 사용된다. 특히 신용정보가 없으면 위험 분석이 가능할 수 없다.

<그림 III-1> 금융회사 업무단계별 신용정보 활용⁴⁾

출처: 이재근(2019), 신용정보 가치 창출 및 활용 사례, 2019.5.15

4) 신용정보가 많이 사용되는 업무를 붉은 색 테두리로 표시하였다.

금융상품이 개발된 뒤에 여러 고객에게 판매했다고 하자. 수신상품이 아니라 여신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조건이나 금리 등을 정하기 위해 해당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개인신용정보가 사용됨은 물론이다. 만일 특정 고객의 신용도가 너무 낮다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거래가 이루어져서 여신이 나간 뒤에도 해당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고객의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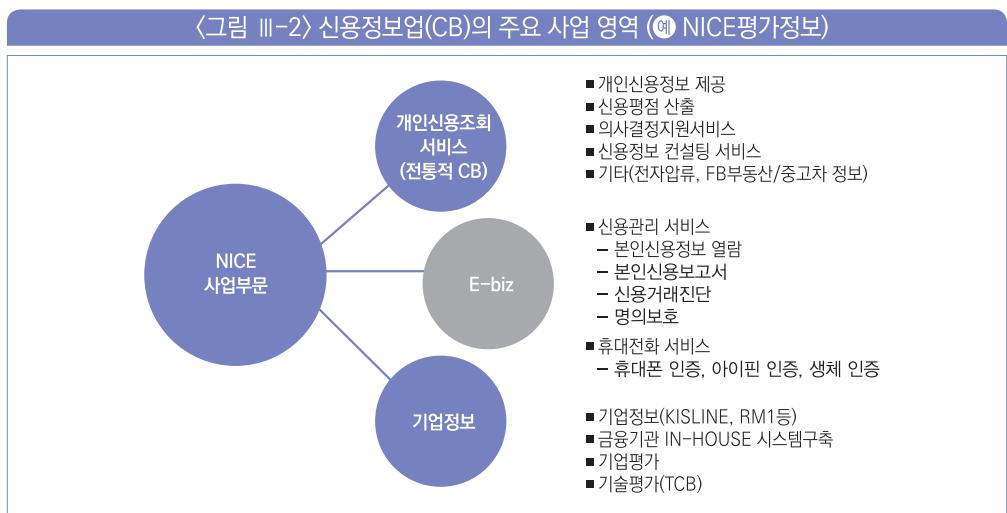
이처럼 금융회사의 업무단계별로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즉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문제는 대출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쪽에 비해 차입을 하거나 신용으로 거래하는 쪽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 정보에 따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 등 대출 기관은 담보 및 보증에 의존하는 한편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신용평점(Credit Score)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보다 관리하기 쉽게 하나의 지표로 축소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개인신용평가

개인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최종적으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는 은행, 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회사(CB)⁵⁾의 신용평가는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투입요소이다. CB는 은행·카드·캐피탈·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유통·통신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의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수집하여 CB사에 제공한다.

5)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용조회업무를 말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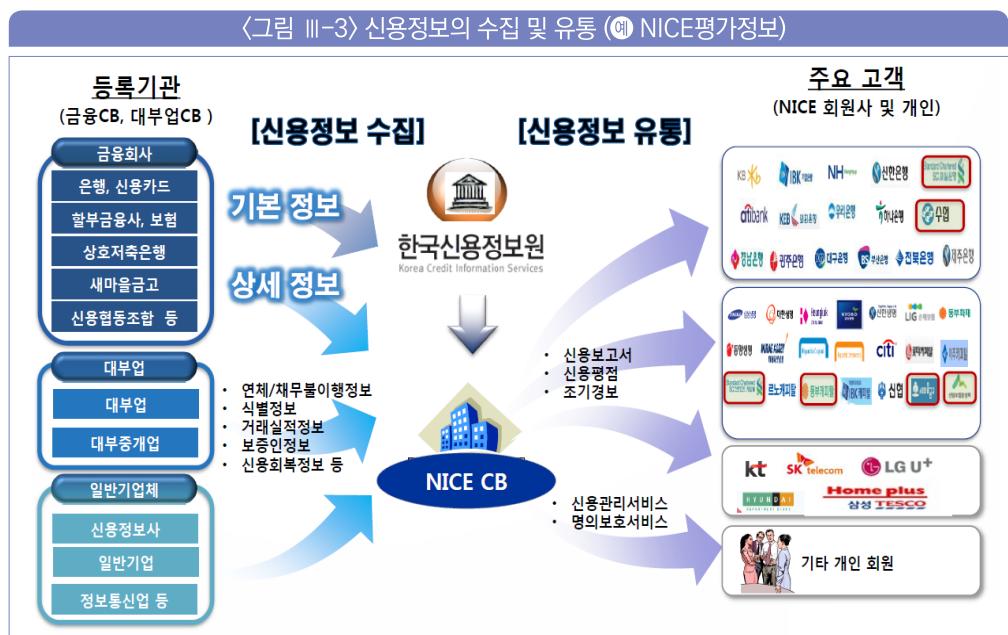
개인의 신용등급 및 평점은 신용정보회사(CB)가 개인의 금융회사 거래정보 및 공공기관 보유정보 등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산정한 등급으로 개인의 신용활동과 관련한 신뢰도를 점수(평점) 또는 등급으로 분류한 상대적 지표를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CB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형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신용등급은 개인 채무의 질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판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출처: NICE평가정보(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에서 재인용)

개인의 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신용정보회사(CB)가 평가하며 대형 금융회사들은 CB가 산출한 등급을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후 여심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과 같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CB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B들이 주로 연체실적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금융정보 및 비금융 거래정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평가등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 금융기회의 감소와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거래고객의 정보의 공유를 꺼리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긍정적 정보의 본격적인 수집 및 이용이 아직 불충분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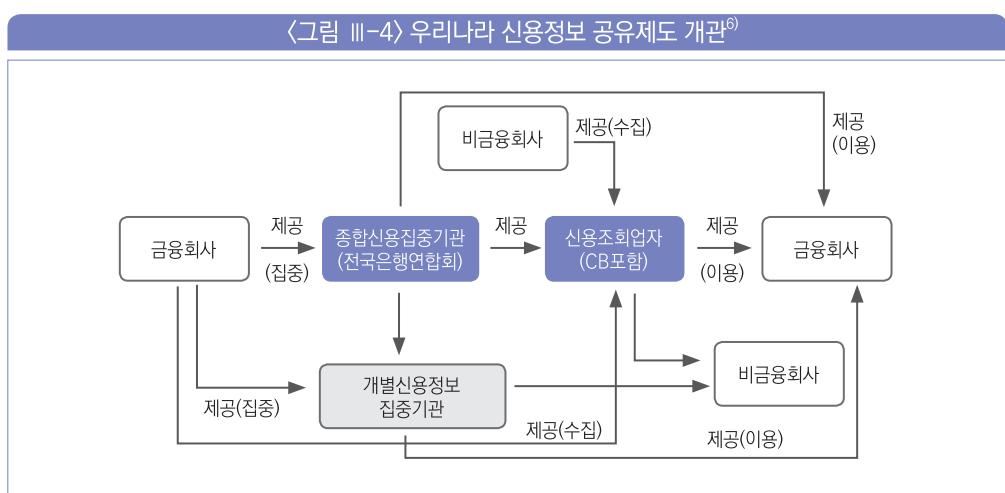


출처: NICE평가정보(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에서 재인용)

CB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크게 자료수집 → 평가모형 → 등급 → 등급 및 평점(필요시)의 3 또는 4단계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평가모형에 입력할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정확성 확인 및 표준화 등 편집 과정을 포함한다. 평가모형 단계는 CB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량모형에 자료수집 단계에서 확보된 투입정보를 입력하여 평점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등급산출 단계에서는 계량모형에 의해 산출된 평점을 목표부도율에 따른 등급 정의 및 Cutoff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필터링, 등급조정 등의 사후적인 조정 절차를 거친다.

평가 절차는 개인에 대한 평가와 기업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비슷하나 개인과 기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2003년 카드 사태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2년 9월 한신정·한신평정(현 NICE평가정보)에서 개인 CB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국내 8개 금융사가 연합하여 KCB를 설립하였다.

신용정보회사(CB)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흐름은 다음의 <그림 III-4>와 같다. CB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가공하여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으로 일종의 정보 풀(Pool)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개인의 신용등급 및 평점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CB)는 대출 건수 및 금액, 연체 금액 및 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 평점은

6) 그림은 현재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설립되기 전 은행연합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때의 상황이다.

1~1,000점으로 산출되며 이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개인 신용등급 및 평점(1~10등급)을 부여한다. 신용평점 및 등급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승인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는 아파트 임대, 주택 구입, 자동차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신용 평점이나 등급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는 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CB)들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수많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자료가 수집된 다음에는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평가모형에 입력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자료의 가공 단계가 필수적이다.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면 정교하고 우수한 평가모형을 사용하더라도 평가 결과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모형에 맞도록 자료를 가공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가공 단계 다음에는 자료를 평가모형에 투입하여 신용평점을 계산한다. 평가모형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구축되는데 이 단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모형 담당자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표 III-6〉 국내 개인 CB사의 평가항목별 비중

평가부문	주요 내용	활용비중	
		NICE	KCB
상환이력정보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연체정보 등)	40.3%	27.0%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 채무의 수준(대출금액,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23.0%	25.0%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의 종류 및 형태(상품별 계좌간수 등)	25.8%	34.0%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기간(최초/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 등)	10.9%	14.0%

출처: 금융위, LIG투자증권(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에서 재인용)

개인신용평가의 경우 계량모형을 통해 부여된 평점에 대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사유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로 대출, 연체, 현금서비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NICE의 경우 부정 사유코드 38개와 긍정 사유코드 9개로 구분되며 최대 6개(긍정 3개, 부정 3개)까지 제공된다. 한편 평점과 사유코드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고객에 대한 보조 정보로 프로파일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로 불량고객 및 Thin-Filer가 주 대상이다.

민간 CB사들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은 신용정보가 등록된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여 평점을 산출하는 계량모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역할과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평점 및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이 CB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정보는 Experian, Equifax, TransUnion 등 3대 CB가 수집·관리하는 반면 평가모형은 FICO에서 개발한 신용평점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FICO(Faire Isaac Corporation)는 1956년 설립된 신용평점모델 개발회사로 미국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발급의 약 90%가 FICO의 신용 점수에 기초해 결정하는 등 현재 미국에서 절대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개별 신용정보회사는 FICO Score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유 데이터의 차이 및 모형 변경 등으로 동일한 개인에 대해 서로 상이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평가모형들은 부도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을 둔 계량모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하에서는 간단한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한 신용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신용평가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변수는 특정 차입자가 연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속 변수가 두 가지 또는 복수의 값을 취하는 범주형 변수일 때는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과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적합하다. 실무적으로 신용모형 개발 시에는 로지스틱모형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도 도입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로지스틱모형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예를 생각해보자. 새 가구로 소파의 구입 여부를 분석한다고 하자. 설명변수로는 가계소득, 현재 쓰고 있는 소파의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새로운 소파 구입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질적인 변수로 ‘구입’ 또는 ‘구입하지 않음’ 두 가지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실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은 대출을 신청한 잠재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은지(우량 고객) 또는 낮은지(불량 고객) 여부에 관심이 있으므로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로지스틱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text{Log}(P_i/1-P_i) = a + b_1X_{i1} + b_2X_{i2} + \dots + b_nX_{in}$$

여기서 P_i 는 i 번째 고객이 불량고객일 확률이며 X_{ij} 는 i 번째 고객이 j 번째 설명변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낸다.

NICE평가정보나 KCB 등 민간 CB들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투입하여 미래 연체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신용평점이나 등급을 산출한다. 여기서 자료의 적절한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이 길면 더 예측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가 연체율 예측에 왜곡된 효과를 미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속변수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의 정의는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출 발생 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를 불량고객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체 확인기간을 12개월로 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불량고객은 대출이 실행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용정보원이나 CB의 연체정보에 등록된 고객을 지칭한다.

종속변수를 정한 다음에는 설명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별, 기간별 분류기준을 정한다.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변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략적으로 분류할 경우 유의미한 변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각각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몇 개의 부류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과 비은행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구분하고 여기에 보험이나 캐피탈, 카드회사 등을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간별로 가용한 자료의 시간적 길이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기간이 4년일 때 설명변수의 기간을 6, 12, 18, 24, 30, 36개월로 구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준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신규로 발생한 금액을 파악하면 어떤 누적정보가 영향력이 크며 어떤 장기간 누적정보가 영향력이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많은 수의 설명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 가운데 설명력 있는 변수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Stepwise 방식이다. Stepwise 방식은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로 가능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론적으로 회귀모형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Efroymson(1960)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수선택을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설명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스코어 카이제곱통계량 등을 이용해서 모형에 유의미한 변수를 추가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소거해 나가는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Stepwise 방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Rencher and Pun(1980), Copas(1983) 등은 Stepwise 방법을 원용한 경우의 검증결과에 통계적 편의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Wilkinson and Dallal(1981)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 검증에 의한 0.1%의 유의수준이 실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최상의 모형이 실무에서도 반드시 최적의 모형은 아니며, 신용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통계적 편의나 왜곡의 소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변수를 정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신용정보를 로짓모형에 투입하여 각 설명변수의 계수 값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다. Stepwise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채택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추정치를 살펴보면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일부 확인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변수가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지배적으로 설명할 경우, 다른 변수는 나머지 부분만 설명하게 되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기 위해 한 변수만을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한 후 결과가 직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계수 값의 추정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만일 부호가 양(+)이면 종속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음(−)이면 종속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정치의 절댓값이 클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유의성은 추정치가 제로($=0$)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추정치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정치의 분산을 고려한 양측 검증통계량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학에서는 왈드 카이제곱통계량을 널리 사용하며 p -value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분포에서 해당 통계량 값보다 큼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p -value가 작을수록 표본자료는 귀무가설이 참인 분포와 일치도가 낮게 되어, 표본자료는 귀무가설에서 추출된 표본이라는 가능성보다는 대립가설이 참인 분포에서 추출된 표본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신용정보 분석의 경우를 더 생각해보자. 회귀분석 결과 3년간 신용카드 개설 건수, 1년간 은행권 담보대출 건수 등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가 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이는 3년간 신용카드 개설 건수나 1년간 은행권 담보대출 건수가 많은 고객이 불량일 가능성이 더 낮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신용카드의 발급이 일정 수준의 신용여력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담보대출도 담보제공 능력이 미래 상환능력을 일정 부분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유추할 수 있다. 정보의 시간적 길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개설정보는 3년간의 정보가 유의미한 데 비해 담보대출 정보는 1년간의 정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설명정보와 관련하여 시간적 길이를 다르게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회사(CB)는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항목과 불량률(부도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여 평점을 계산한다. 앞에서 평가항목은 충분한 예측력과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필요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평가항목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상환 이력, 부채수준, 신용이력 기간, 신용거래 패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각 고객이 불량고객일 확률을 계산하면 이를 점수화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료수집 단계에서 확보된 값을 평가모형에 입력하여 0~1,000점의 평점을 산출한다. 업권별 구분 없이 단일한 대역으로 1~10단계로 등급화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평점 산출은 조회 시점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평점을 일괄적으로 산출한다. 평가모형의 구조는 우량(약 80%), 준우량(약 10%), 불량(약 10%)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용평점을 서열화한 후 부도율과 관련된 Cutoff 기준에 의해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불량률의 수준이 충분히 차별화되고 각 등급별로 분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점을 불량률(부도율)을 기준으로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NICE의 경우 6등급 이상을 정상등급으로 7~10등급을 주의 및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870점 이상의 1~2등급은 최우량 등급으로, 805점 이상인 3~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665점 이상인 5~6등급은 일반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하로는 7~8등급을 주의등급으로 나머지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한다. 다음의 표는 KCB에서 개인신용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I-5〉 개인 신용등급 평가 및 구분 기준

신용등급 구분 기준			
등급	구분	거래실적	부실화 가능성
1~2등급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낮음
5~6등급	일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 연체 경험 있음	일반
7~8등급	주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 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됨	높음
9~10등급	위험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	매우 높음

신용등급 평가 기준		
구분	신용등급 하락 요인	활용 비중
부채 수준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카드 한도 초과	35%
상환 이력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의 세금 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간 3회 이상 미납 시	25%
신용 형태	고금리 상품 과다 이용	24%
거래 기간	단기간(3~6개월) 집중 대출 및 연체	16%
신용 조회	(금융 미거래자의 신용등급 부여시에만 활용)	0%

* 활용 비중은 전체 차주 평균이며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비중이 적용됨

출처: KCB(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에서 재인용)

한편 사후적으로 신용평가의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다. 자료입력 단계의 오류, 자료정리 단계의 오류, 평가모형의 오류 등 각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가모형의 오류는 다시 평가모형에 피드백이 주어져 계량모형의 정확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신용평점이나 등급이 산정된 후 이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K-S통계량과 AR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및 기업의 부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를 통해 모형의 변별력을 측정한다. 먼저 K-S(Kolmogorov-Smirnov) 통계량은 평가모형이 정상차주와 부도차주를 구분하는 변별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정상차주에 대한 평가점수의 분포와 부도차주에 대한 평가점수의 분포를 비교하여 계산된다. 이 수치가 클수록 정상 차주와 부도 차주의 분포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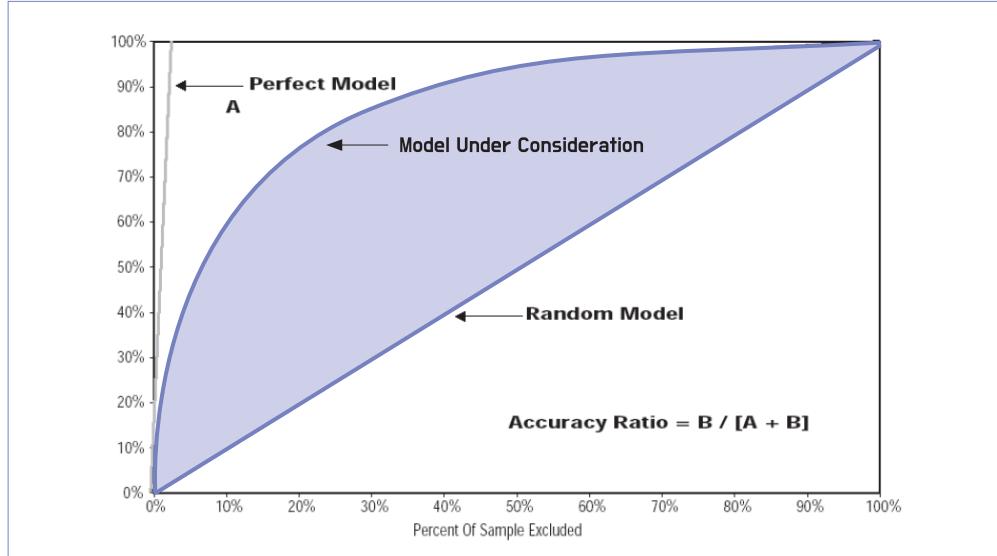
〈그림 III-6〉 K-S 통계량 그래프(예시)



출처: 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AR(Accuracy Ratio)은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지표로 신용등급에 따른 우량 누적분포와 불량 누적분포를 비교해 모형의 변별력을 판별하는 성능지표이다. AR은 누적 우량구성비를 x축으로, 누적 불량구성비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 사이의 면적의 합에 비례하며 면적이 넓을수록 변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30% 이상이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그림 III-7〉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곡선과 AR (예시)



출처: 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3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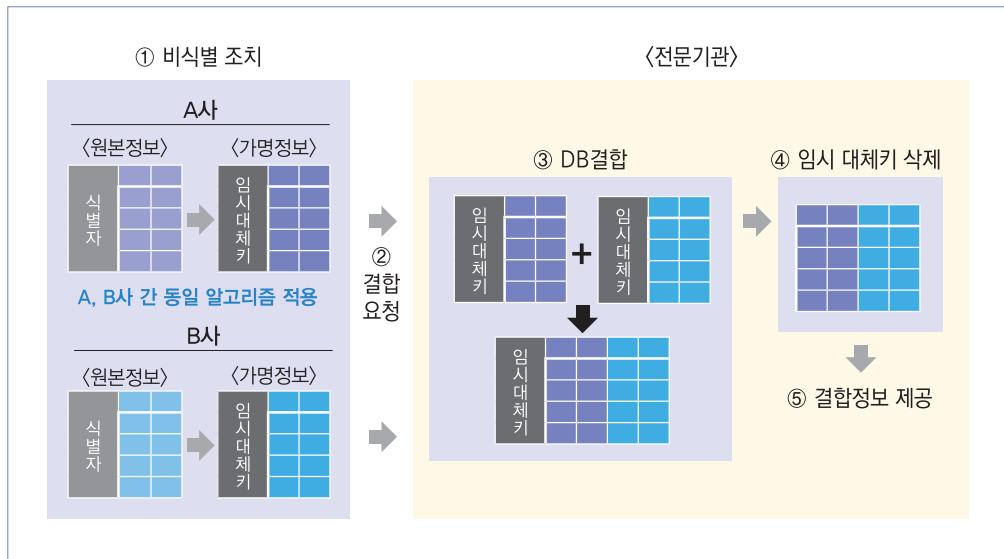
최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전통적인 신용정보뿐 아니라 SNS, 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신용평가의 예측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된 이질적인 데이터들의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결합할수록 데이터 주체를 알아보기 쉽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1월 개정, 2020년 8월 시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정보집합물(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셋)에 관한 결합방법에 제한을 두었다. 즉 어느 정보집합물을 타인이 보유한 정보결합물과 결합할 경우 일정한 데이터전문기관⁷⁾을 통해야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7)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며 금융업의 경우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수행한다.

정보처리자들의 정보집합물 결합에 관한 강력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합방법의 제한은 정보집합물 결합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가이드라인은 기업 간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임시 대체키를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

〈그림 III-8〉 임시 대체키를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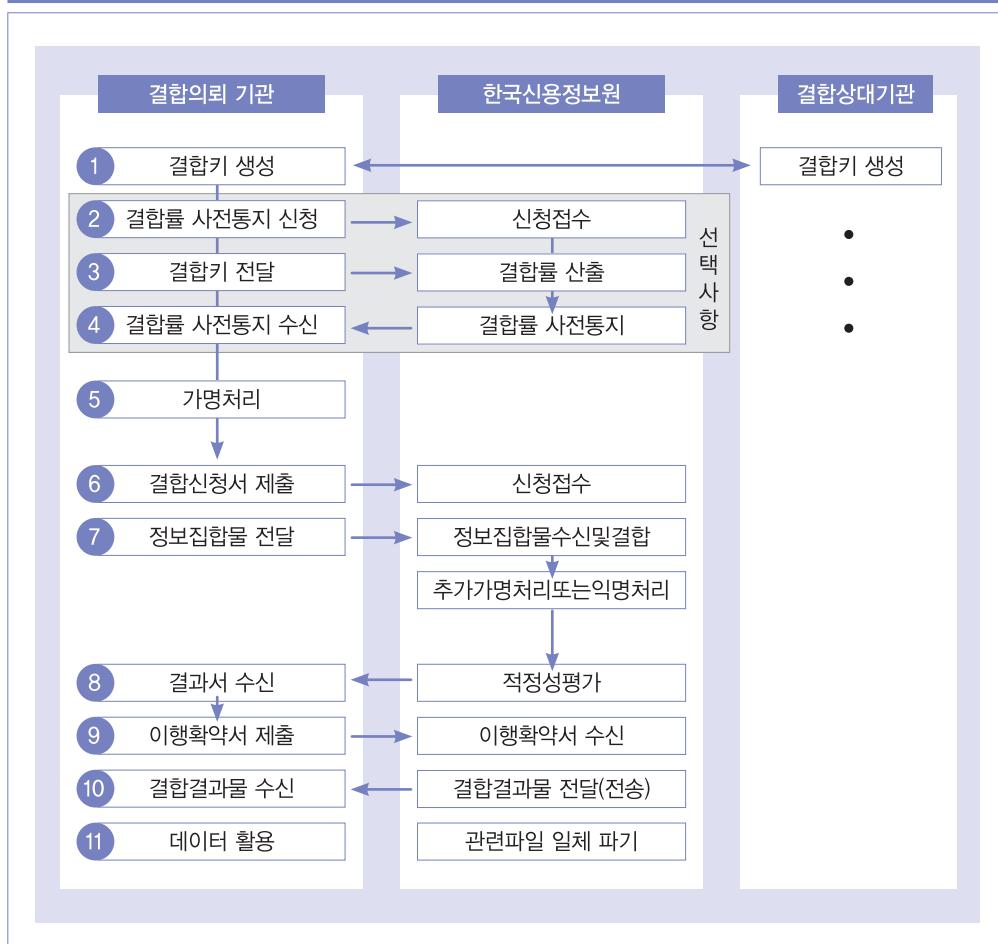


출처: 양기진(2019), “개인정보의 통계작성 · 연구 목적 활용에 관한 검토 – GDPR의 관점상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8(5)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여럿이지만 그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이하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결합의뢰기관은 결합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사전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결합의뢰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고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한다. 여기서 결합의뢰기관은 결합 신청을 하기 전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가명 또는 익명처리해야 하며 결합키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달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하는 한편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합 완료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이 나오게 되면 결합결과물을 전달하는데 결합키는 삭제하고 제공한다.

〈그림 III-9〉 정보집합물 결합절차



이상의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결합키의 생성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합의뢰기관은 결합상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키를 생성한 후 결합 대상 데이터에 추가해야 한다.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 생성에 활용할 정보, 솔트(salt)값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결합을 위한 식별정보의 가명처리에 사용하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한다.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할 때는 국내 권고기준인 보안강도 112비트 이상의 해시 알고리즘 SHA-224 이상의 사용이 권고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합키 생성을 위한 입력값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성된 결합키는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하며 다시 원본 값으로 복원할 수 없어야 한다.

결합키의 생성과 함께 결합의뢰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가명처리해야 하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결합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기초정보, 가명처리현황, 결합의뢰기관의 데이터 관리수준, 이용기관의 데이터 관리수준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의 전달은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한편 주기적 · 반복적 정보집합물 결합의 경우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결합의뢰기관은 동일한 상대기관, 동일한 활용목적, 동일한 형태의 정보집합물을 주기적 · 반복적 결합하고자 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주기적 · 반복적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결합정보를 신용정보주체별로 연결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연결키를 생성하여 결합키를 대체한다. 결합의뢰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결합결과물을 데이터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주기적 · 반복적 정보집합물 결합이 종료되면 연결키 생성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 준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세탁서비스 제공자는 세탁완료를 알리거나 세탁물을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 ·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 안전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입력 시 입력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오류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나

8) 이 절의 설명은 행정자치부(2016) 및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2019)을 주로 참고하였다.

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기록에서 개인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익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는 한번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곤란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고 그 당시의 최신 보안 기술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및 파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보유 목적이 명백히 영구히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구,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하드디스크, CD/DVD, USB메모리 등의 매체에 전자기(電磁氣)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이와 같이 출력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비록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원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정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표준지침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 현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⁹⁾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양상이나 그 이용·내지 활용의 범위를 결정할 권리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속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본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언제 알릴 것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공개하고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및 이용에 관하여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이념으로서 근대법의 기본정신인 사적 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한계는 타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인의 이익과의 경계가 자기결정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9) 이 소절의 설명은 노현숙(2019)을 주로 참고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인정 범위가 정해지고 타인 및 사회적 이익과의 충돌이 되는 영역에서는 어느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통제권의 정도와 통제권 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 개인정보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결권, 정보의 자결권, 데이터프라이버시, 정보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용어들로써 표현되기도 한다.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개인정보 통제’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개인의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인 및 사회적 이익과의 충돌이 되는 영역에서는 제한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지만 어떠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현실에서 적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보호되도록 한다고 본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여러 학자 및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사적 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권은 통상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근거한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체화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조항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기본권의 내용에서 첫 번째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개인정보자기결정을 절대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동의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도 근거를 찾기도 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가 가능해야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헌법 제16조의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하여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관련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았고, 개인정보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가 후에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의 판례에서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입장으로 대체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편, 국민의 사생활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왔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 구체적인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격권이나 관련 헌법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으나, 국내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구체적인 조항을 우선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의 근거를 인격권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훨씬 폭넓게 적용될 수 있고 보다 추상적인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와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헌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17조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여러 헌법적 권리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였으며 판례를 통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수용되어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등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명문화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기본권으로서 확정되었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확인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¹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룬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사항

- ① 사전적 선택 · 결정권 : 정보활용에 관한 동의권
- ② 보조적 권리 : 정보 열람청구권, 제공 · 이용 사실 조회권
- ③ 사후적 통제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요구권, 동의 철회권
- ④ 소송상 권리구제 : 징벌적 · 법정 손해배상, 침해금지 단체소송 등

10) 이 소절의 설명은 행정자치부(2016) 및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2019)을 주로 참고하였다.

2-1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를 포함한다.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신용평가, 인사평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도 열람요구의 대상이 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일시 및 장소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10일 이내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도 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정보주체의 정정 · 삭제 요구권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일방적인 정정 · 삭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정정 · 삭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 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 · 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 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3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정지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는 그 개념이 넓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정지 요구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처리정지 요구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예외 혹은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대상 처리 유형만을 정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특정 처리 유형의 정지만으로는 그 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이외의 필요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파일(예를 들면, 처리정지 개인정보파일)에 분리·보관하는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정지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설정 등이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정보주체가 요구한 처리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특정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수의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절차 또는 회원가입 절차에 준해서 알기 쉽고 편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권리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내부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의 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5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

일반적인 ‘정보’ 유출 사건 또는 오남용 사건이 그러하듯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건의 경우에도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오남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인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 악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을 위반한 사실(침해행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곧장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위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경우 즉 위법성(違法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위반행위가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될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서양속(公序良俗), 조리(條理),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이 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 또는 경제적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예컨대 재산적 손해라 함은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불법대출 등으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라고 하면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등의 유출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메일, 마케팅광고 등이 수신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인 정보주체가 증명책임을 진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즉 행위(원인)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소위 미필적 고의도 역시 고의에 포함된다. 과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력 · 경험 · 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채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고(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이 부담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정보주체가 기업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정보주체로 하여금 고의 · 과실을 증명하게 하면 사실상 정보주체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 ·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준수율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인 실손해배상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별성이 큰 악성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악성 위법행위의 억지와 예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의 강화를 위하여 실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는 위법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침해행위의 가별성이 더 심각한 유형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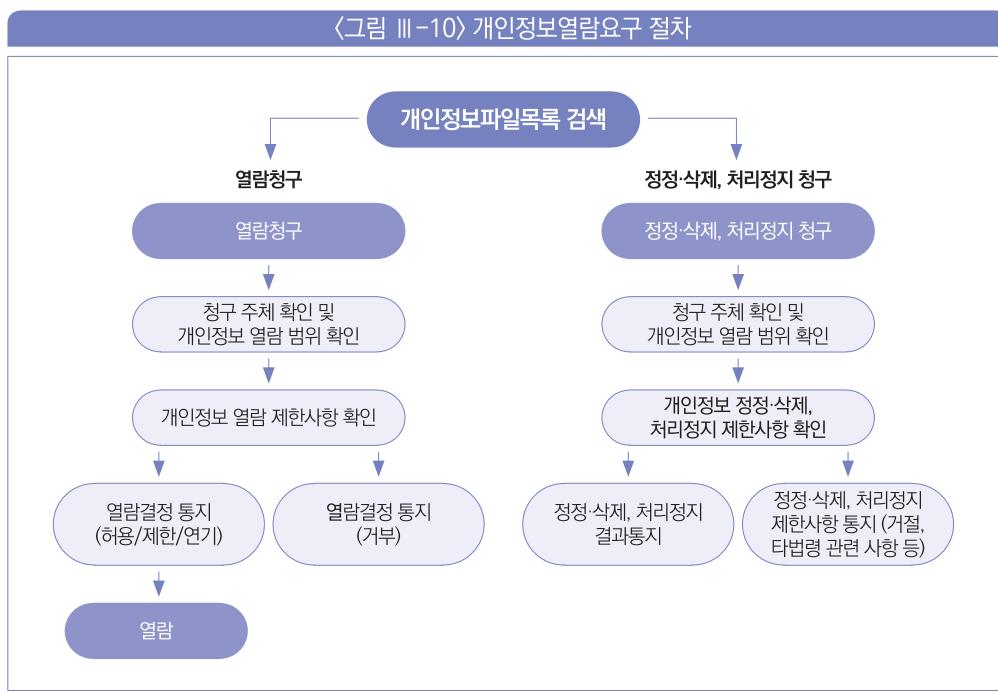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악성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일반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악성 위법행위의 존재, 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불합리한 훼손을 막고, 책임이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불합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방어,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실손해의 3배까지 증액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징벌적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하게 과도한 배상이 되지 않도록 법원이 의무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6항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공개한다.

개인정보 열람은 법원행정처, 각급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서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열람요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III-10>와 같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핵심정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

- ‘신용정보’란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의미한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성명, 주소 등), 신용도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금융거래정보(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능력정보(소득 및 자산, 재산세, 소득세 등), 공공기록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 등이 있다.
- 신용평점과 등급은 개인의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계산한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 신용정보의 수집은 개인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거나 이자나 대출금을 늦게 갚는 등 신용정보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신용거래 시작이나 대출금 상환 또는 연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모이게 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여진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와 민간 CB(Credit Bureau)라고도 불리는 신용조회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2.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분석

- 금융회사나 또는 백화점 등이 개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획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CB사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권리 보호의 책임과 부담을 정보주체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부담이 과도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인 고객에 대해 분석해야 하는데 개인신용정보 역시 고객 분석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가 사용된다. 거래가 이루어져 여신이 나간 뒤에도 해당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고객의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개인신용평가

– 개인에게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는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CB)는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차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신용평가모형들은 부도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을 둔 계량모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로지스틱모형 등이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각 고객이 불량고객일 확률을 계산하면 이를 점수화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할 수 있다. 신용평점을 서열화한 후 부도율과 관련된 Cutoff 기준에 의해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사후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K-S통계량과 AR 지표 등이 많이 사용된다.

5.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된 이질적인 데이터들의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결합할수록 데이터 주체를 알아보기 쉽게 되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결합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결합의뢰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고 결합키를 만들어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전달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하는 한편 적정성 평가를 거쳐 결합결과물을 전달하는데 결합키는 삭제하고 제공한다.

6. 개인신용정보 보호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7. 보안 및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및 파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파기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결합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9.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양상이나 그 이용 내지 활용의 범위를 결정할 권리이다.

10.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며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 정정 · 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 • •

MEMO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4 장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기술 현황

제1절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서비스

제2절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3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해외 사례

제4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국내 사례

제5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지원 서비스

제6절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기대 효과

4장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기술 현황


 학습목표

- ①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및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다.
- ② 핀테크 기업의 분야별 개인신용정보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와 지원 서비스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학습개요

개인신용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와 같이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이해한다. 지금, 결제, 송금, 대출 및 개인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해외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핀테크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지원되는 서비스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용어해설****① SAS, Stata**

각각 SAS Institute와 Stata Corp에서 출시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 수치를 산출하거나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통계 기능을 수행한다.

② R

통계/데이터 마이닝 및 그래프 작업을 위한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 및 산업별 응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주목을 받는 언어이다.

③ Python

간결한 문법으로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이다.

④ 텐서플로우(TensorFlow)

구글이 오픈 소스로 공개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다.

1 서비스 소개

1-1 서비스 정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Financial Bigdata Open System, 이하 ‘CreDB’)은 한국신용정보원(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 및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용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 제공을 통해, 금융업권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작성 및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사회·경제·복지·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혁신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CreDB를 통해 금융정보 DB를 제공받음으로서, 금융업권의 데이터 격차(Data Divide)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신용정보원은 CreDB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보호 조치가 적용된 가상의 분석환경(원격분석시스템) 및 분석 목적의 데이터(CreDB)를 제공한다.

가. 서비스 연혁

2016. 01 한국 신용정보원 출범(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2017. 06 서비스 수요조사 및 구축연구 수행

2017. 11 개인신용정보 표본 DB 프로토타입 개발

2017. 12 비식별정보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 05 표본 DB 시범 서비스 실시

2018.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선정

2018. 12 개인 · 기업 신용정보 표본 DB 개발 및 원격분석시스템 · 서비스 포털 개발

2019. 06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 개시

1-2 주요 서비스 내용

Cre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신용정보를 표본 추출한 뒤 비식별 조치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분석용 DB를 제공한다.

2019년 6월에 개인신용 표본 DB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기업신용 표본 DB를, 2020년 6월에는 보험신용 표본 DB에 이어, 맞춤형 DB는 2021년 4월에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고, 모의DB 서비스로도 확대되었다.

1-3 표본 DB

표본 DB는 개인신용, 기업신용, 보험신용 표본 DB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제공항목은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개인신용정보 표본 DB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DB에 등록된 4,000만 명의 5%의 표본 (약 20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정보 등 26개 항목으로 구성, 향후 순차적으로 속성 확대(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 예정이다.

나. 기업신용정보 표본 DB

신용정보원 기업신용공여 대상기업체 DB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약 150만개 차주(모수의 약 20%)에 대한 대출, 연체(부도), 기술신용 정보 등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021년 4월 기준).

다.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계약현황(인보험, 정액보험) DB에 등록된 개인 약 5,500만 명의 5% (약 270만 명)의 계약관계자정보, 계약정보, 담보정보 등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맞춤형 DB

개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분석 목적에 따라 맞춰 샘플링 규모, 데이터 항목, 추출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로 시범 서비스('20년 하반기)를 거쳐 상용 서비스('21년 4월)를 개시하였다. 기존 표본 DB보다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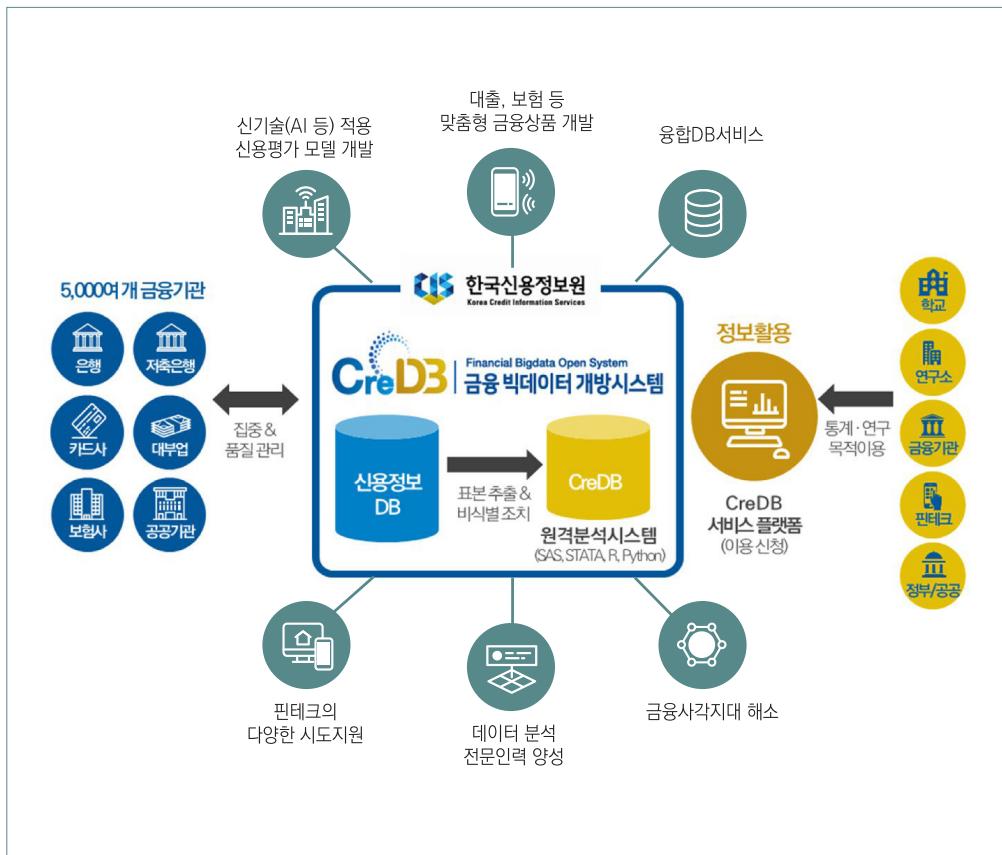
1-5 교육용 DB

실제 개인이 아닌 가상의 차주에 대한 재현데이터(synthetic data)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빅데이터 분석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금융연수원 등 외부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육기관에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1-6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학계, 연구소 등의 교육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를 구축하고 이용자는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용정보 DB를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DB 자체의 반출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림 IV-1〉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출처: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2019. 6.

1-7 서비스의 법적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신용정보의 가공 · 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되는 업무

[관계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의2호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2 이용 신청 서비스 절차

CreDB 포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직접 신용정보 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1 원격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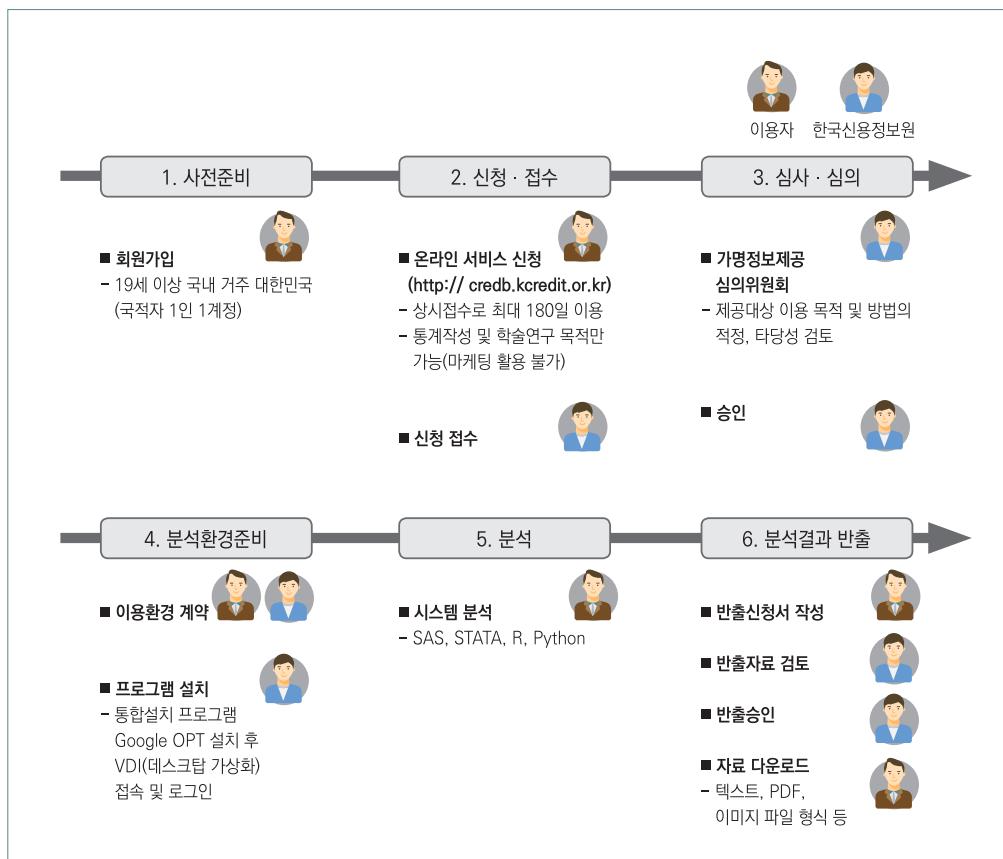
이용자가 원격지에서 접속하여 가상 PC환경 하에서 다양한 분석도구(SAS, STATA, R, Python)를 이용하여 CreDB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 이용자

신용정보 DB를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용 가능하다.

나. 이용환경

〈그림 IV-2〉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 절차



출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서비스 신청 이용절차, 2020.5.
<https://credb.kcredit.or.kr>

- 이용기간 및 비용: 승인된 이용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 DB분석이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최대 180일 이내이고 신청 DB 및 이용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된다.
- 원격분석시스템: 가상의 분석 환경으로 이용자에게 150GB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관련기반을 확충하여 기존 40개의 이용계정에서 60개 이용계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 분석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SAS, R, STATA 등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딥러닝 분석이 가능한 Python과 텐서플로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들은 원격으로만 분석할 수 있고 결과만 반출이 가능하다. (반출승인 필요)

다. 기대효과

첫 번째, 민간 부문과의 상호 보완을 통한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조성한다. 금융데이터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며 대량으로 축적 가능하고 정확도가 높아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금융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금융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제약을 받거나, 지급결제망,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의 인프라는 금융권 내부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신용평가(CB)사의 영리 목적 겸업행위 금지나 카드사·은행 등의 부수업무 제약의 규제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 인프라로서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도모한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딥러닝(Deep Learning)에 필요한 대량의 기초 데이터, 계량화된 최적의 목표, 유사한 훈련과 판단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시킨다. 금융분야 데이터는 다른 분야 데이터보다 대량화, 정형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적합하다.

세 번째, 오픈데이터(Open Data) 흐름 속에서 민간·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데이터 개방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한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통계(통계청), 국세(국세청 준비 중) 등의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금융분야와 다른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협업 추진 시, 융합 데이터 생성·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성장에 기여가 가능하다.

3 국내외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사례

3-1 미국 사례(주택담보대출 자료 공개)

미국 주택 시장은 경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로, 경제가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집을 구매하거나 지을 의사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큰 신뢰를 대변한다고 여긴다.

주택시장 활동은 중앙은행이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민감하다. 연방 기금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은 소비자 대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방정부 기관(연방주택 금융청, 연방 주택청, 주택도시 개발부)은 연구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 오다,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2018)을 통해 연방 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주택 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과 금융 소비자 보호국(CFPB;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 조건, 연체 정보, 주택 착공, 신규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및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등을 민간이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의 5% 내에서 샘플링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보고서는 담보대출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가 작성하며, 주택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확실한 의사를 대변해주는 광범위한 지표이다.

빅데이터가 개방되면 인공지능(AI)이 대량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딥러닝’ 기술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연방주택 금융청과 금융 소비자 보호국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일찍이 빅데이터 활성화에 나섰다.

3-2 국내 사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정부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방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를 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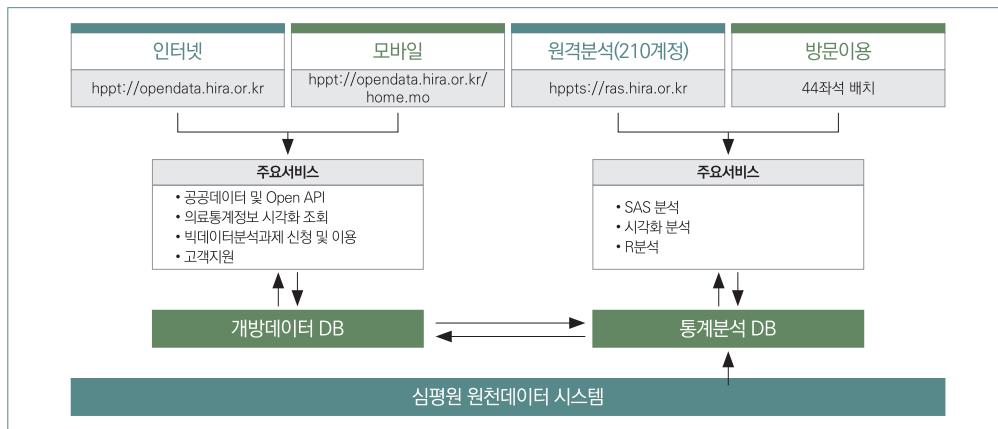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Healthcare Bigdata HUB, <http://opendata.hira.or.kr>)’을 구축하고 전 국민 진료정보를 다양한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이며,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

공공 데이터(데이터셋, OPEN API), 의료 빅데이터(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원격통계분석시스템), 의료통계정보(진료·질병,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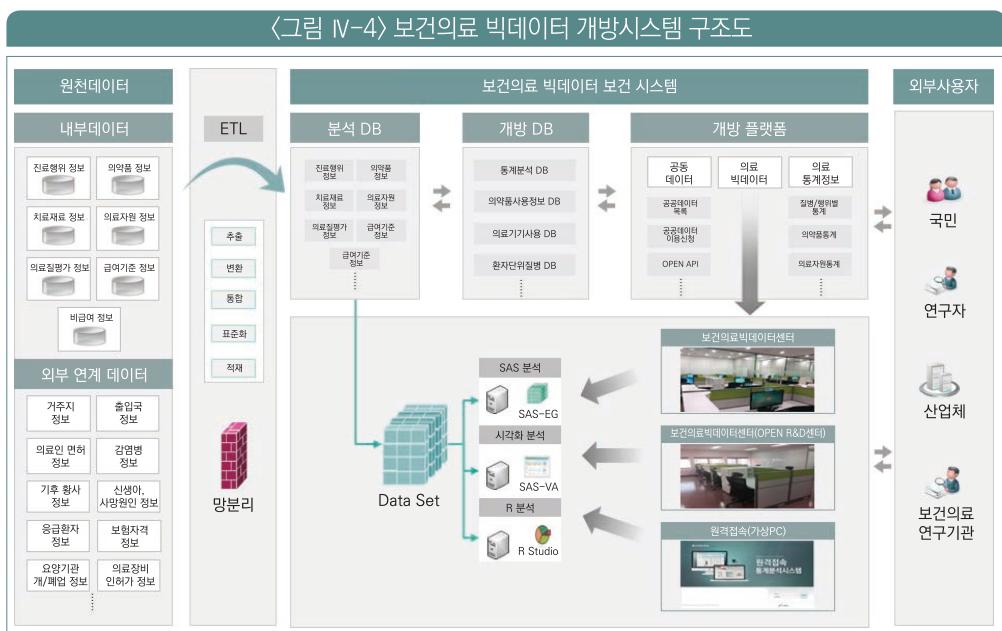
내부 원천데이터를 망분리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또는 원격 분석계정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데이터셋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IV-3〉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 구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2020. 5. <https://opendata.hira.or.kr/>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보고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정부 연구 개발 투자에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2020. 5.
https://www.hira.or.kr/cms/guide_busi/04/04/index.html

3-3 국내 사례[금융 빅데이터(CreDB) 분석, 에이전글로벌 ‘인공지능 신용지도’ 완성]

에이전글로벌(AIZEN)은 2020년 4월 2일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활용해 차주 정보를 통한 금융데이터를 ‘지도화(Map)’해 금리제공의 정량적 분석 프레임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지도화(Credit to Map)’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의 차주별 위험률 차이를 시각적으로 지도화하여 예측하는 모델로, 업권별·상품별 정교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인공지능 기반의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의 토대를 증명했다. 이를 통해 신용데이터 가치평가를 하고 합리적인 금리와 시장 타깃을 통해 금융 서비스가 초개인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로 개방한 신용정보원 기업데이터의 경우, 개업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약 560만 건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약 110만 개 차주에 대한 대출 · 연체 · 기술신용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 업종 · 등급 등 차주 속성별 대출규모와 평균 연체기간 · 연체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최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였고 에이전글로벌은 'CreDB' 분석 1차, 2차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출처: AIZen <https://aizenglobal.com/>

제2절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

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념

1-1 거래소 정의

세계는 지금 ‘디지털 경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며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석유·전력 등과 같은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응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에서 담당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으로,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 유출 방지 등의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 통신, 기업 등의 비금융·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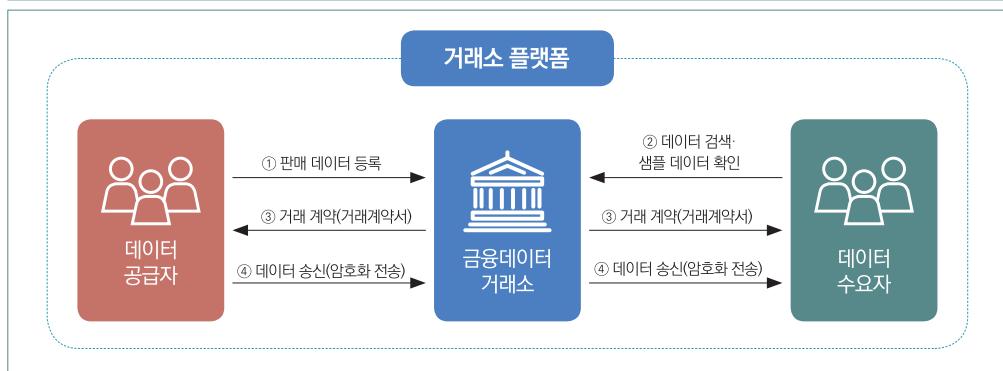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는 단순한 데이터 검색을 넘어 계약, 결제, 분석, 유통 등의 전 과정을 One-stop 통합으로 지원한다.

회사 개별 데이터뿐 아니라 수요자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 지원이다. 별도 연락수단 등의 이용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全) 거래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유한 차량 사고처리정보와 자동차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보험사가 사들여 안전장치 부작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림 IV-6〉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https://blog.naver.com/blogfsc>

정부 유관부처(과기정통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매칭 기능 외에 데이터 가격체계 마련, 표준화·규격화 지원, 데이터 전송 및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기업)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에 애로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출처: 금융데이터거래소(<https://www.fndatamall.or.kr>)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일반 데이터 상품은 총 873건이며, 유료 상품은 125건이며, 맞춤 데이터, 결합데이터 및 API/Link 데이터 상품도 거래 가능하다.

동시점 기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은 금융권 업체를 포함하여 총 106개 기업이다.

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주요 기능

2-1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보안성 높은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여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시킨다.

2-2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 활용 지원

[관련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20.8.5.) 후 지원]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에 구매자에게 전송함으로 익명·가명성이 보장된다.

2-3 데이터 유통·결합 통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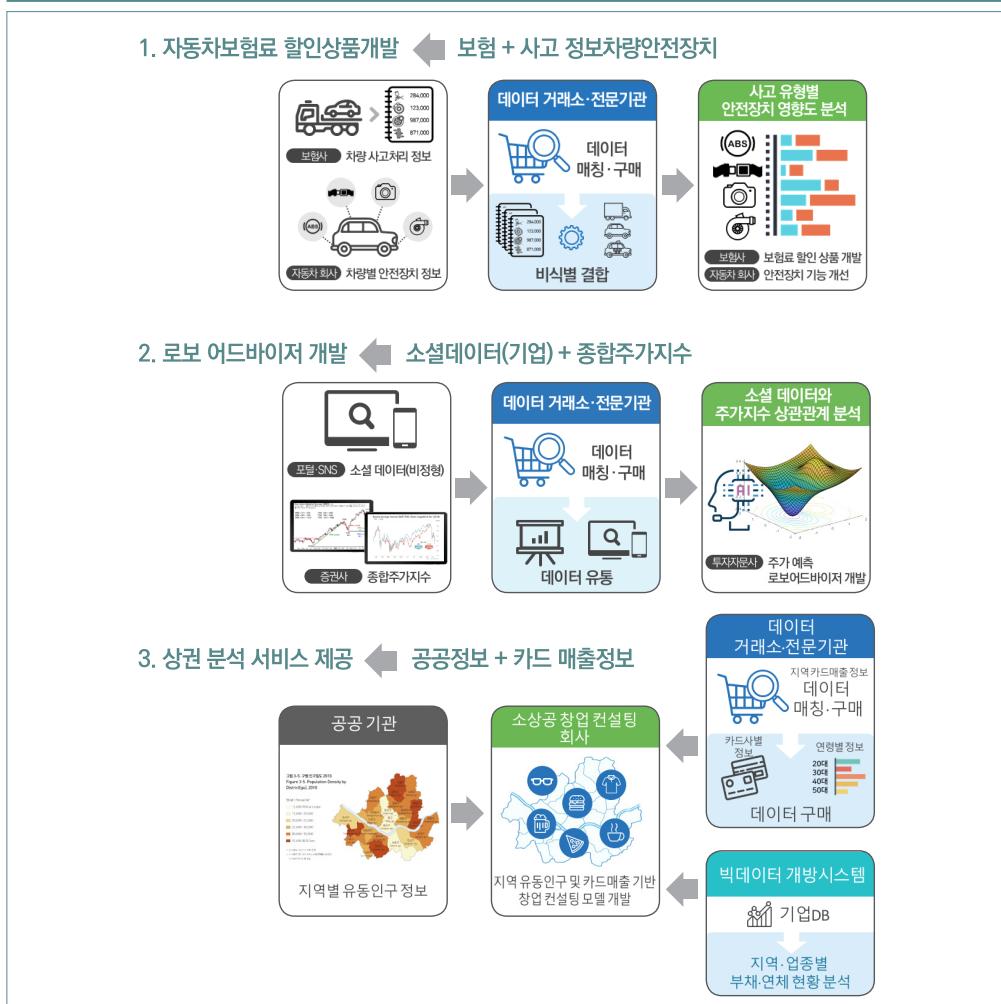
[관련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20.8.5.) 후 지원]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 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 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를 충족한다.

〈표 IV-1〉 기관별 제공 데이터

구분	제공 데이터
은행	은행별 신용대출 정보, 대출상품 정보, 신용 및 담보대출 금리 정보, 은행카드 이용금액 정보 등
보험사	보험사별 보험 계약현황,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현황, 연령, 성별, 회사별 월평균 보험료
카드사	카드매출 기본통계 데이터, 가맹점 정보, 가맹점별 매출 비용 정보, 업종별 카드 매출 데이터 등

〈그림 IV-8〉 금융데이터거래소 웹사이트



출처: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구축 방향, 2019. 6. 3.

3 진행 현황 및 발전 방향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과 더불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20.8.5)에 따라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하였다.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구매 데이터의 분석 결과만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며 데이터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결합지원이 가능하고 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채널을 지원한다.

상권 분석, 소비 트렌드가 필요한 예비창업자는 물론, 마케팅 전략기획자, 데이터 기반의 혁신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기업,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자체 등, 개방적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 모든 계층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3-1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향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금융회사, 펀테크 · 창업 기업 등의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 거래소의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20. 5. 1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표준화, 적정한 데이터 가격산정 등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 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 · 기준 등도 불명확한 편이다.

(개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주요 내용)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 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이 있다.

■ 재정을 통한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속으로 확대한다.

(현황)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반응이다.¹¹⁾

(개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데이터 바우처('20년 예산 575억원, 과기부)를 지원한다.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既 조치, '20. 2. 6. 허용)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였다.¹²⁾

■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既 조치, '20. 1. 21. 출범)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 (금융회사, 핀테크 · 상거래 기업,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간사: 금융보안원)를 지속 운영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협력을 도모한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출범식에서 ‘데이터 유통 · 활용 혁신 MOU’로 5개 유관기관(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 · 표준 개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금융보안원과 SKT’가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에 대한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반영하였고, 금융데이터 가격 산정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11)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기본연구(18-02)보고서,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거래 활성화 방안, 20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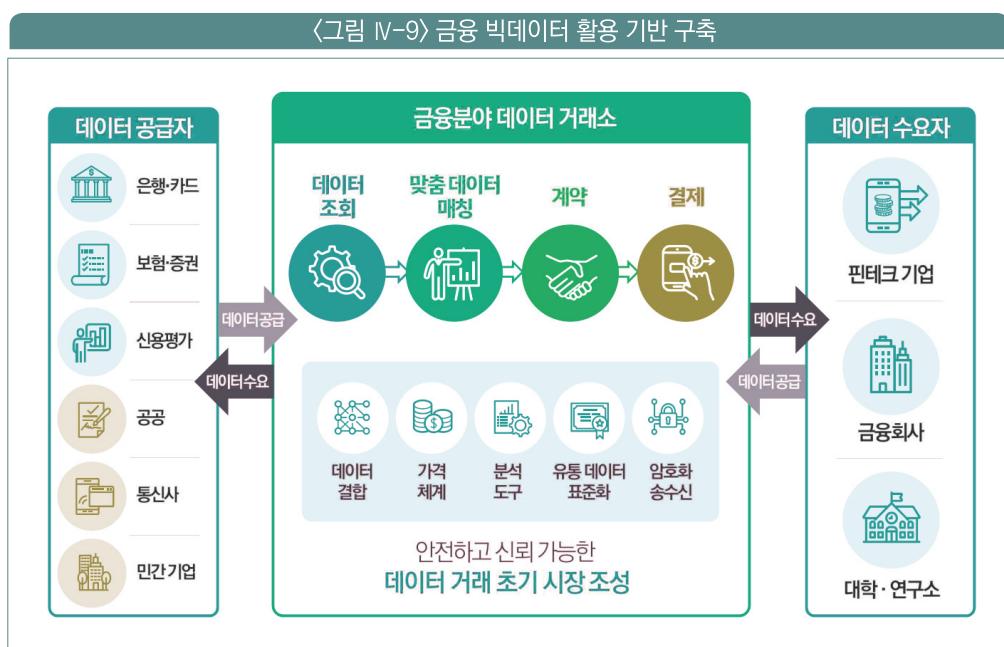
12) '20. 4. 9.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하다(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2020.04.09.).

3-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기대효과

초기에 안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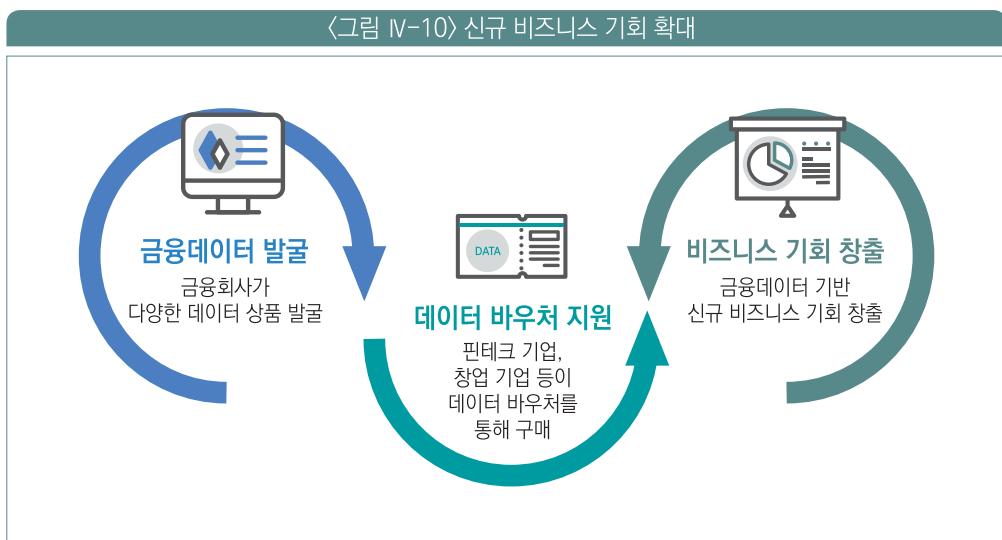
가.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데이터 공급자는 거래소에 양질의 금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수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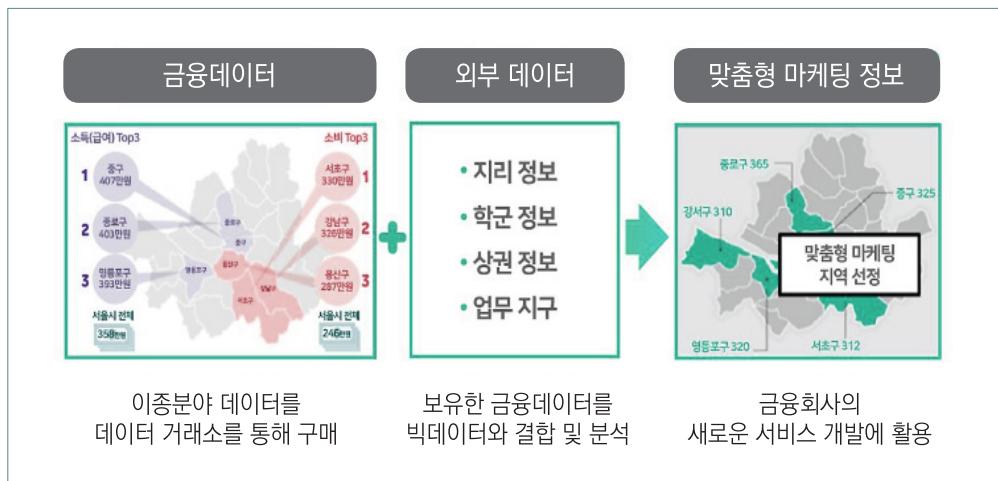
나.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 창업기업 등은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다.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IV-11〉 신규 서비스 개발 활성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3-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가.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나.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의 Player를 육성할 예정이다.
- 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8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 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용정보 보호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 상시평가 제도 운영,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그림 IV-1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2019. 6.

1 지급, 결제, 송금 분야

1-1 해외의 지급, 결제, 송금 분야 사례

핀테크가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지급, 결제 및 송금 영역이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 P2P 결제 및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데 혁신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노동자가 자금 이체나 송금을 통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이 좋은 예이다.

월드 뱅크 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2018년 저소득/중소득 국가로의 전 세계 송금액은 총 5,290억달러이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자금 이체는 개발도상국에서 인기가 높다. 특정 자금 이체 운영 업체나 지점으로 가는 대신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P2P(Peer to Peer) 송금을 통해 사용자는 중앙 기관이 제어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각 거래는 한 사람이 통화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이 통화를 구매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한다. 암호화폐는 송금을 주고받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이다. 비싸지 않으며 발신자와 수신자는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사용자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흥미로운 지불 트렌드는 소셜 미디어와 나노페이먼트(Nano Payment)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는 P2P 연결을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현재 해당국 내의 결제만 가능하다. 나노페이먼트는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1-2 전통적인 송금

비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세 단계로 수행된다. 먼저 고객은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로 송금 에이전트를 통해 송금한다. 이 송금 에이전트는 운영팀에 송금액을 수령인의 국가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수취인은 현지의 지불 에이전트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송금 에이전트와 지불 에이전트 간의 결제는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송금 거래를 정기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정산한다.

송금 에이전트는 송금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의 현지 통화로 송금을 지불하기 위해 환전 수수료를 지불한다. 소액 송금 사업자는 환율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을 커버하기 위해 송금을 받는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송금 에이전트는 자금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하룻밤 동안의 운용 이자 수익도 얻는다.

1-3 전통적인 송금 방법

전통적인 송금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편환(Money Order), 수표 및 어음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송금을 보내는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전히 우편환, 수표 및 어음을 사용하며 국제 우편환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수취인은 다양한 위치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

전신 송금에는 SWIFT(World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메시지를 통해 돈을 처리하기로 동의한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송금 거래는 두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므로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돈은 MTO(Money Transfer Operator)를 통해 한 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동한다. MTO는 송금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수취 금융기관으로 전신 송금 메시지를 트리거한다. 송금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송금인이 수취인의 이름, 주소, 계좌 번호 및 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간 거래 외에도 전신 송금은 머니그램(MoneyGram) 또는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에서 제공하는 현금 송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송금 회사는 은행 송금 프로세스에 자체 자금을 사용한다. 개인은 회사 지사 중 한 곳으로 가서 회사 대표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는 현금을 제공한다. 송금 수수료는 송금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송금 회사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

돈을 송금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금융기관의 거래를 일괄 처리하는 네트워크인 ACH(Automated Clearing House)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불을 받고 청산하며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는 중개자이다. 은행은 전 세계 어디로든지 송금을 원하는 고객에게 ACH 송금을 제공한다. 일반 전신 송금과 달리 ACH 송금은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 허브인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의 경우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ACH 송금을 관리한다.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는 유럽에서 NACHA에 대응되는 기관이다.

ACH 송금에서 송금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지불한다. 은행은 은행 업무일 내에 주기적으로 다른 거래와 함께 묶어서 보낸다. 그런 다음 ACH 운영자는 거래 묶음을 정렬하고 이를 수취 금융기관에 보낸 다음, 수취 은행은 송금인이 송금한 금액을 받는다. ACH 송금은 전신 송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저렴하다.

1-4 온라인 송금

온라인 송금은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송금이며 송금인은 송금 사업자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부분의 송금 사업자와 은행은 온라인 자금 이체 서비스를 허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이체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르다. 많은 은행 고객들은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쉽게 송금할 수 있다. 송금의 백엔드 프로세스는 ACH 송금 또는 전신 송금일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송금 회사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자금 이체를 시작하기 위해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취인 역시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줌(Xoom) 같은 회사는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온라인 지불시스템을 운영하는 페이팔(PayPal)은 이메일 주소를 고유한 ID로 사용하여 송금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페이팔 사용자는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페이팔 계정으로 지불하여 송금할 수 있다. 돈이 페이팔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페이팔 사용자 간 거래는 즉시 발생한다. 그러나 수취인은 페이팔 계정에서 은행계좌 또는 페이팔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

1-5 모바일 송금

이제는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것을 지원한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농촌 지역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금할 수도 있다. 대규모 은행 및 송금 운영 업체는 고객에게 더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국제적으로도 모바일 앱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빠른 송금 수단이 되었다. 2015년에는 모바일 기술을 사용한 국제 송금이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다. 같은 해에 미국 이민자들은 해외 가족들에게 약 6천억달러를 보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1-6 암호화폐 거래

디지털 통화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거래 당사자도 익명으로 유지된다.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는 사용자의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의 한 가지 문제점은 환율 변동의 위험이 있으며,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문제의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및 암호화폐 통화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험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송금의 주요 모델은 순수 암호화폐 간 송금 모델, 암호화폐에서 법정 화폐로의 송금 모델 및 법정 화폐 간 송금 모델이다. 순수한 암호화폐 간 모델에서 암호화폐는 사람 간에 직접 전송된다. 암호화 화폐에서 법정 화폐로의 송금 모델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법정 화폐로의 변환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송금하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이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물리적인 법정 통화를 사용하지만 송금 사업자는 전송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1-7 P2P 지불

전통적인 외환 거래에서 금융사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으로부터 특정 통화를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그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P2P 거래에서 개인은 시장에서 다른 개인과 직접 통화를 거래하는 대신, 플랫폼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P2P 송금 회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명성을 제공한다. 고객은 P2P 송금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외환 거래와 비교하여 낮은 환율과 적은 고정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쉽게 플랫폼에 등록하고, 사용자는 얼마든지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지만, P2P 지불에도 단점이 있다. 첫째, 이들은 비교적 최근의 신생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불안할 수 있다. 둘째, 일부 P2P 환전 회사는 사용자가 요율을 고정하지 않는 한 가격 변동을 허용한다. 전통적인 환전소는 계약일에 가격을 고정시킨다. 셋째, 일부 P2P 회사는 여전히 송금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송금 및 지불 핀테크 업체로는 트랜스퍼 와이즈(TransferWise), 벤모(Venmo), 줌(Xoom), 월드레밋(WorldRemit), 아지모(Azimo), 커런시 클라우드(Currency Cloud), 레미틀리(Remitly), 리플(Ripple), 머니그램(MoneyGram) 등이 있다.¹³⁾

13) 이재영, 핀테크와 GDPR 1권: 핀테크와 개인정보 보호(서울, 타카스, 2020), p38.

1-8 소셜 미디어 기반 송금

소셜 미디어는 친구들과 연결하고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 기술의 도래와 함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다. 송금 핀테크 회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챗(WeChat),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송금을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을 통해 P2P 결제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인기 있는 중국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위챗은 송금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청구한다. 페이스북과 위챗은 같은 국가 내의 사용자 간 결제를 허용하지만, 트랜스퍼와이즈는 국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챗봇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경우, 핀테크 회사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며, 수취인은 현금 수령 지점에서 돈을 받거나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기반 주요 송금 핀테크 업체로는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스냅챗, 위챗, 바이버(Viber) 등이 있다.

1-9 나노페이먼트

영화 및 음악 산업의 경우, 사람들이 무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미디어 사이트용으로 제작된 앱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소액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앱에 대해 앱 구입자들은 \$0.99 ~ \$4.99를 기꺼이 지불했고, 이렇게 소액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로 인해 앱스토어가 성공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성공을 재현하기를 원하므로,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성년 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액세스(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린이가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QQ 코인”을 구매하거나 전화 요금으로 청구함으로써 텐센트(Tencent) 계정에 돈을 추가하게 했다.

2 P2P 대출 분야

2-1 해외 P2P금융 사례

미국의 대출 기관은 1956년에 설립된 피코(FICO; Fair Isaac and Company)의 신용 점수를 사용하는 형태로 신용정보 분석에 근거한 신용 평가를 하였다. 1970년에 미 의회는 Freddie Mac이라고 부르는 연방 주택담보대출 회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전통적인 모기지 시장을 조성했다.

온라인 대출 전문 기업들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성장했고,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모기지 대출 기관인 퀵큰 론즈(Quicken Loans)는 1985년에 온라인 신청 및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First Internet Bank는 1999년에 온라인 전용 뱅킹을 시작하여 뱅킹 서비스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다.

금융 부문에서 P2P 대출은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조파(Zopa)와 프로스퍼(Prosper)가 시작했다. 차입자가 P2P 마켓플레이스에서 돈을 빌릴 때, 위험 분류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중간자가 사라짐으로써 차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금리를 얻고, 대출자 역시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상호 원-원이 된다. 이러한 P2P 대출이 성공을 거두려면 신용 점수와 펀드 다각화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야 한다. 프로스퍼는 2016년에 최소 2백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약 60억달러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조파는 대략적으로 14억파운드의 대출금과 최소 11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P2P 대출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일부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P2P 대출은 저축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도 역시 높다.

2-2 P2P 마켓플레이스 대출 비즈니스 사례

P2P 플랫폼은 대출자 및 대여자 모두의 비즈니스를 전통적인 은행에서 멀어지게 한다. P2P 플랫폼은 수익 및 관련 신용 위험을 대출 투자자에게 넘기고, 수입의 대부분은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출과 위험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P2P 대출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아, 수익과 대출 회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P2P 시장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이트세터(Ratesetter)와 같은 일부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고, 이제는 대출 기간 동안 수수료를 청구한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5% 프리미엄으로 시작된다. 대출 기간이 4년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연간 1.25%의 거래 수수료를 의미한다. 플랫폼은 통상 약 0.8%의 연간 유지 보수비용을 청구하므로 평균 약 2%가 된다. 은행은 신용 손실을 공제한 후 순이자율이 약 7%이므로 일반적으로 P2P 대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많은 P2P 대출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안정성을 향한 길은 P2P 대출이 다른 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위한 은행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일부는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P2P 대출 핀테크 업체로는 렌딩클럽(Lending Club), 조파(Zopa), 프로스퍼(Prosper), 레이트세터(RateSetter), 루팍스(Lufax), 이른다이(Yirendai), 렌딩로봇(LendingRobot) 등이 있다.

2-3 일반 개인대출 사례

무담보 대출은 그에 대한 자산이나 유가 증권이 없으므로 대출 기관 입장에서 더 위험하다. 반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유리하다. 이 때문에 대출 기관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 무담보 대출은 신용 대출, 개인 융자, 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또는 P2P 대출 등 여러 유형이 될 수 있다. 대출자는 신용 조합 및 은행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대출을 상환한다. 신용 상태가 양호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유형의 무담보 대출이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이를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 지불한다.

고객은 온라인 대출을 통해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단순히 대출 만기와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머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 프로세스에는 대출 상환 기록이 좋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음에 온라인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자에게 우대 조건과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SAP Value Management Center와 Bain & Company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은행 금융상품의 약 7%만이 디지털 거래와 호환되므로 디지털 대출의 도전에 취약하다. 금융 기술 스타트업, 통신 제공업체 및 기존 소매 업체는 이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참여자들은 기본비용을 낮추고 특정 위험 시장을 더 잘 타겟팅(Targeting)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가격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은행들은 디지털 대출에 투자해야 한다. 그들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나쁜 상호작용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고,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만들고, 보다 저렴하고 더 나은 대출 프로세스를 위한 민첩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 업체로는 어펌(Affirm), 아반트(Avant), 크레디테크(Kreditech), 제스트파이낸스(ZestFinance), 렌드업(LendUp) 등이 있다.

2-4 기업을 위한 디지털 대출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 유명한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분야 규모를 작게 시행하였고 따라서 다른 회사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중에 혁신적인 단기 운전 자본, P2B(Peer to Business) 대출 및 송장 금융(Invoice Financing)의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핀테크는 물론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지만, 적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라 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5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대출

많은 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정부가 극히 낮은 금리로 대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학생 대출이 약 700억파운드로 영국 GDP의 16%에 해당하고, 적지 않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좋은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에서의 학자금 대출은 큰 사업이며 시장 규모는 약 1조 3,000억달러이고, 담보 대출 다음으로 큰 대출시장이다. 이 시장을 이용하여 많은 회사와 스타트업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대출을 시작했다. P2P 대출 회사는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졸업생 대상의 통합 대출 상품과 자격을 갖춘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전통적인 대출이 그 두 가지이다. 두 개의 대출 모두 특정 학위, 프로그램 및 학교와 연결되어 대출 회사의 위험을 줄인 형태이다. 주요 업체로는 소파이(SoFi), 커먼본드(Commonbond), 어니스트(Earnest), 스튜던트 론 히어로(Student Loan Hero), 렌드이디유(LendEDU) 등이 있다.

2-6 디지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복잡하고 규제가 심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 영역은 핀테크에서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이다. 판매 및 서비스 기회를 고려할 경우 시장은 10조달러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2015년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Home Buyer and Seller Generational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는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를 사용했으며 그중 45%는 모기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일부 혁신가들은 모기지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주택저당증권의 구매자와 대출 기관들은 대출자가 모기지를 상환하는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혁신가들은 다단계 및 다자간 프로세스를 연관시키고 단순화하며, 정보 출처를 교차 검증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한다. 검증 및 검증 기능의 자동화는 주관성과 비용을 줄이고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여 담보, 차입 능력 및 현금 흐름의 가치와 품질을 결정하고 가능한 허위 진술 및 사기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일부 최신 분석 모델은 고용 시장, 가계 현금 흐름, 인프라 투자, 인구 통계 추세 및 개인 취향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 담보 대출은 대출자 고용 · 소득 · 신용 · 자산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 소스이지만, 많은 모기지 회사는 이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석 및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도구와 기술은 신용 중심 데이터를 보유한 모기지 회사가 잠재 고객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시나리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모기지 분야의 주요 업체로는 하비토(Habito), 소파이(Sofi), 렌다(Lenda), 론디포(LoanDepot), 신데오(Sindeo) 등이 있다.

3 개인자산관리 분야

3-1 개인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자산관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인자산관리’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면서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 로봇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전 세계 부의 20% 이상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제안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회사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에 힘입어 소셜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는 전문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따라할 수 있다. 개인 재무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이들은 투자 상품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와 융합되어 개인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3-2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핀테크 기술을 통해 투자자는 온라인 자산관리 및 앱을 사용하여 자산관리 조언을 구할 필요 없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다. 웰스프론트(Wealthfront), 베터먼트(Betterment) 및 넛메그(Nutmeg)와 같은 핀테크 회사는 모든 사람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더 쉽고 저렴한 방법을 제공한다. 핀테크 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투자에서 소극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이러한 앱의 대부분의 고객은 밀레니얼 세대이고 이미 두 번의 큰 시장 붕괴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극적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핀테크 앱을 사용하면 금융상품을 테마별로 그룹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선호도와 가치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웰스프론트 또는 베터먼트와 같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고객에게 부가가치 제품을 제공한다. 그들은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전문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전략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헤지 펀드 관리자의 전자 거래 전략을 활용하여 정교한 거래 전략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핀테크가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편화시키고 있으므로, 조금 비약하자면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3-3 사회적 투자

자산관리 회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SNS 사용자를 잠재적인 투자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소셜 채널을 통한 협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 산업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회사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반으로 이토로(eToro), 줄루트레이드(Zulutrade) 및 아ون도(Ayondo)와 같은 여러 사회적 거래 네트워크가 등장할 수 있었다. 온라인 거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회사인 이토로는 사용자에게 전략과 거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인기 있는 사용자의 전략을 차용하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미러링할 수도 있다. 이토로는 인기 있는 상인과 전문가를 확인하여 이 사람들이 실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토로는 2016년 7월에 잘 알려진 투자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고객 관계 관리 앱을 도입했다.

3-4 새로운 투자 시도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핀테크 업체로는 베터먼트, 웰스프론트, 로빈후드(Robinhood), 넛메그(Nutmeg), 모티프(Motif), 트리거(Trigger) 등이 있으며, 투자 관리자들을 위한 주요 핀테크 업체에는 리스크알라이즈(Riskalyze), 아데파(Addepar), 섬제로(SumZero) 등이 있다. 이 핀테크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가. 투자 형태의 변화

에이콘즈(Acorns)는 투자에 대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앱이다. 에이콘즈 사용자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심지어 계좌 확인을 앱에 연결한다. 에이콘즈는 이 카드와 당좌계좌를 사용한 구매에서 변경된 사항을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점심에 11.49달러를 소비하면 12달러를 지불하고, 그 차이인 51센트를 투자한다. 이 자투리 투자방법을 통해 평균적으로 사용자는 한 달에 \$30에서 \$180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 또한 자동 및 정기 예금을 설정하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당좌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일회성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 에이콘즈는 매월 1달러의 요금과 매년 총 투자액의 최대 0.5%를 청구한다. HSBC도 영국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나. 게임방식의 투자

과거에 주식 시장은 부유한 개인 투자자와 대규모 기관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출현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베스틀리(Vestly)는 주식 투자를 게임으로 만든다. 개인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상 주식을 선택하고, 그들은 이러한 주식의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며, 실제 돈을 잃지 않고도 주식 거래에 대해 배운다. 매월 말에 포트폴리오가 상위 100위 안에 들 경우 최대 3,000달러를 벌 수 있다.

다. 여성 투자

엘레베스트(Ellevest)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이다. Sallie Krawcheck가 설립한 이 회사는 컴퓨터 엔지니어, 기업가 및 재무 분석가와 협력하여 여성을 위한 투자 앱을 제공한다. 엘레베스트는 여성 투자자를 위해 수백 가지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일정과 목표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며, 투자자가 목표를 변경하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들은 앱의 일일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엘레베스트는 여성 투자자에게 21종류의 ETF를 제공한다. 이 펀드는 유동성, 수수료 및 세금 효율성이 높다. 엘레베스트는 관리 중인 모든 자산의 0.5%를 청구하며 최소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계정에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정 유형을 제공한다.

3-5 개인 재무설계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자산관리(Financial Management)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재무설계는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산관리는 수익을 위한 투자 상품 배분과 지출 통제 등의 과정이 들어간다. 개인 재산 관리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종종 사용자의 저축, 예산 책정 및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PFM 도구는 은행에서 제공되거나, 3rd party 앱 및 수집 도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 재무관리 도구가 서로 다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챌린저 뱅크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경험을 최우선으로 개선한다. 사용이 직관적이며, 대부분 강력한 시각적인 자료도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 재무관리 도구는 계정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통합된 결합 정보가 없으면 사용자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웨덴 PFM 앱인 킹크(Tink)와 같은 3rd party 앱은 사용자 신용 점수를 제공하는 기능을 통합하고 추가한다. 유럽에서는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2(PSD2; 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가 오픈 뱅킹을 의무화함으로써 PFM 도구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민트(Mint)는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지출, 자산 및 수입을 보고 총 재무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응용 프로그램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으며 런베스트(LearnVest) 및 크레디트 카르마(Credit Karma)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재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제3자 대출도 제공한다.

반면 재무설계의 영역은 여전히 핀테크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삶에 개입하여 생애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로보어드바이저나 PFM 도구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Plan-Do-Check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1 지급, 결제, 송금 분야

1-1 지급, 결제, 송금과 개인신용정보

지급, 결제, 송금 분야 핀테크 서비스들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중간자(Middle Man)를 거치지 않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4절에서 언급한 영국의 스타트업 TransferWise의 경우, 국제 송금에 P2P 거래 방식을 도입해 송금 수수료를 내리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법’으로 규제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 인프라의 변화 없이 금융 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금융업은 전업주의와 허가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종 간 금융업 진입이 제한적이었고,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요건이 복잡하였다. 그러나 2019년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으로 결제, 송금에 필수적인 금융 결제망이 개방형으로 전환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에 성큼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송금 시장 규모와 동향

2015년 전 세계 송금액은 6,460억불에 달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송금은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공식 개발 지원금보다 약 300%가량 많고 민간 자본 흐름보다 안정적이다. 또한 송금은 이러한 국가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본 및 민간 자본 유입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미 10여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송금 규모는 국가의 외환 보유고보다 크며, 20여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 준비금의 50% 이상의 규모가 되었다.

소비자 수요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흡수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곧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 있다. P2P 지불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여 수 분 이내에 의도한 수취자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송금을 보내고 받는 프로세스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인프라 확장과 관련이 있다. ACH 및 카드 지불 체계에는 절차, 정책 및 표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결제 수단과 현재 인프라를 결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있다.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완전히 다시 정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송금 국가와 수령 국가의 일부 금융기관은 아주 노동자 가족이 ATM에서 송금을 인출하거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기반 제품을 만들었다. 카드 인프라의 사용은 현금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일부 규제기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사용 목적을 가지는 카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국내 및 국제 결제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이 현금 대신 전자 지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이 유형의 지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이제하기도 한다. 비은행 및 은행은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한다. 결제 서비스 공급자 및 국제 송금 사업자는 기존 전자 지불 구조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의 특정 수신자에게 자금을 보낼 수 있다.

네 번째 트렌드는 현재 결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회사들이 송금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기반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해외 결제 상품을 제공한다.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송금을 허용하는 허브를 만들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송금서비스 사업자는 송금인이 은행계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송금 회사에 관한 것이다. 소매점과 수입 유통 업체도 송금 회사가 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회사는 현재의 결제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환전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도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계좌에서 인출하고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P2P금융분야

2-1 대출의 역사와 P2P금융

대출의 역사는 매우 길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정하는 나라의 공채이자율이 있었고, P2P 대출로 볼 수 있는 소비대차 형태의 대출도 흔했으며, 일수 및 월수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물론 ‘장리’라는 형식으로 봄철에 보리를 빌려주고 수확기에 절반 이상을 얹어서 받는 고리대금이 더 흔한 형태의 대출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대출의 역사는 은행의 역사와 함께한다. 1878년, 일본이 제일은행 지점을 열고 식민지화 정책의 기반을 닦고 있을 당시 국내에서는 한성은행처럼 민족자본을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들이 각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상인이 한성은행에 당나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것을 대한민국 최초의 대출로 볼 수 있다.

사실 최초의 대출은 전당포라고 할 수 있다. 전당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반면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banca”로 알려진 벤치에 앉아서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는 후에 “bank”의 어원이 되었다. 대출이 은행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임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이다.

통상적으로 Peer-to-Peer는 중재자가 없는 두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원래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용어였지만 이제는 P2P 파일 공유에서 P2P 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P2P금융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존 제도권 은행 대출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웹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대한 비대면을 활용하여 사무실 비용, 인건비, 영업비용 등 대출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의 조건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IT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틀어서 P2P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파(Zopa)가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영역 중 하나이다.

2-2 국내 P2P금융 현황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P2P는 대부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P2P모델이다. 국내의 경우 대출은 소위 ‘업법’의 형태로 규제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P2P금융 플랫폼들이 대부업이 아닌 일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P2P플랫폼 자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업’이고, 투자자에게 모집된 금액을 수신하고 대출자에게 전달하는 여신 기능은 100% 자회사 대부업체를 ‘대부업’으로 등록해 서비스하도록 분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P2P대부’와 일반적인 ‘대부’는 대출 자금의 원천, 비대면 신용평가 방식, 온라인 거점 영업 방식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업계 전반의 요구가 수용되어 2002년 대부업 제정 이후 17년 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19년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소자기자본을 5억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채권당 최대 40% 이내에서 금융회사 투자가 허용되며,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되었다. P2P금융을 위해 별도 제정된 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볼 수 있다. 금융법의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하는 선에서 P2P금융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주)에잇퍼센트, (주)렌딧, (주)피플펀드컴퍼니 등 7개사이다.

[관계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 및 제35조

법 제5조(등록)

-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

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2-3 P2P금융과 개인신용정보

국내 P2P는 부동산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 법인 대출, 부동산담보 · PF 대출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상환 방법과 위험성이 다르고, 업체별로도 운영형태가 다르지만, 제1, 2금융권 대출 자격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3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리도

유리하고 절차상으로도 편리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장점만큼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는데, 결국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신뢰이다. 기존 금융권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P2P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형태로 신뢰도와 신용도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신용평가사를 통해 카드 이용내역과 기존 대출 정보 등 4~500종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다. 렌딧과 같은 국내 P2P 대출업체는 이 정보를 토대로 과거 신용변화 추이, 대출규모, 신용카드 소비패턴, 추정 소득정보 등을 반영해 내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금리를 결정한다. 기존 메커니즘 대로 신용정보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P2P금융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P2P금융 핀테크 업체들은 결국 대출 신청 시의 개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 직장 정보, 수입 정보는 물론, SNS 활동 내역과 같은 비금융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트 접속경로, 사이트 체류 시간, 대출 신청을 위한 정보를 읽는 패턴 등도 대출 신청자의 신중함과 상환의지 등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하여 적용 가능한 심사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상환으로 이어진 경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가정에 대해 판단하고 가중치 변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평가할 수 없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평가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사회적인 장점도 있다.

2-4 결론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요 변수는 위험과 수익이다. 개인신용정보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을 통해 위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완화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대출 기관과 다양한 유형의 대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결국 대출 과정에서 손실이 적고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빅데이터, P2P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및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점수 향상과 같은 혁신이 꾸준히 시도될 것이다.

3 개인정보 관리 분야

3-1 자산관리의 작동 방식

자산관리는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자산관리는 재무 상태를 향상시키는 과학적 방법이고, PB(Private Banker)나 재무설계사에게는 부유한 개인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산관리에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무 계획이 통합되어 있다. 기업가 및 순자산 가치가 높은 개인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 관리, 세무 전문가, 법률 자원, 부동산 계획 및 소매 은행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산관리자는 시장에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관리자의 대부분은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양질의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자는 상담 방식으로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즉,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자산관리자의 목표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고객이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작업 환경, 인생 목표 및 지출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 고객 기대치의 변화

베이비 뷰 세대라고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는 주로 X 세대와 Y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밀레니얼 세대가 투자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들 세대는 집단이 아닌 객체로 각각 대우받고 맞춤형 조언을 받기를 원하므로 PB나 재무설계사와 기존과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재무 조언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많은 재량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도 한다. 그들은 권위에 대한 신뢰가 적고 PB, 재무설계사, 전문가 및 동료의 의견을 묻고 다양한 정보를 모은다. 그들은 다른 장치와 채널을 통해 재무 조언에 액세스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기술을 사용한다. 특히 자산관리용 모바일 앱은 투자자, 특히 새로운 유형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3-3 PB 및 재무설계의 변화

핀테크 기술은 재무 조언의 성격과 전달 방법에도 영향을 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자산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이다. 주로 포트폴리오 관리 조언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높은 평균 잔액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호응하기 좋은 서비스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자산 할당 및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일부 금융 기술 회사는 투자자의 선호와 역사에 맞춰 실시간 투자 및 거래 추천을 제공하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의 퇴직 계획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있다. 수량화 위험이 있는 자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처리할 수 없다. 사회보장 및 세금 안내가 필요한 고객은 재무설계가 가능한 실제 담당 직원 또는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과세되는 계정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세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동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핀테크 기술을 사용하여 투자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저렴한 관리 비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관련된 시장을 크게 훈들 가능성이 있다. 광범위한 분배 기능과 자금력이 있는 기존 자산관리 회사는 이제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내에서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술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담당자가 직접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한다. 어려운 시기에 고객을 안심시키고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합성하려면 여전히 인간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고객 자문 경험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및 사람의 기능이 통합되어야 하며, 자산관리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 관계를 향상시키고 보완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자들이 가치 측면에서 사람의 조언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하는 대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 하는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아까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는 조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액센추어(Accenture)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77%가 여전히 로보어드바이저가 아닌 PB와 재무설계사를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81%는 대면 상호작용을 주장하므로 실제 담당자로부터 자문은 여전히 자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는 특히 재무 자문영역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 회사는 이를 통합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향후 전망

미래의 자산관리 산업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자산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소규모 투자자들도 위험에 적게 노출되면서도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오픈뱅킹과 미래의 혁신은 로봇의 조언이 점점 더 좋아지고, 단순히 돈을 분산 할당할 뿐만 아니라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나은 방향으로 조언할 수 있다. 단순한 재무관리를 넘어 재무설계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설계를 통상적으로 6단계로 나누는데 그중 두 번째 단계가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이다. 재무설계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장하려면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결국 핀테크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며,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빅데이터 활용 지원

1-1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제약요인

금융권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외국에 비해 국내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적이었으나, 최근 데이터 3법 통과로 법령상 애매했던 부분(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해결되었고, 앞서 소개한 CreDB 및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익모델에 성공한 해외 사례들(앞서 소개한 몇몇 해외 업체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개척,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등이 가능하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빅데이터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빅데이터 활용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과기정통부 시장현황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5.1%였지만, 100억원 미만의 중견, 중소기업은 2.6%에 불과했다.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는 첫 번째가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41.5%)였고, 두 번째가 관련 데이터의 부재(33.7%)였다.

〈그림 IV-13〉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2018년 기준, 빅데이터 미도입 기업·기관 대상]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같은 기관에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2020년 기준 575억원) 데이터 바우처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구매나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20년 기준 총 1,420개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관과 컨소시움을 통해 다양한 실증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2 빅데이터 기반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2-1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여신심사 등을 할 때, CB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자체 신용평가(CSS; Credit Scoring System)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수준이다. CB사 및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기초로 평가 중이며, 통신·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은 제한되고 있어서 평가시스템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지주사 내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지만, 2014년 카드사 사태 때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전히 계열사 내 고객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이다.

2-2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확대

통상적으로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체납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3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

현재는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신용정보원이 모든 대출자들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및 주부 등, 약 11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금융이력 부족자, 소위 씨파일러(Thin Filer)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및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3 펀테크 지원사업

2021년 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약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테스트베드 비용은 줄고, 해외 진출 지원이 늘었다.

〈표 IV-2〉 2021년도 펀테크 지원 예산사업 추진계획

과제명	주요 내용	예산액 (백만원)
펀테크 지원사업	1.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지정 제도 운영(제도 홍보, 안내, 펀테크 기업·금융회사 간 협의지원, 지정심사 및 모니터링 등) •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펀테크 기업 중 테스트비용, 보험료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펀테크 기업 선정·지원	7,623
	2.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장 단계,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한 펀테크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793
	3. 국민참여 펀테크 체험행사 • 펀테크 확산을 위한 펀테크 체험 박람회 및 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1,743
	4. 펀테크 보안 지원 • 혁신금융 서비스, 오픈뱅킹 등 참여기업에 대한 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보안 점검 비용 지원	703
	5. 펀테크 해외진출 지원 • 펀테크 해외 컨설팅, 통번역존 운영 및 해외시장조사	970
	6. 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 • 펀테크 일자리 매칭시스템 개선·운영, 펀테크 일자리 매칭존 운영	260
	7. 금융클라우드 지원 • 펀테크 기업 대상 금융클라우드 이용 지원	3,440
	8. 펀테크 전문인력 양성 • 펀테크 특화 과정 개발·운영 및 펀테크 인턴십 과정 운영	1,440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2021년도 펀테크 지원 예산사업 추진계획, 2021. 01. 21.

핀테크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기대 효과

...

1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IDC와 A. T Kearney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과정부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전 산업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며, 각 산업의 프로세스는 물론 가치사슬 변화도 이미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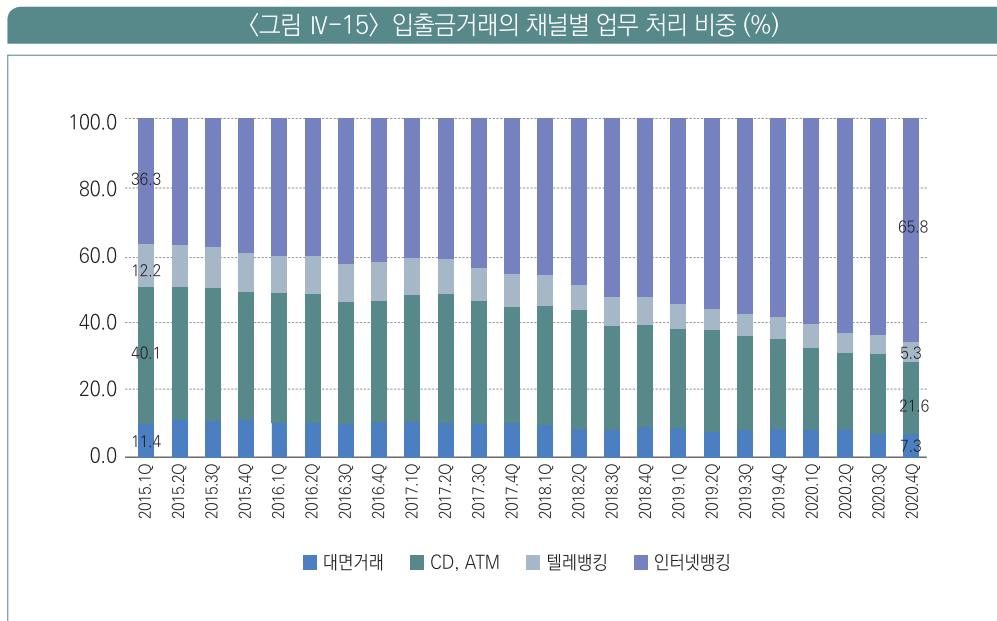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업이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영업 점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림 IV-14〉 주요 금융사 영업 점포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이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입출금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 처리의 채널 역시 급속히 디지털화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ClassSearch.jsp> > 5. 지급결제 > 5.6. 전자금융 통계 > 인터넷뱅킹 > 업무처리비중 > 입출금거래 선택

결국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데이터 관리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이종 데이터 결합 활성화

핀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정형화된 고객 타겟팅(Targeting)에서 벗어나 다수의 일반 개인에게 집중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고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다수의 보편적인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기반할 때 더욱 강점으로 발휘된다.

특히 빅데이터 자체만으로 온전한 개인화 마케팅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고객 세분화와 타겟팅을 위해서는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이 더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사고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 안전장치정보와 같은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이 될 때 새로운 보험 상품 및 금융 서비스 등의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2절에서 소개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경우, 데이터가 많고 보안성이 강한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금융데이터의 결합을 이끌어 내야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 거래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와 상호 협의로 결정되고, 중개 수수료는 당분간 무료로 진행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하여,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부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결합은 통찰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용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결합을 통해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노력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정(국내의 경우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빅데이터 활용 혁신

3-1 고객 세분화

빅데이터의 혁명은 금융 비즈니스 조직, 운영 및 가치 창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는 기업이 개인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다가가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온라인 구매, 웹 클릭, 소셜 미디어 활동, 스마트 커넥티드 장치 등을 기반으로 인구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소셜 미디어 지원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비즈니스와 연결하고 고객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은 제품을 사용자에 맞게 정의하고 타깃 마케팅(Target Marketing)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2 고객 개인화 및 맥락화

오늘날 기업들은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맞춤형 소비자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화는 고객에게 고유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소매 및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사용 가능한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개인화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맥락화’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시간, 날씨 및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여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소매점뿐만 아니라 은행, 중개 회사 및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소비자 선호도, 구매 행동, 지리적 위치 및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현재 및 미래의 요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최상의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화 및 맥락화는 비즈니스 시간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3 마케팅

비즈니스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마케팅에 대한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콜센터 데이터, 거래 데이터 및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고객 선호와 요구를 결정하고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맥킨지(맥킨지 앤드 컴퍼니; 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평균적인 회사 수익의 75%가 표준 제품 라인에서 생성되며 가격 결정의 30%가 최상의 가격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판매량의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의 가격 인상이 영업 이익의 8.7% 증가로 전환되면서 최적 가격은 회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DataMeer에 따르면 Customer Analytics는 판매 및 마케팅(48%)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가장 보편적인 용도로,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 확보 전략을 채택하고 고객당 수익을 높이고 기존 제품을 개선할 수 있다. 고객 분석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운영 분석(21%), 사기 및 규정 준수(12%), 신제품 및 서비스 혁신(10%),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웨어하우스 최적화(10%) 순으로 이어진다.

3-4 온라인 신용 평가

과거에는 빅데이터 사용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빅데이터 기술과 분석을 사용하여 많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였다.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짐에 따라 비대면 대출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했다. 온라인 신용 평가는 은행 기록과 같은 기존 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및 모바일 운영자의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 한도를 개설하기 전에 대출업자가 고객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몇몇 회사는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의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대출 부문에서 어펌(Affirm)을 포함하여 이 분야의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다. 아이르(Aire.io) 및 브랜치/Branch 같은 회사들의 경우 대체 신용 점수를 참고한다. 런던에 본사를 둔 아이르는 신용 근거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용 점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가상 인터뷰에서 수집한 자체 정보를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45억 명 이상이 신용의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거대한 시장이다. 특히 중국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조차도 국민의 22%의 데이터만 모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평생을 다루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빅 브라더처럼, 상업, 사회 및 신용 요소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인 환경과 인권 측면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프로파일링 관련 개인정보 관련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3-5 리스크 관리

빅데이터 기술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위험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포괄적인 실시간 데이터는 위험 모델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응답 시간과 시스템 효율성을 혁신하고 현재 위험 범위를 확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 은행은 상업 및 투자 은행보다 신용 위험에 더 관심이 있고(53% 대 43%), 시장 위험에 대해 상업 및 투자 은행에 비해 약간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다(28% 대 23%). 반면, 투자 은행은 소매 은행보다 운영 위험(29% 대 19%) 및 규정 준수 위험(20% 대 1%)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6개 대륙 55개 국가의 소매 은행(29%), 상업 은행(43%) 및 투자 은행(28%)에서 208명의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임원 중 응답 프로필의 42%가 빅 프로필을 통합하고 이용한다. 반면 응답자의 47%는 빅데이터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측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1%는 EIU의 'Retail banks and big data: Risk and compliance executives weigh in' 보고서 발행 시점에 이미 고급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 위험은 신용 위험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손실이 커지는 또 다른 주요 영역이다. 여기에는 내부 및 외부 사기, 시스템 오류, 비즈니스 중단 및 클라이언트 관련 문제가

포함된다. 데이터 학습을 운영 위험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도구는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3-6 고객 관계 개선

많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는 고객 관계 개선이다. 은행은 고객 파악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레코드를 검토하고 수백만 고객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 데이터 소스가 규정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을 접촉하여 이 작업을 완료할 필요는 없다. 일부 기업은 고객에 대한 단일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고객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잠재 고객을 모든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7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빅 데이터 분석

금융 서비스 부문은 비즈니스 중심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고객을 참여시키며 혁신을 통해 경쟁 차별화를 달성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서비스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시장과 고객에 걸쳐 빅데이터가 생성한 귀중한 통찰력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44개의 포춘 1,000대 기업과 주요 기업 및 기술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NewVantage Partner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회사의 69.6%가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에 투자한 회사는 2013년 31.4%에 비해 2015년 62.5%로 증가하였다. 5,000만달러가 넘는 빅데이터에 대한 예상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비율은 2014년에 5.4%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26.8%였다.

금융 회사의 주요 과제는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중심 문화가 필요하다. 주요 빅데이터 분석의업체로는 클라우데라(Cloudera),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아반트(Avant), 위랩(WeLab),

퀄트릭스(Qualtrics), IBM(Watson), 알터릭스(Alteryx), 굿데이터(Gooddata), 도모(Domo) 등이 있다.

3-8 데이터 분석의 변화

빅데이터는 다양한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핀테크 회사는 물론 기존 금융사들도 최첨단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있다. 현재 많은 자산관리 회사는 간단한 분석을 사용하여 고객 분류, 교육 프로그램 효과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중요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회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고객 프로파일을 위해 외부 및 내부 데이터 소스와 비정형 및 구조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예측적이고 설명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래에 자산관리 회사는 실시간으로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알고리즘 분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3-9 향후 전망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향상되고 Business Objects 또는 SAS와 같은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공 지능의 적용이 업계 표준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의 사용은 경쟁의 핵심이 되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 및 사물인터넷의 증가와 함께 기업이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세부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빅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 핵심정리

1. CreDB 서비스 소개

- 서비스 정의, 주요 서비스 내용
 -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 및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용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 제공을 통해, 금융업권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작성 및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사회·경제·복지·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혁신 서비스이다.
 - 일반신용정보·기술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 등의 집중된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가명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심의를 진행한 후 DB를 제공한다.
- 표본DB, 맞춤형DB, 모의DB
 - 개인신용, 기업신용, 보험신용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샘플링 후 가명처리한 DB이다.
 - 맞춤형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 중 5% 혹은 특정 조건 대상자 최대 100만명에 대해 추출 가능하다.
 - 개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분석 목적에 따라 맞는 정보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가공하거나, 실제가 아닌 가상 DB인 모의DB로 학습 및 실제DB구조 파악의 용도 등으로 이용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용으로 별도 구축한다.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
 -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학계·연구소 등의 교육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를 구축하고 이용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Cre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만 반출 활용한다.
- 서비스의 법적 근거
 -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 이용 신청 서비스 절차 소개

- 원격분석시스템
 - 이용자가 원격지에서 접속하여 가상PC환경하에서 다양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CreDB를 분석한다.

3. 국내외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사례

- 미국 사례(주택담보대출 자료 공개)
 - 연방주택 금융청과 금융 소비자 보호국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데이터를 개방하였다.
- 국내 사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인공지능 신용지도)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한 전 국민 진료정보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reDB를 활용해 차주 정보를 통한 금융데이터를 '지도화(Map)'하였다.

4.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 거래소 정의
 -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5.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 보안성이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
 -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 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보안성 높은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



-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 활용을 지원한다.
 -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 데이터 유통·결합·통합을 지원한다.
 -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 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한다.

6. 진행 현황 및 발전 방향

-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향
 -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을 통한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하였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기대효과
 -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대한다.
 -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한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의 새로운 데이터 산업 Player를 육성한다.
-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달성을 꾀한다.

7. 지급, 결제, 송금

- 전통적인 송금 방법: 우편환(Money Order), 수표 및 어음
- 펀테크 분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분야는 지급, 결제 및 송금 영역
 -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송금은 은행방문이 불필요하고 기존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르기 때문에 많은 송금 사업자와 은행이 온라인 자체 서비스를 허용한다.
 - 휴대폰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모바일 송금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속도가 빨라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통화이지만, 환율변동의 위험 및 거래소 해킹과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P2P지불. 개인이 시장에서 다른 개인과 직접 통화를 거래하는 대신, 플랫폼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높은 투명성과 전통적 외환 거래 대비 낮은 환율, 낮은 고정 수수료, 플랫폼 등록이 쉽고 송금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신생 서비스이기에 고객이 불안할 수 있고, 일부 P2P 환전 회사는 사용자가 요율을 고정하지 않는 한 가격 변동을 허용하거나 일부 회사에 한해서는 송금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 소셜 미디어 기반 송금. 위챗(WeChat),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송금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스냅챗, 위챗, 바이버(Viber) 등이 있다.



- 나노페이먼트. 영화, 음악, 소설 미디어 등의 서비스에 대해 소액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결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앱 구입 시 \$0.99 ~ \$4.99를 지불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국에서는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QQ 코인”을 구매하거나 전화 요금으로 청구한다.

8. P2P 대출

- P2P 대출

중간자가 없어, 차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금리를 얻고, 대출자는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상호 원-원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수익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금융상품은 디지털 대출에 취약하다. (약 7%만 디지털 거래가 호환된다.)

금융 기술 스타트업, 통신 제공 업체 및 기존 소매 업체는 이를 기회로 인식하여 기본비용을 낮추고 특정 위험 시장을 더 잘 타겟팅(Targeting)하여 더 나은 가격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 미국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달러 수준으로 담보 대출 다음으로 커서, 많은 회사와 스타트업들이 특정 학위, 프로그램 및 학교와 연결하여 회사 부담 위험률을 상쇄하는 방식의 온라인 학생 대출을 시작하였다.

- 미국의 디지털 모기지

복잡하고 규제가 심한 주택담보 대출 시장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만(10조 달러 이상), 기존 세대는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중 45%는 모기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출자가 모기지 상환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담보, 차입 능력, 현금 흐름 파악, 허위 진술 및 사기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고 고용시장, 가계 현금 흐름, 인프라 투자, 인구 통계 추세 및 개인 취향을 고려한 최신 기술 등을 사용하는 등, 성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비즈니스 분석 및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도구와 기술로 모기지 회사의 잠재 고객 식별에 도움을 주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모기지 분야의 주요 업체로는 하비토(Habito), 소파이(Sofi), 렌다(Lenda), 론디포(LoanDepot), 신데오(Sindeo) 등이 있다.

9. 개인자산 관리(PFM; Personal Fianance Management) 분야

– 개인자산관리에도 신규 기술 도입(가상 로봇인 로보어드바이저, 소셜 투자 플랫폼)으로 재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핀테크 기술을 통해 투자자는 온라인 자산관리 및 앱을 사용하여 자산관리 조언을 구할 필요 없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고 금융상품의 테마별 그룹화로, 투자가 선호도와 가치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기도 한다.

웰스프론트(Wealthfront), 베터먼트(Betterment) 및 넛메그(Nutmeg)등의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부가가치 제품을 제공한다.

그 외 투자 심리를 이용한 앱(에이콘즈; Acorns), 주식투자를 게임으로 만들거나(베스틀리; Vestly), 여성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엘레베스트; Ellevest) 등의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다.



10. 지급, 결제, 송금 분야

- 2019년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으로 결제, 송금에 필수적인 금융 결제망이 개방형으로 전환 (개방형 시스템 오픈)
- 펀테크 기술 발전으로, 송금 프로세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인프라 확장, 결제 수단과 현재 인프라 결합, 국내 및 국제 결제 메커니즘과 결합. 현재 결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 생성 등이 트렌드

11. P2P금융분야

- 기존 금융권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P2P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형태로 신뢰도와 신용도를 평가하느냐가 관건
- P2P금융 펀테크 업체들은 대출 신청 시의 개인의 행동 패턴, 직장 정보, 수입 정보, SNS 활동 내역 등의 비금융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
 - 사이트 접속경로, 사이트 체류 시간, 대출 신청을 위한 정보를 읽는 패턴 등도 대출 신청자의 신중함과 상환의지 등으로 가정하여 심사
 - 상환 시, 가정에 대해 판단하고 가중치 변경을 하는 등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
 - 추가적인 평가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사각지대가 해소
 - 빅데이터, P2P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및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점수 향상과 같은 혁신이 꾸준히 시도

12. 개인재산관리 분야

- 고객 기대치 변화
 - 개인으로 대우받고 맞춤형 조언 선호, 재무 조언 이해하에 본인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 많은 재량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고객들 증가

13. 빅데이터 활용지원

-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제약요인
 - 국내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시작 단계
 - 데이터 3법 통과 및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등장
-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
 -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진행 중

14. 빅데이터 기반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확대
- CB ·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기도 고도화

15. 핀테크 지원사업

- 핀테크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 테스트베드 제공 및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16.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영업점포 축소
 - 입출금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 처리의 채널 역시 급속히 디지털화

17. 이종 데이터 결합 활성화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가 가능하나, 온전한 개인화 마케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분석 필요
 - 보다 효율적인 고객 세분화 타깃팅을 위해서는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이 더 중요

18. 빅데이터 활용 혁신

- 고객 세분화
 -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을 통한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 고객 개인화 및 맥락화
 -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대
 -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
- 마케팅
 - 2020년 8월에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Player 육성
 -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달성
- 온라인 신용 평가
 -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리스크 관리 및 고객 관계 개선
 - 실시간 빅데이터를 통해 위험 모델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외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 검토
 -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빅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변화
 -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통찰력 있는 고객 프로파일을 위해 내·외부 데이터 소스와 비정형 및 구조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정밀한 예측과 분석 가능
 - 향후 전망
 -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향상되고 Business Objects 또는 SAS와 같은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이 업계 표준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
 - 향후 몇 년 동안 빅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5
장

개인신용정보 시장 및 산업 동향

제1절 개인신용정보 산업 동향

제2절 개인신용정보 산업의 전망

제3절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특징

5장

개인신용정보 시장 및 산업 동향



💡 학습목표

- ① 개인신용정보 산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 ② 빅데이터가 금융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며 금융시장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해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 유출사례를 이해하고 정책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개요

기존의 개인신용정보 산업 및 신규 플레이어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마이데이터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에서 개인의 신용관리 · 자산관리 · 금융상품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및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신용평가 및 정보 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 교환 및 거래 활동의 전망,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 학습한다.



 **용어해설****① 개인사업자 CB**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CB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2020)에 따라 새로 도입되었다.

② 비금융정보 전문 CB

비금융 개인신용정보(통신 · 전기 · 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만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로서 신용정보법 개정(2020)에 따라 새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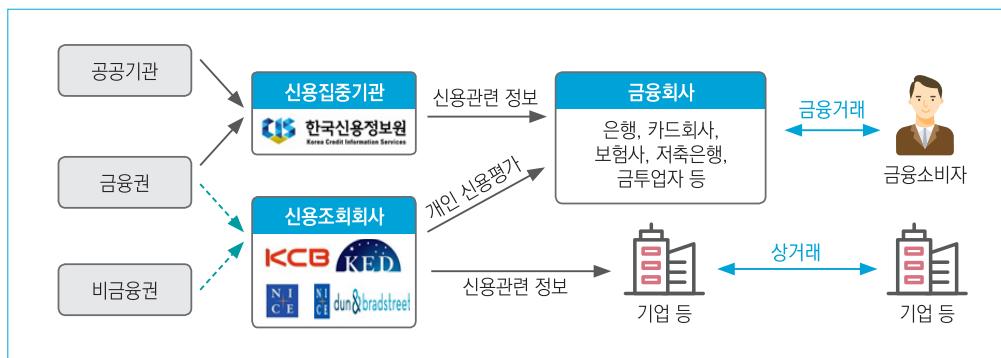
③ 마이데이터업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 · 자산관리 · 금융상품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1 기존의 개인신용정보 산업

신용정보산업이란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신용정보산업은 신용정보 사업자로서의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용조회회사(CB사)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고, 금융거래 등을 위해 신용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종의 금융 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여 CB사·금융회사 등과 공유한다.

〈그림 V-1〉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관리·유통 체계



출처: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은 공적신용정보기관(PCR; Public Credit Registry)으로 민간 CB(Credit Bureau)와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CB와 PCR의 가장 큰 차이점은 CB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대출자 간 사적 계약(Contract)에 의한 것인 반면, PCR을 통한 정보의 집중과 공유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자 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PCR의 정보 집중이 모든 금융회사를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사적 계약에 기초한 CB의 정보 수집은 그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PCR과 CB에 관련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디자인에 있어서 만국에 통용되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 제도적 환경, 사회적 풍토 및 관행 등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현황을 보면, PCR과 CB가 공존하는 경우는 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인데 이들은 주로 채무상황(Indebtedness)과 과잉채무(Over-indebtedness)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주로 중앙은행 또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운영·감독하고 있다.

PCR과 CB의 공존 이유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먼저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경우, PCR들이 설정한 높은 수준의 최소보고기준(Threshold)에 따라 CB들의 시장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CR과 CB가 모으는 정보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으며, PCR들이 신용정보의 집중·공유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CB들은 신용정보의 수집·제공보다 Scoring, 의사결정지원(Decision Support System)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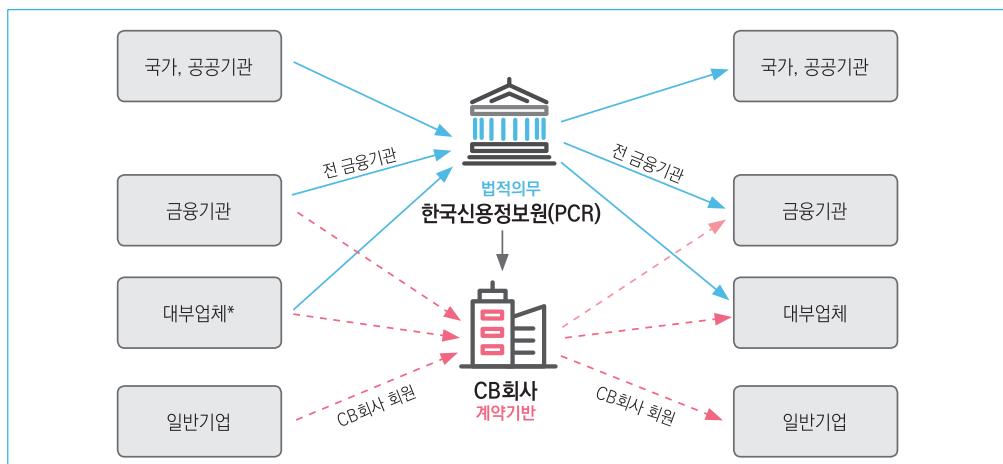
중남미의 경우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PCR과 CB가 공존한다. 유럽의 PCR과 CB 간에 신용정보 교류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비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PCR과 CB 간에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유럽의 PCR들은 금융감독 등의 목적으로 따라 금융감독기구나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으며 CB는 민간 은행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PCR과 CB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남미의 나라들은 CB가 자생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별로 없으며 PCR이 제공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원천인 경우가 많다.

한국도 PCR과 CB가 공존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업자(민간 CB)들을 통해 신용정보 데이터를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2015년까지 5개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존재하였으나 신용정보원의 출범 이후에는 1개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만 존재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이를 금융회사 · CB와 공유하는 공적(公的) 정보인프라이다. CB와 달리 (i) 신용등급 등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ii) 수집 · 관리하는 원천정보(Raw Data)만을, (iii) 금융권에만 제공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정원은 5개 금융협회¹⁴⁾ 및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업무를 승계받아 2016년 1월 통합 출범하였다.

〈그림 V-2〉 우리나라 신용정보공유 구조 (2016년 1월 이후)



출처: 신용정보원(강경훈, 배영수(2019),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정보연구 제8권 제2호, 2019.8에서 재인용)

14)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정원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신용정보 집중관리 · 제공 외에도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신용평가(TCB) 도입과 함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업무, 빅데이터 등의 분석 · 제공 업무(컨설팅)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B사가 기존에 수행해왔던 주소변경 통보대행업무 등도 수행한다. 아래 사항들은 신용정보원이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수집하고 있는 신용정보이다.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수집대상 정보

- ① 금융회사(대부업자 포함) : 금융거래실적 · 연체 · 상환 · 대위변제 · 부도정보 등
- ② 신복위 · 행복기금 : 채무재조정 · 상환 실적 등
- ③ 공공기관(국세청 · 고용노동부 등) : 세금 ·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정보
- ④ 법원 : 개인회생 · 파산 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신용조회회사(CB)는 현재 총 6개 회사가 CB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제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CB사와 기업CB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CB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등 금융거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현재 3개의 신용조회사¹⁵⁾가 개인CB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기업CB는 기업의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기술신용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사 · 수집하여 제공한다. 현재 5개의 신용조회사¹⁶⁾와 1개의 신용조사회사¹⁷⁾가 있다.

15)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16) NICE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NICE디앤비, SCI평가정보.

17) 한국 TDB신용정보 (일본기업 관련 신용조사업무 수행).

〈표 V-1〉 CB사별 현황 비교(17년 말)

구 分	나이스 디앤비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이크레 더블	KCB	KED
회사설립일	02.10.12	85.2.28	92.4.23	01.8.6	05.2.22	05.2.22
자본금	77억원	304억원	178억원	61억원	100억원	692억원
주 요 업 무 비 중	신용조회	71.1%	70.5%	23.7 %	100.0 %	88.1 %
	개인	-	61.9%	5.4 %	-	88.1 %
	기업	71.1%	8.6%	18.3 %	100.0 %	-
	모형판매	1.8%	8.2%	-	-	9.6%
	개인	-	4.1%	-	-	-
	기업	1.8%	4.1%	-	-	9.6%
	본인인증	-	7.0%	18.6 %	-	8.5 %
	기 타	27.1%	14.3%	57.7 %	-	3.4 %
						7.9%.

출처: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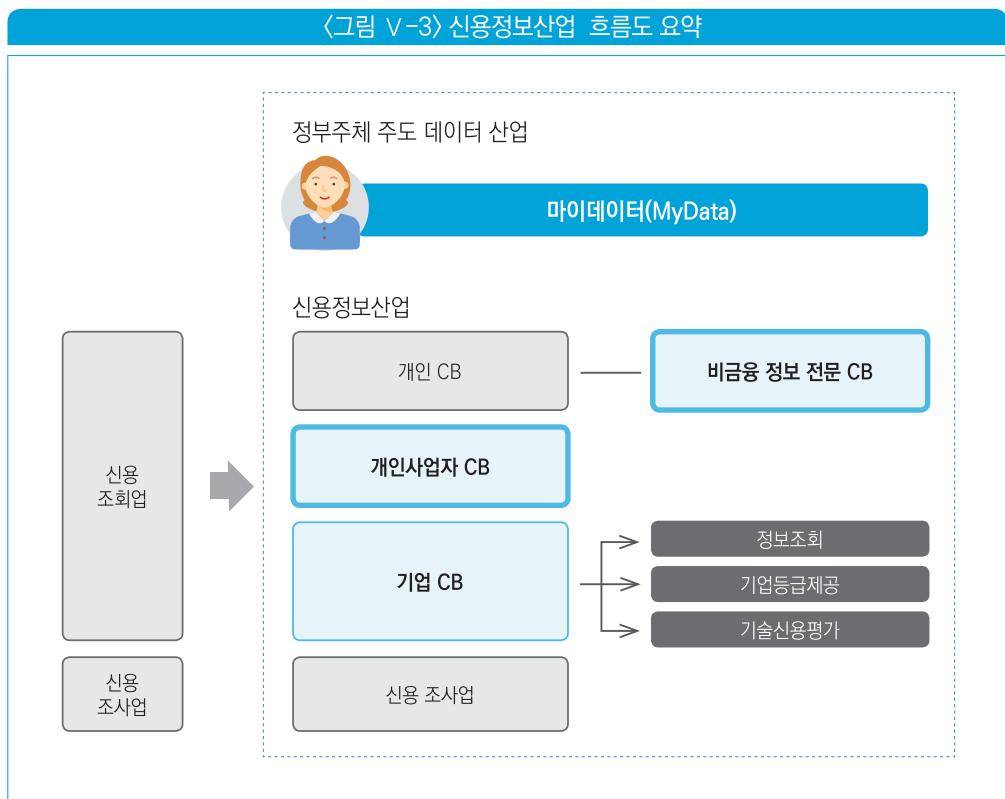
2 신규 플레이어¹⁸⁾

최근 한국 정부가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혁신적 플레이어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CB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제약이 커졌는데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물론 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공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치들은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신정원의 기능 확충도 함께 이루어졌다. 신용정보산업

18) 이 소절의 설명은 금융위원회(2018)를 주로 참고하였다.

인프라인 신정원의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업무도 강화되었다.

다음 <그림 V-3>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재편되는 신용정보산업을 요약하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CB와 기업CB 및 신용조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인사업자 CB, 비금융정보 CB가 새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데이터 산업으로서 마이데이터업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신용정보산업에서 새로 도입되는 플레이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출처: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 개인사업자 CB사(SOHO CB)

국내 개인사업자는 2018년 7월 말 현재 총 663만 명이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7년 말 현재 598.4조원에 이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확한 위험관리가 어려워, 신용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보증·담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자금이 필요한지의 여부나 신용도에 대한 판단보다는 담보의 유무 여부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업종별로도 자금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보다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출이 쏠리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61%가 고신용 차주에 대한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상공인 대출의 82%가 보증·담보기반임을 발표한 바 있다.¹⁹⁾ 업종별로도 부동산·임대업은 개인사업자의 4.3%에 불과하지만 대출 비중은 30.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B사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산업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CB의 자본금 요건은 개인CB업에 준하여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개인사업자 CB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공유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 개인사업자 CB업 경영을 허용하였다.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 심사모형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같은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도

19) 금융감독원과 중기벤처부의 통계는 2017년 기준이다.

마련하였다. CB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 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개인사업자 CB의 도입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지원하는 한편 또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

그동안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Thin-filer의 경우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Thin-filer가 2016년 말 현재 1,107만 명에 이른다.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활용도도 낮은 형편이다. 예를 들어 일부 리스·렌탈업체로부터 고객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더라도 특정업체 정보만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도입하였다. 비금융정보 전문 CB는 비금융 개인신용정보(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만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이다. 빅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의 FICO는 통신료·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약 1,500만 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점수를 새롭게 산출한 바 있다. Lenddo는 SNS 친구, 포스팅 등 260억 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했는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들이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한편 금융회사 출자의무(50%)도 면제하였다. 기존 CB들의 자본금 요건이 최소 50억원인 데 비해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20억원으로 낮추었다. 그 외 SNS분석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추어 자본금 요건이 최소 5억원이다. 한편 기존 CB사와 동일한

정보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계열회사 고객의 신용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같이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들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유저리티 사용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평점이 개선되어 금융거래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CB산업 허가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 우선 CB업 허가 단위가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되었다. 다음 표는 각 CB업의 처리정보, 활용 목적, 평가방식 등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고 있다.

〈표 V-2〉 CB 종류별 주요 업무 및 자본금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처리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기업 신용정보
활용목적	여신 등 금융거래	여신 등 금융거래 위주	금융거래, 상거래
평가방식	통계모형 등 정량평가	통계모형 등 정량평가	주로 정성적 평가
자본금	최소 50억원	최소 50억원	최소 50억원 → 5/20억원

출처: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되었다. 기업정보조회업자는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통합·분석·가공하여 조회자에게 제공한다. 기업등급제공업은 기업·법인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생성·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술신용평가업은 기업의 기술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업CB업은 개인CB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즉 기업 간 자금중개, 상거래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개인CB와 달리) 데이터의 중개·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맞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다.

〈표 V-3〉 기업CB 자본금 요건 변화

	현행	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
최소 자본금	50억원	→ 20억원	5억원
금융권 출자(50% ↑)	적용	→ 적용	배제

출처: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국내외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CB 시장 진입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다. 이는 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업무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신용평가업(TCB)의 경우 특허법인·회계법인 등의 신규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3 마이데이터 산업²⁰⁾

3-1 마이데이터 산업의 개념과 의미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각 개인이 소외되는 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인이 자기정보를 관리·통제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소극적 정보보호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혜택에서 정보주체가 배제될 우려도 제기된다.

20) 이 소절의 설명은 금융위원회(2018b)를 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이 많아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함께 증대하지만 그 정보가 적절히 제공·공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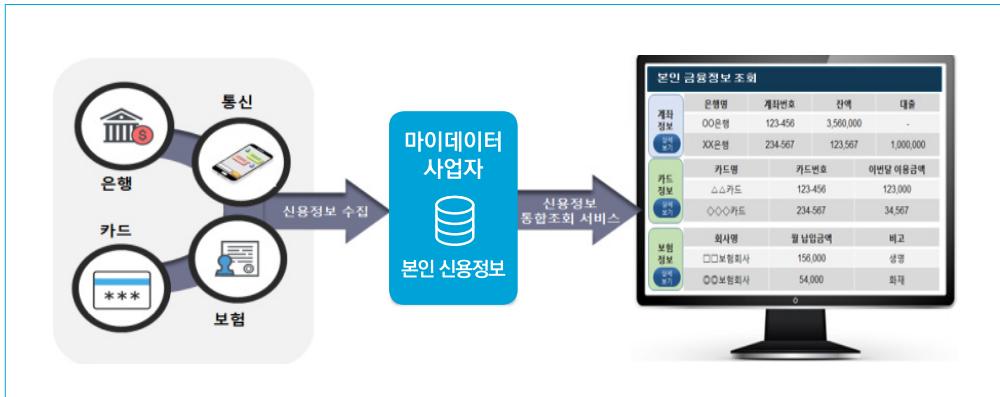
또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리·활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구조적인 정보 열위를 완화해 주는 산업적 기반도 미흡하다. 미국, EU 등에서는 다양한 펀테크 기업이 출현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리 지원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²¹⁾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펀테크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제한적이며 정보보호·보안 측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였다. 마이데이터업은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본인정보의 일괄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관리 등 본인정보 관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펀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마이데이터업의 주요 서비스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다. 먼저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EU에서는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ccount Information Service)’을 도입하였다.

〈그림 V-4〉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용정보수집 및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흐름 현황



출처: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무현황 분석서비스는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는 서비스이다. 다음 〈그림 V-5〉는 재무현황 분석 및 재무컨설팅 서비스 화면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²²⁾을 제공한다.

〈그림 V-5〉 재무현황 분석 및 재무컨설팅 서비스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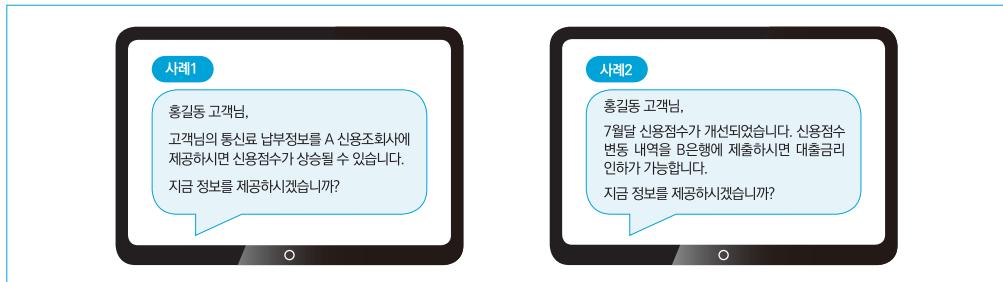


출처: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2) 부채비율 · 지출비중 등 재무형태 조정뿐 아니라,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점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출, 잘못 등록된 정보 삭제 등을 권고.

신용관리 · 정보관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신용조사(조사) · 금융회사 등에 긍정적 정보 제출, 부정적 정보 삭제 · 정정 요청 등 본인정보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다음 <그림 V-6>과 <그림 V-7>은 고객에게 필요한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업무를 안내해주는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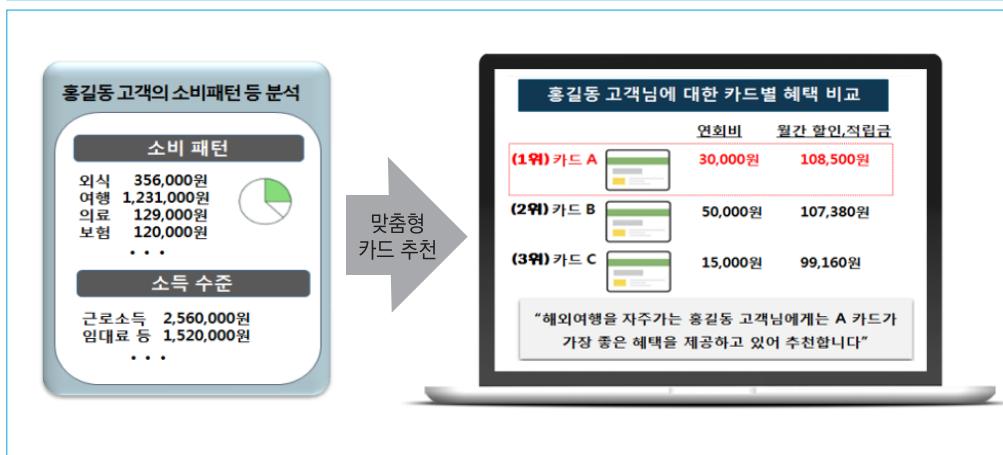
<그림 V-6>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업무 안내 화면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 · 재무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추천을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상품별 가격 · 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그림 V-7>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업무 안내 화면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업의 도입은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 법제는 동의 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 스스로 정보보호 · 관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 · 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알고 있는 국민은 38.2%, 정보정정 · 삭제 · 파기요구권은 22.4%만 인지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본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해 본 사람은 약 7%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의 복잡한 제도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 ·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현행 법제상 자기정보 통제권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돋고, 필요시 해당 권리를 대리 행사하여 정보관리도 지원한다.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주체인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익(신용관리 · 재무분석 등)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정보주체 개인에 대해 일종의 정보계좌 (Personal Data Account)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 가능하다. 향후 관련 법 · 제도, 문화 등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금전적 보상에 기반하여 개인데이터를 활용 ·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²³⁾

또한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자체의 특성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선택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제공 · 비교공시가 부족하여 금융상품의 비용 · 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융상품 제조 · 판매자인 금융회사에게 소비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 공시(Full Disclosure)²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지(認知)에 필요한 시간 ·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 해외 사례로 Hub of All Things(英), Datacoup(美), 정보은행/정보신탁(日) 등을 들 수 있다.

24) 금융투자상품 · 보험상품 판매 시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교부 등이 있다.

더욱이 표준화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평가하기 어렵다.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부족하여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 금융상품은 개별 소비자의 신용도, 소비패턴 등에 따라 상품구조·가격 등이 차등화되어 맞춤형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보제공·공시제도 등은 금융상품 자체의 속성에 대한 정보(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²⁵⁾

그리고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서비스의 공급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독립 금융상품 자문업이 아직 도입되지 못한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제공되는 자문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각각의 판매채널에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공시의 질이 개선되고 자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간편한 정보제공·비교공시(Smart Disclosure)가 제공될 수 있다. 그동안 공공 부문, 협회 등에서 이를 위한 노력²⁶⁾이 있었으나, 상품종류별 평균 혜택·비용 등을 공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개별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내어 알기 쉽게 표준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간편한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해 제한된 시간·비용 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비행태·재무현황 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행태·위험성향 등 소비자 본인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25)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용패턴, 행태 등에 대한 정보(Product Use Information)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26)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상품의 비용·혜택 등이 소비자의 행태 등에 따라 계약 이후 변동되는 특성²⁷⁾ 등을 감안한 실시간 맞춤형정보 제공도 가능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가격대의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분석 업무와 연계함에 따라 기존 고비용구조를 탈피하여 낮은 비용의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의 비용구조 개선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정확한 금융상품 자문을 위해서는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도 해당 고객의 위험성향, 행태 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수 고객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분석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금융상품 종합 자문서비스가 제공되어 구조적인 소비자의 정보 열위(Knowledge Disadvantage)를 완화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은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한편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가 강화되어 금융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그동안 정보 우위에 기반하여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가능성 있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Richard Thaler 교수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금융, 의료, 통신 분야에서 기업들은 “불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무지·태만 등에 기대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정보제공·비교공시가 효율화·단순화될 경우 “합리적 가격에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금융회사에 집중된 고객 데이터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대형금융사의 정보독점 및 이를 통한 시장영향력 집중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²⁸⁾

27) 예를 들어 중도상환 여부에 따른 상환수수료,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가능성 등이 있다.

28) 영국 Economist誌(2017.3월)는 「PSD2」의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에 따른 ‘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Technology-driven Disruption”)으로 유럽연합 내 은행산업의 대형사 중심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6년 PwC의 조사에 따르면 EU 은행(Retail Banks)들의 68%가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 시 해당 은행의 시장영향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과 함께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수집·유통하는 정보중개업자(Financial Infomediary)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산업·데이터산업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²⁹⁾

이와 같은 효과들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객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 전후방 연관효과로 고부가가치의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형성됨으로써 임금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3-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 전 금융분야에 대해 먼저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금융분야에서 먼저 개인의 정보·소비자 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하였다. 먼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신용조회업(Credit Bureau)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업자에게 다양한 부수·경영업무를 허용하였다.

마이데이터 업체의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여 금융분야에 창의적인 Player들의 진입을 유도하였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된다. 이는 데이터 기반 핀테크 생태계의 조성,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와 자문·추천 간의 이해상충, 대형사 정보독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29)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65.9억달러, 고용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³⁰⁾에서 새로이 도입된 ‘Right to Data Portability’를 신용정보법 체계에 맞추어 국내에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사업자 간의 데이터 이동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표준API³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도 중요하다.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사업자의 정보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호·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는 여러 fintech 업체나 금융회사들이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법³²⁾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객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정보 유출 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API를 통한 정보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스크린 스크랩핑(Screen Scraping) 방식의 정보 수집은 금지될 예정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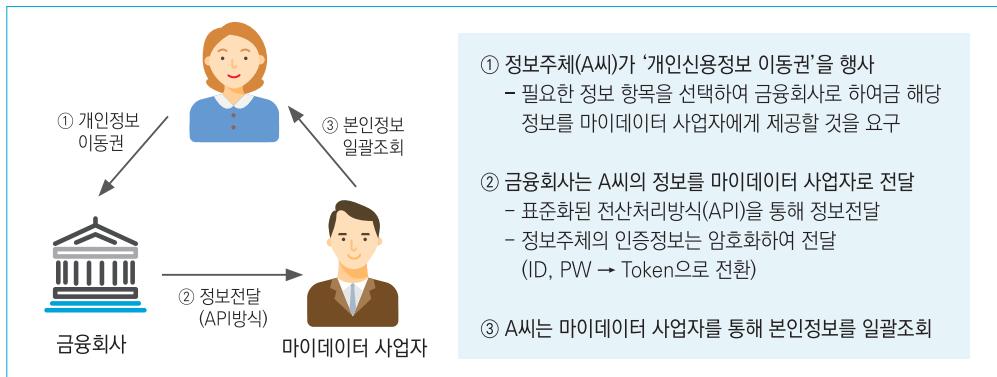
30)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Directly Applicable)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하며 2016년 5월 제정되어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됐다.

31)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토콜 및 도구의 집합이다.

32)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은 웹사이트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그대로 추출해 수집하는 기술이다.

33) EU에서도 PSD2를 통해 고객데이터 제공 관련 규제기술표준(RTS)을 마련하고 일정 유예기간(18개월) 경과 후 기존의 스크린 스크레이핑 활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한국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림 V-8〉 고객데이터 수집·처리 개선 방안 (API방식)



출처: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업으로 마이데이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명칭으로 신설하고 있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되, 신용관리 · 자산관리 · 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영 · 부수업무가 허용된다. 먼저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i)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ii) 본인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 (iii)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으로 정의된다. 이와 달리 신용조회업(CB)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제3자(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마이데이터 산업과 구분하고 있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 포함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案)

- (i) 은행 · 상호금융 · 저축은행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 (ii) 신용카드 · 직불카드 거래 내역
- (iii) 은행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보험사 등의 대출금 계좌정보
- (iv)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 (단, 보험금 지급정보는 제외)
- (v)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 · 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주식 · 펀드 · ELS 등)의 종류별 총액 정보
- (vi)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부수업무는 주로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이다. 먼저 정보계좌(Personal Data Account) 업무는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외에도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³⁴⁾를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정보관리”) 업무도 부수업무이다. 이는 개인의 신용평점 개선, 금리인하 요구 등을 위한 프로파일링 대응권³⁵⁾의 대리행사 등 정보관리 업무로서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 CB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요구, 이의 제기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데이터 분석 · 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도 부수업무이다. 이는 통합조회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창업기업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수업무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한 고객 데이터에 한하여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영업무도 다양하다. 대체로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들이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 · 일임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객 본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금융투자상품 자문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자문업도 경영업무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태여서 당장에는 금융상품 추천 · 비교공시 업무가 부수업무로 허용되었다. 향후 자문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정비된 이후 경영업무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EU에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과의 경영을 허용한 지급결제지시업(Payment Initiation Service) 등 전자지급결제 업무도 경영업무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 주이를 봐서 경영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4) 전기 · 가스 · 수도료 납부 정보, 세금 ·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35) 신용평가, 금리산정 등에 활용된 기초 정보의 확인 요구, 오등록 정보 정정 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자본금 요건 등은 최소화하여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되, 정보보호·보안,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하여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보보호·보안, 경영·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허가 요건으로는 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자본금 요건은 최소 5억원으로 설정하되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CB업과 달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는 별도의 인적 요건이 없다. 이는 창의적인 Player에 의한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CB·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고 있다.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등 물적 요건은 규정되어 있다. 개인 CB업의 경우, 금융회사 50% 출자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데이터산업에 창의적인 Player가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월 28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했는데 이후 더 많은 금융회사에게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에게 고객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에게 금융회사 등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정보 이동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는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정보이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활용 요청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와는 구분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금융회사 등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등에게는 통합조회·재무분석 등 원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소비패턴 분석 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계열 데이터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감정보³⁶⁾나 개인정보를 기초로 금융회사 등이 추가적으로 생성·가공한 2차 정보³⁷⁾ 등은 제외된다.

정보 제공방식은 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표준 API)을 이용한다. 원칙적으로 은행·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 등에 API 구축 의무를 부여하되, 규모·거래빈도 등을 감안하여 중계기관³⁸⁾ 활용도 가능하다.

개인신용정보가 자주 이동됨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기반하여 정보보호·보안상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제·감독을 강화하였다. 먼저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활용 범위·영향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이동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 물론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전자문서, 유무선통신 등) 방식을 허용한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 데이터의 제공에 앞서 해당 고객의 정보 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가 주어진다.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보안성도 강화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정보보호·보안면에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활용하지 않고 암호화한 대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정보 노출을 차단한다. 이는 ID, PW 등 인증정보를 Token으로 전환하고 Token은 주기적으로 변경·삭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보주체 스스로 필요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스크린 스크레이핑

36)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병력 및 사고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있다.

37)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금융회사가 산정한 자체 개인신용평가(CSS) 결과 등의 정보이다.

38)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 등의 경우 해당 중앙회가 중계기관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용정보원 등 제3의 기관이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방식이 금지되고 정보보안기술³⁹⁾을 적용한 표준API 방식을 이용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표준API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신생업체도 고객정보를 손쉽게 이용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정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의 PSD2에서도 본인계좌정보 관리업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감독체계도 구축하였다. 이로써 자체적인 내부관리체계를 마련·시행도록 하고 금융보안원 등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감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39) 해킹 발생 시 개인정보 자동 폐기 및 접근 통제, 개인정보 사용기간 한정 등의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절

개인신용정보 산업의 전망

...

1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신용평가 및 정보 활용⁴⁰⁾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대 CB사 중 하나인 Experian 사는 보유 데이터(금융거래정보, 임대료 정보 등)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에 전략수립 및 소비자분석 등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perian 이익의 23%가 컨설팅 수입이라고 한다. 또한 호주의 CB사인 Veda 사는 통계청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 및 주요 상권 분석에 대한 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15년 9월 이후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업무 등 일부업무 외 영리목적 겸업이 금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 전에는 CB사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법률지원 서비스, 데이터 분석 교육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보호가 급격히 강화되는 과정에서 영리 목적 겸업이 금지된 것이다.

CB사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관리 역량이 높아 관련 업무 수행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CB사의 영리 목적 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CB사는 더욱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산업과

40) 이 소절의 설명은 Siddiqi(2017) 및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9) 등을 참고하였다.

관련된 신규 업무⁴¹⁾를 함으로써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CB사들이 해외에서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은 금융회사들이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용평가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여 기존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회사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점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신생 기업이 다수 등장하였다. 현재 이 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새로운 회사 중 2011년에 설립된 Lenddo는 선두 주자 중 하나이다. Lenddo의 공동 창립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대출의 목적은 교육, 건강관리 또는 주택 개선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출에 필요한 현금이 없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온라인 친구 및 동료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Lenddo는 SNS 데이터만 사용하여 신용 점수를 계산하고 지원자의 신용도를 결정한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개인은 SNS에 연결하고 Lenddo가 인정하는 네트워크에 친구, 가족 또는 동료들을 초대한다. 그런 다음 Lenddo는 S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Lenddo 점수를 개발한다. 이 점수는 전통적인 신용평점과 비슷한데 신청자가 대출을 받으면 전체 네트워크에 지금내역이 통보된다.

SNS 빅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당장 신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는 신용정보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SNS 등의 비전통적인

41)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S/W 개발·판매 업무 등이 있다.

신용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소비자 중 1,000만 명은 신용 점수 60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⁴²⁾ FICO, Experian, TransUnion 및 Mastercard와 같은 기존 회사는 Yodlee 및 VisualDNA와 같은 회사와 제휴하여 공과금 및 임대료와 같은 대체 데이터를 얻어 기존의 신용평점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용평점을 계산하는 데 SNS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점차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Keenan(2015)은 2014년 165개의 소매 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은행에 어느 기술이 소매 금융에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 은행의 약 30%가 SNS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이 우선순위라고 답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금융업무에서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이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금융회사는 기존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어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깊이와 정확도를 가지고 대출 신청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심사 및 결정을 훨씬 더 개인화된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대출 신청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은 대출 승인율,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은행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많은 은행들은 고객 분석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은행의 고객 분석에서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에서 밀레니얼 세대 등 IT에 친숙한 젊은 고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객과의 일대일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해오던 고객과의 대규모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시대는 끝났거나 끝나고 있다. 은행 고객은 특정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며, 몇 초 만에 고객을 식별하고 잔액을 확인하여 지급을 완료할 수 있는 앱을 원한다. 은행은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 장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은행이 고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42) 일반적으로 600 미만의 FICO 점수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주되고 600~649는 불량한 점수, 680 이상은 양호하다고 간주된다.

은행의 수익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창출될 수 있다. Groenfeldt(2015)는 유럽 한 은행의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사용이 어떻게 고객 만족을 증진하고 은행 수익성을 향상시키는지 보여준다. 이 은행은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콜센터 로그, 전자 메일 및 텍스트를 통해 전체 고객 불만의 5%만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샘플링뿐 아니라 모든 불만 사항을 분석함에 따라 은행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문제를 겪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고객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재설계했다. 고객 불만은 25%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보유한 고객을 식별한 뒤에 보다 관련성이 높고 저렴한 다른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교차판매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고객 만족도 상승과 함께 은행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결국 은행 수익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행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체제와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출심사 부서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담당에 이르기까지 금융회사에 전체 통합되어야 한다. 직원들 각자가 통합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어 SNS, 실시간 위치 서비스, 통신 데이터, 사물 인터넷 정보 등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장에 혼재해 있는데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에 통합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함으로써 은행의 예측모형을 만들고 이용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많은 시각적 분석도구와 사용자 친화적인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신용보고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의사 결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2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 교환 및 거래 전망

국내외 금융분야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등급 관리를 도와주는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종합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요들리(Yodlee) 등 상위 5개사가 약 65.9억달러 연매출(2017년)을 올리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계좌통합조회, 간편송금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 뱅크샐러드가 1,500만 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2019년 기준)하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핀테크사의 서비스는 이체 · 송금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며 종합금융 서비스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핀테크사의 모바일 플랫폼은 주로 고객이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정보, 카드이용정보, 신용등급 등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판매, 이체 · 송금서비스 등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당국은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게 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기술적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유통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정보가 제3자에게 전송되도록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여 핀테크사가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 ·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2-1 EU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

EU는 각국 데이터 유통 정책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최초로 도입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핀테크사 등)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 이동권, 데이터 이동권 등으로도 불린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GDPR 제20조에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라는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개인정보 이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최초로 부과함으로써 데이터 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각국의 데이터 유통 정책에 개념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증진과 동시에 금융회사나 거대 IT기업이 독점한 데이터의 유통과 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의 세부 개념인 개인정보 수령 및 이전 권리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정보 이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따라 컨트롤러(Controller)⁴³⁾에게 제공한 본인 개인정보를 파일⁴⁴⁾로 제공받거나 다른 컨트롤러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동 후에도 기존 컨트롤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A회사에서 B회사로 개인정보가 이동되어도 정보주체는 A회사와 B회사 양쪽의 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컨트롤러는 상호운용이 가능한(Interoperable) 방식의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를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범용적인 다운로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컨트롤러 간 정보 이동 수단으로는 ‘적절하게 보안이 고려된 API의 제공’을 예시로 들고 있다.

2-2 EU PSD2의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

EU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⁴⁵⁾도

4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Public Authority), 기타 단체(Other Body)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하다.

44) 구조화되고(Structured), 통상적으로 사용되며/Commonly used),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Machine-readable) 파일로 정의되며 CSV 포맷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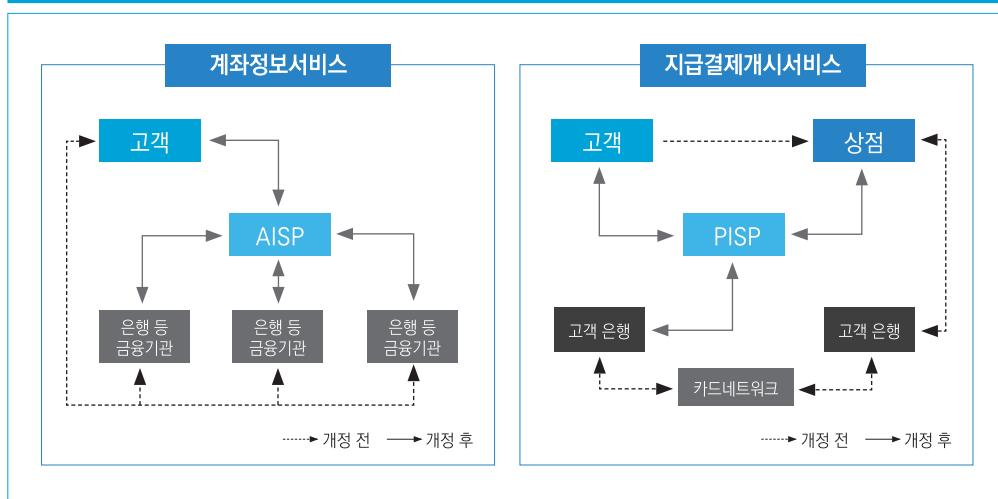
45)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는 EU 권역 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지침으로, 최초 시행(2007. 4.) 이후 새로 등장한 핀테크 산업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형성,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안전한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2018년 1월 PSD2로 개정했다.

큰 의미가 있다. EU는 모바일 금융, 핀테크 등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신규 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GDPR 도입에 맞추어 PSD2를 개정·시행(2018.1)하여 신규 사업자 유형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SP; Payment Service Provider)를 도입했다.

GDPR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의 권리 증진 측면에서 정보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다면, PSD2는 금융분야에 한정된 정보 이동권을 규정하여 금융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고객의 금융정보 이동 요구에 따라 PSP가 고객 대신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PSP는 비즈니스의 구조에 따라 계좌정보서비스제공자(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와 지급결제개시서비스제공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로 구분된다. AISP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자산관리·맞춤형 금융상품 소개 등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스 추천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그리고 PISP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에 필요한 정보(계좌정보, 거래 내용 등)를 증개하고,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결제하는 사업자이다.

〈그림 V-9〉 AISP와 PISP의 서비스 개념도



출처: “Seizing the Opportunities Unlocked by the EU’s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Accenture, 2016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 금융정보가 제3자로 이동 가능하도록 범용적이며 안전한 개방형 통신 표준(Common and Secure Open Standards of Communication)을 제공해야 한다. API 방식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스크린 스크레이핑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개방형 통신 표준 및 PSP의 강력한 사용자 인증체계 구축도 의무화됐다. 정보주체의 정보 이동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 전송방법에 대한 개방형 통신표준 구현을 의무화하고, PSP에게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체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 전송방법, 강력한 사용자 인증체계 적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요건을 명시한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3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

EU의 PSD2 시행 이후 영국은 PSP 개념을 자국에 맞게 적용한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핀테크사 등 제3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영국 경쟁시장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소매 은행산업 공정도 평가 보고서(2017. 10.)를 발표하고 PSD2의 PSP 개념을 자국에 맞게 적용한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9개 주요 은행은 단일 API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핀테크사 등 제3자에게 고객 금융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고객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상품정보까지 API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핀테크사는 개별 은행의 금융상품정보를 API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가격 비교, 상품추천 등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영국 오픈뱅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픈뱅킹 제도를 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OBIE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API 표준 마련, 참여기관 관리, 민원 및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OBIE는 서비스·기술 전반에 관한 주요 실무를 담당하며 정책당국,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CMA와 협의 후 반영한다. API 표준 요건은 PSD2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기술사양, 보안표준, 인증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2-4 호주의 오픈뱅킹 정책

호주도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객 금융정보의 전면적 개방·유통을 위한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소비자 정보권(The Consumer Data Right) 개념을 도입하여 오픈뱅킹 정책을 진행했다. 영국 오픈뱅킹 API의 표준 요건을 기반으로 API를 개발하였으며, 4개 주요 은행 금융정보의 공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중소형 은행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오픈뱅킹 권고안(Review into Open Banking, 2017.12.)에서는 오픈뱅킹 추진을 위한 4가지 기본 원칙으로 ‘고객 중심’, ‘경쟁 유도’, ‘기회창출’, ‘효율 및 공정성’을 제시했다.

EU, 영국 등에서는 주로 당좌계좌(Current Account)정보, 신용카드정보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다르게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예금계좌(Savings Accounts)는 물론 모기지(Mortgages), 개인대출(Personal Loans) 등 대부분의 고객금융정보에 대한 전면적 개방·유통을 추진했다.

오픈뱅킹 제도 운영 지원기관으로 ACCC(서비스 분야)와 DATA61(기술 분야)을 두고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데이터·API 표준 마련,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ACCC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규칙 개발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고 Data61은 데이터·API 표준 등을 마련한다.

3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이와 같이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 기반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가 하나의 서비스에서 자신의 금융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찾는 것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지점, 모바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정보가 유통되어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핀테크사의 편리한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최접점으로서의 역할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금융회사 역시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핀테크사와 기존 금융회사 간의 경쟁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 송금 수수료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호주 등은 데이터 유통제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금융회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OBIE), 호주(ACCC, Data61) 등 운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API 요건 마련, 과금체계 결정,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내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 · 운영 시에도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기관을 도입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는 정보 제공 범위, 과금체계 설정 등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 다양한 참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운영 지원기관을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보 이동 범위, 이동 표준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특징

...

1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례

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의 발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은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미 그전부터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였으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같이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적은 없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2014년 2월 5일부터 약 24일간 실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가 보유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결제계좌, 연소득 등) 약 1억 건⁴⁶⁾이 신용조회회사인 Korea Credit Bureau(이하, ‘KCB’)의 외부 파견 직원을 통해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뿐 아니라 KB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은행 고객의 정보 및 이미 위 카드사를 탈퇴한 고객의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다. 먼저 개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의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배상에 따른 타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46) KB카드 약 5,380만 건, NH카드 약 2,668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 단 사망자·기업·가맹점 등을 제외하고,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8,500만 건 정도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표 V-2>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전의 주요한 유출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 많은 경우 홈페이지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며 보안 대비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V-4>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전의 주요 유출 사건 요약

발생시기	사업자	유출 규모	원인	조치 사항
2014. 3	KT	1,170만 건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7천만원 과태료 1천5백만원 시정명령
2012. 7	KT	873만 건	인증절차 우회 해킹	과징금 7억 5천3백만원 시정명령
2012. 5	EBS	422만 건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1천만원 시정명령
2011.11	넥슨 코리아	1,320만 건	백업 서버 해킹	과징금 7억 7천1백만원 과태료 9백만원 시정명령
2011. 8	한국 앱손	35만 건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3천3백만원 과태료 9백만원 시정명령
2011. 7	SK컴즈	3,500만 건	홈페이지 해킹	행정처분 없음 검찰 무혐의
2010. 3	35개 사업자	3,300만 건	홈페이지 해킹	과태료(19개 사) 9천7백만원 시정명령(35개 사)

출처: 남선모(2015),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12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우리 국민의 진료정보 25억 건이 미국에 팔려나간 것이다. 이것을 사들인 다국적 업체는 정보를 재가공해서 국내 제약회사에 비싼 값에 팔았다.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업체인 IMS 헬스

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사 모았다. 이 업체는 전국 병원 5천여 곳의 진료기록을 전산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는 일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진료정보를 간단한 암호화 작업을 거쳐 IMS에 팔아넘긴 것이다.

2 정책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유출’이란 고의 ·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량, 종류, 시기 등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 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미국 등)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더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징벌적 배상제도나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한 금전적 조치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를 보다 신속 · 간편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1차 조정과 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산정을 거쳐 5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과징금의 산정기준액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재발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다.

이와 같은 법 제도적 해법과 함께 기술적인 해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천정희 등(2018)은 “금융데이터 분석을 기계학습으로 할 때 4세대 암호로 일컬어지는 동형암호로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예측/분류 모형을 도출하여 신용도를 산출하는 동형기계학습(Homomorphic Machine Learning)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평가모형은 다양한 신용정보를 투입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용정보에 더하여 다양한 원천의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다량의 빅데이터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천정희 등(2018)은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델을 설계하고 예측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 분석기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 기법은 기존의 정보보호 방법들에 비해 계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알고리즘의 개선과 컴퓨팅 능력의 발전으로 점차 실용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동형기계학습 기술이 발전하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데이터 분석이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학습의 활용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면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동형암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외에도 재현자료방법(Synthetic Data),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or Local Differential Privacy) 등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의 길을 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핵심정리

1. 기존의 개인신용정보 산업

국내 신용정보산업은 신용정보 사업자로서의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업자(민간 CB)들을 통해 신용정보 데이터를 공유한다.

2. 신규 플레이어

- 최근 한국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혁신적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개인사업자 CB사(SOHO CB)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CB사인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 개인사업자 CB업 경영이 허용되었다.
- 비금융정보 전문 CB는 비금융 개인신용정보(통신 · 전기 · 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만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인데 정부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들이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한편 금융회사 출자의무(50%)도 면제하였다.

3. 마이데이터 산업

- 마이데이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본인 정보의 일괄수집 · 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 · 금융상품 자문 ·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 전 금융분야에 대해 먼저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였다.
- 마이데이터 업체의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 추천·비교공시 업무 등 다양한 검명·부수업무를 허용했다.

4.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신용평가 및 정보 활용

최근 많은 금융회사들이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용평가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여 기존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교환 및 거래 전망

- 국내외 금융분야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국내외 금융당국은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게 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기술적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유통제도를 도입했다.

6. 해외 사례

- EU는 각국 데이터 유통 정책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최초로 도입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핀테크사 등)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또한 EU는 모바일 금융, 핀테크 등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신규 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GDPR 도입에 맞추어 PSD2를 개정 · 시행(2018. 1.)하여 신규 사업자 유형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를 도입했다.
- 영국, 호주 등에서는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7.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이와 같이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8. 개인신용정보 유출사례

- 2014년 초 전 국민을 분노와 패닉에 빠뜨린 신용카드 3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은 2012. 12.부터 2013. 12. 사이에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가 보유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결제계좌, 연소득 등) 약 1억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는 자주 접할 수 있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정책과제

-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더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법 제도적 해법과 함께 기술적인 해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델을 설계하고 예측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 분석기법이나 재현자료방법(Synthetic Data),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or Local Differential Privacy) 등 새로운 기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

MEMO

헬로, 핀테크!(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HELLO, FINTECH!





참고문헌

- 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
- 금융데이터거래소 www.findatamall.or.kr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company.koreacb.com
- 한국은행 www.bok.or.kr
- NICE평가정보 www.niceinfo.co.kr
-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서비스 신청 이용절차, 2020.5. <https://credb.kcredit.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2020. 5. <https://opendata.hir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 2020. 5. https://www.hira.or.kr/cms/guide_busi/04/04/index.html
- AIZEN <https://aizenglobal.com/>
- 금융감독원(201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제2판, 2017.12
- 금융보안원(2019), 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구축 방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 금융위원회(2018a),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b),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 · 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2019. 6.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9),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삼정KPMG Issue Monitor 제108호, 2019.5
- 신용정보원(2020), [교육용 동영상 2차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볼까요”의 script, <http://www.kcredit.or.kr/info/creditEduDataView.do?contentNo=603>
- 행정자치부(2016),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2016.12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2019.6
- 강경훈, 배영수(2018), 해외 법규 및 감독 현황 조사를 통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 강경훈, 배영수(2019),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정보연구 제8권 제2호, 2019.8
- 권영준(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 남선모(2015),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12
- 노현숙(20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헌법노총 30
- 양기진(2019), “개인정보의 통계작성 · 연구 목적 활용에 관한 검토 – GDPR의 관점상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8(5)
- 이재근(2019), 신용정보 가치 창출 및 활용 사례, 2019.5.15
- 이재영(2020), 핀테크와 개인정보보호, 핀테크와 GDPR 1권, 타커스
- 조수영(2018),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18(1)
- 천정희 · 어윤희 · 김재윤(2018),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동형암호기반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정보연구, 2018

- Copas, J.B. "Regression, prediction and shrinkage." *J. Roy. Statist. Soc. Series B.* 45(1983).
- Efroymson, M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Ralston, A. & Wilf, H. S., editors, *Mathematical Methods for Digital Computers*, Wiley(1960).
- Keenan, C., "Big Data and Predictive Analytics: A Big Deal, Indeed," *ABA Banking Journal* 107, no. 4 (2015): 32–34.
- Groenfeldt, J., "Banks Turn to 'Spark' Technology to Crunch Big Data, *American Banker*, 2015.
- Rencher, Alvin C. and Pun, Fu Ceayong, "Inflation of R-squared in Best Subset Regression", *Technometrics*, Vol. 22, No. 1. (Feb., 1980), pp. 49–53.
- Siddiqi, Naeem, *Intelligent Credit Scoring: Building and Implementing Better Credit Risk Scorecards*, 2nd ed., Wiley, 2017.
- "Seizing the Opportunities Unlocked by the EU's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Accenture*, 2016
- Wilkinson, L. and Dallal, G.E. "Tests of significance in forward selection regression with an F-to enter stopping rule." *Technometrics*. 23(1981).

교재 집필 위원

고동원 | 제1,2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듀크대학교 법학박사
- (전)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 (전)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2008, 금융규제와 법 (박영사)
2010, 부동산금융법(공저) (박영사)
- 2018,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 (집문당)
- 2019, 금융규제법개론 (박영사)

이재영 | 제4장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 한양대학교 블록체인융합학과 석사
-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 Security팀 수석연구원
- (전) 모토로라코리아 개발실 책임연구원
- (전) 티티피컴코리아 기획팀 팀장
- (현) 에스앤파트 대표이사
- 저서 2021,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펁테크와 GDPR 1
부제: 펁테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타커스)
- 2020, 펁테크와 GDPR 2
부제: 개인 데이터 주권을 위한 접근법 (타커스)

강경훈 | 제3,5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박사
- (전) 한국은행 조사부, 기획부
- (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실
- (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현)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 (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 (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 저서 정책금융연구회(공저) 2018,
정책금융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산업은행)
강경훈 · 김상균 · 배득종 · 최용락 · 허웅 공저 2011,
Fiscal Reform an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기획재정부)

감수자

김상봉

-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 미국 Texas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전) 여신금융협회 자문위원
- (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
- (현) 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
- 저서 2018,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검정)
2010, 신용카드의 이해
2011, 신용정보의 이해와 활용
2013, 중급 행동경제학
2016, EXCEL을 활용한 경제경영통계학
2016, 거시경제학
2019, 브런치타임 경제뉴스

고환경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6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08
- (현)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IT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분야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 대통령 표창(정보통신 발전유공) : 2019
-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법제도 TF 위원 : 2021
-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2기, 3기) 위원
: 2020~현재
- (현)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현재
- (현) 금융보안원, 정보보호인증위원회(ISMS-P) 위원 : 2018~현재
- (현) 금융정보학회 부회장 : 2020~현재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1~ 현재
- 저서 EU 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17, 박영사
전기통신사업법(공저): 2016, 법문사
전파법연구(공저): 2013, 법문사

헬로, 펀테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초판 발행	2020년 10월 14일
개정 1판	2021년 11월 29일
집필 위원	고동원, 이재영, 강경훈
감 수 자	김상봉, 고환경
발 행 인	변영한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421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11층, 12층
전 화	02) 6375-1550
홈페이지	www.fintech.or.kr
등 록	2020년 7월 24일(제879-82-00208호)
I S B N	979-11-92068-08-4 05320 979-11-92068-02-2 05320(세트)

※ 본 도서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사를 금하며,
적발 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HELLO, FINTECH

헬로, 핀테크! 7종 시리즈

「헬로, 핀테크」도서의
보조학습자료로서 동영상 강의를
FinEDU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finedu fintech.or.kr

「헬로, 핀테크」시리즈 외에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엄선하여 기획한 핀테크 전문 커리큘럼
FinEDU 코스를 경험하세요!



헬로, 핀테크!

입문

핀테크 개요, 기술, 시장, 핀테크 관련 법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지급결제·송금

핀테크 지급결제·송금 기술, 규제 및 정책 동향,
시장 및 산업 동향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금융정보플랫폼, 오픈뱅킹플랫폼, P2P플랫폼,
금융빅데이터 기술 및 활용사례, 마이데이터 산업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자산관리·보험

자산관리테크 및 인슈어테크 서비스,
기반 기술, 규제 및 정책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보안인증·블록체인

보안인증 핵심기술 및 사례, 블록체인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레그테크 기술 및 사례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실무, 개인신용정보 기술현황, 시장 및 산업 동향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헬로, 핀테크!
핀테크 기반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음

HELLO, FINTECH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



한국금융연수원
KOREA BANKING INSTITUTE